| 발간등록번호 |
| --- |
| 11-1480000-001790-10 |

# 202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 Contents

**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개요 ····· 1**

1. 목적 ····· 3
2. 국고보조사업 분류 ····· 3
3. 관련 법령 및 규정 ····· 4
4.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 4

**< 예산 신청부터 설치·공사·운영 절차 >**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업무 ····· 7**

1. 계획 ····· 10
2. 설계 ····· 22
3. 공사 ····· 29
4. 완료 ····· 29
5. 운영 ····· 31

Contents

< 예산 편성, 집행관리 및 정산 >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33
1. 사전예산협의 ····· 35
2. 사전예산협의 검토사항 ····· 36
3. 예산신청 대상 ····· 40
4. 시설별 예산지원기준 ····· 42
5. 예산안 신청 및 편성 절차 ····· 50

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 53
1. 기본방향 ····· 55
2. 예산 교부 ····· 55
3. 예산 집행 및 정산절차 ····· 59

Ⅴ. 폐기물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 65
1. 기본방향 ····· 67
2. 사업단계별 집행률 제고 방안 ····· 67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 71
1. 개요 ····· 73
2. 총사업비 산정기준 ····· 74
3. 총사업비 관리절차 ····· 81
4. 총사업비 조정 신청절차 ····· 87
5. 조정원칙 ····· 88

Contents

< 서 식 >

Ⅶ. 관련서식 ····· 93

서식 1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서식 2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서식 3 : 국고보조금 신청서(시·군·구 작성)

서식 4 : 예산신청 총괄현황(시·도 작성)

서식 5 : 예산신청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서식 6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7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서식 8 :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서식 9 :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서식 10 :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서식 11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서식 12 :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서식 13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서식 14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검토요청서

Contents

## < 붙 임 >

붙임 1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설치 등 관련 규정목록

붙임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붙임 3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

붙임 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시스템 자료제출(입력)

붙임 5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붙임 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부 추진절차

붙임 7 : 최적화추진단 구성·운영체계

붙임 8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붙임 9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이자산정 방법

붙임 10 : 지방재정영향평가

붙임 11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시설유형 및 운영방법

붙임 12 : 업무처리지침 개정연혁

# I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개요

# 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개요

## 1.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투자 유도

○ 본 지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예산편성, 설계 · 공사 등 설치, 정산 관리에 관한 일관된 업무체계 확립 및 업무효율성 증진

## 2. 국고보조사업 분류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관리주체 |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br>(환특회계)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환경부<br>(폐자원에너지과) |
| | 매립시설<br>소각시설<br>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br>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br>매립가스자원화시설 | 유역(지방)<br>환경청 |
|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환경부<br>(생활하수과) |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br>(농특회계)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 유역(지방)<br>환경청 |
| 재활용 가능자원<br>수거선별 인프라 확충<br>(환특회계)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br>일반 공공선별시설<br>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br>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br>해양폐기물 선별시설<br>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 |
|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br>(기후기금) |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 환경부<br>(폐자원에너지과) |
| 바이오가스 활용<br>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br>(기후기금)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 환경부<br>(생활하수과) |

## 3. 관련 법령 및 규정

□ 폐기물 분야 관련 주요 법령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 「자원순환기본법」

□ 보조금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환경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환경부 고시)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설치 등 관련 규정 : (붙임1)

## 4.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 총사업비

○ 사업신청은 시설용량별 표준사업비(붙임2)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을 산정하되 지하화 할 경우 지하화 타당성 검토

○ 원인자부담금, 민자 금액 등 국고 비지원 대상 포함 여부 확인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

※ (예시) 총사업비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보조율 30%일 경우,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50억원에 30%를 곱한 15억원이 국고지원액임

○ 재정사업

| 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 보 조 사 업 명 | | 재원분담비율(%) | | 비 고 |
|---|---|---|---|---|
| | | 국 고 | 지방비 | |
| 1) 소각시설<br>2)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br>3) 일반 공공선별시설<br>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br>5)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 ㅇ특별시 | **30** | 70 | 공동시설만 지원 |
| | ㅇ광역시 | **40** | 60 | |
| | ㅇ일반 시·군 (광역시설) | **30**<br>**(50)** | 70<br>(50) | |
| | ㅇ도서지역 | **50** | 50 | 매립시설은 30%지원 |
| 6) 공공 열분해시설<br>7)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br>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br>9)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br>10) 해양폐기물 선별시설<br>11)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br>12)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 **50** | 50 | |
| 13)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 **70** | 잔여사업비 | 15억원/개소까지 |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별도 지침에 따름(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환경부)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

○ 민간투자사업

| |
|---|
| 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br>**국고보조금 = (총사업비 - 민자 제안액) × 국고지원비율(%)**<br>※ 다만, **국고보조금은 기존 재정사업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보 조 사 업 명 | | 재원분담비율(%) | | | 비 고 |
|---|---|---|---|---|---|
| | | 국 고 | 지방비 | 민자 | |
| 1) 소각시설<br>2)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br>3) 일반 공공선별시설<br>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br>5)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 ㅇ특별시 | **50** | 50 | 제안액 | 공동시설만 지원 |
| | ㅇ광역시 | **60** | 40 | | |
| | ㅇ일반시·군 (광역시설) | **50 (70)** | 50 (30) | | |
| | ㅇ도서지역 | **70** | 30 | | 매립시설은 30%지원 |
| 6) 공공 열분해시설<br>7)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br>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br>9)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br>10) 해양폐기물 선별시설<br>11)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br>12)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 **70** | 30 | | |
| 13)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 **90** | 10 | | 15억원/개소까지 |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별도 지침에 따름(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환경부)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

# II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 | < 사 업 추 진 절 차 > | 예산절차 | < 세 부 내 용 > |
|---|---|---|---|
| Ⅰ 계획 | ① 사업 구상 | | ▸현재 운영현황 점검(반입-처리량 조사)<br>▸인근지역 최적화 추진방안 등 검토 |
| | ②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 |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 ③ 입지선정 | 사전예산협의<br>예산신청(매년)<br>교부(매분기)<br>수행상황보고 | ▸폐촉법 대상사업에 한함(조례로 정한 규모 포함)<br>▸폐촉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
| | ④-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타당성조사) |
| | ④-B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 |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제3항 |
| | ⑤ 예비타당성 조사(해당시)<br>⑥ 지방·중앙투자심사 |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함<br>▸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br>▸「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br>▸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
| Ⅱ 설계 | ① 기본 및 실시설계 | 재원협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br>▸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 시행 |
|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고시 | 총사업비 조정<br>(준공 전년도 2월말까지) | ▸폐촉법 대상사업에 한함<br>▸폐촉법 제11조의3(설치계획 승인 등) |
| |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 | ④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환경상조사 포함) | | ▸폐촉법 대상사업에 한함<br>▸폐촉법 제17조 |
| Ⅲ 공사 | 공사발주 및 계약, 시공·감리 | | ▸예산반영 (사전예산협의 후 1년)<br>▸사후환경영향조사<br>-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 Ⅳ 완료 | 시 설 검 사 | | ▸설치검사<br>-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 | 사 용 개 시 신 고 | 정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br>▸국고보조금 정산 : 준공 후 3개월 이내 |
| Ⅴ 운영 | 시설 운영 및 관리 | | ▸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시 기술진단 실시 및 환경부 협의 필수(폐쇄 타당성 입증자료 제출)<br>▸폐기물관리법 제50조(사후관리 등) |

※ 음영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대상에 한함

# Ⅰ. 계획

## Ⅰ-①. 사업구상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

□ **(주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 · 군 · 구)

□ **(시기)** <u>자원순환 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 전까지</u>

□ **(주요내용)** <u>사업규모(시설용량) 산정</u>, **표준설치비**(붙임2) **참고** <u>총사업비 산정</u>

□ **(사업구상시 고려사항) 주민친화형, 에너지 활용형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 사업구상 단계부터 인근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복합시설·편익시설의 종류 결정, 지하화 필요성 검토

○ 폐자원에너지(소각여열, 바이오가스 등)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와 공급 형태(스팀, 전기, 수소, 도시가스 등) 결정

**(1)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복합기능)**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외에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영화관, 쇼핑몰, 워터파크 등)과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복합시설 설치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② **(주민의견 선(先) 반영)** 시설구상 시부터 지역주민의견 적극 반영

-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설 지하화 검토
- 편익시설의 종류, 랜드마크 등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형 시설 설치 고려

③ **(주민 건강 및 환경권 보호)** 기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매립시설의 경우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도록 계획하여 악취, 먼지 저감

(2) 에너지 활용성 극대화

① **(소각여열 회수)**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회수·활용(스팀, 온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망*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산업단지에 열원 공급, 지역난방 연계, 온실 등과 연계한 사업 등

② **(바이오가스)**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 적용,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방안* 검토

*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수소 생산·저장시설, 수소충전소 등

**Ⅰ-②.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주체) 자원순환 시행계획**(시 · 도지사), **자원순환 집행계획**(시 · 군 · 구)

□ **(주기) 자원순환 시행계획(5년), 자원순환 집행계획(1년)**

□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서식1) 참고**

○ 시설용량, 사업기간, 재원별 투자계획, 지역간 최적화 계획 명시

□ **(변경수립·승인) "Ⅰ-③.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자원순환 시행계획·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완료한 이후 예산 신청할 것

□ **(유의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칙**

1. 시·도 권역 내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규모화 등
2. 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3.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4.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기술의 적용

## Ⅰ-③. 입지선정 (해당사업에 한함)

□ **(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 **(주체)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군·구)**

| 폐기물처리시설 | 대상기준 |
|---|---|
| 매립시설 |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 |
| 소각시설 |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 |
| 그 밖의 시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

□ **(시기) <u>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u>**

□ **(주요내용)**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 및 지역주민, 인접지자체와 협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여야 함

○ **입지선정 절차**

| < 입지선정 절차 > | | < 세 부 내 용 > |
|---|---|---|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 ▸폐촉법 제9조제1항 |
| ▽ | | |
|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 | ▸폐촉법 제9조제3항 |
| ▽ | | |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 조사계획 수립, 통보 및 공고 |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 ▽ | |
| | 조사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 |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 | ▽ | |
| | 지역주민 의견제출 |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 | 인접 지자체와 협의 | ▸폐촉법 제9조제7항 |
| 전략환경영향평가 |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
| ▽ | | |
| 입지선정 결정·고시 | | ▸폐촉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 |

□ **(필수사항) <u>입지결정 고시 또는 입지결정(변경) 고시 제출</u>**

○ **(입지결정(변경) 고시 전 단계인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반대 민원이 예상되므로 입지선정 절차 각 단계*의 완료결과와 향후계획 제출**

*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인접지자체 협의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

### Ⅰ-④-A.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81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조**

□ **(주체) 재정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군·구)**

※ 건설기술 진흥법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 검증을 위해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모든 재정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 **(주요내용)**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필수사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관련 증빙자료(서식1)

- ○ 시설규모의 산정근거
-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근거 (지하화 필요성·타당성 검토)
- ○ 주변 지역간의 최적화 추진결과
- ○ 기존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 ○ 주민 의견수렴 및 입지선정, 용지보상, 민원해소 결과
- ○ 잔재물의 연계처리, 최종생산물(퇴비, 에너지)의 수요처 확보

### Ⅰ-④-B.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적격성판단

□ **(근거)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제3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

□ **(주체) 민간투자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군·구)**

□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신청 전까지

□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

□ **(필수사항)**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적격성판단 검토보고서

## Ⅰ-⑤.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사업에 한함)

□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

□ **(주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시 · 군 · 구)**

○ 지자체 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전까지**

□ **(주요내용)**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 분석

□ **(필수사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통보서**

□ **예비타당성조사**

- **(절차)** ① 조사 요구서 제출 (**서식13,**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 기획재정부

  ② 대상사업 선정

  * 기획재정부 → 재정사업 평가 위원회 심의(분기별 1회, 수시개최) → 선정결과 통보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조사기간 : 9개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④ 조사 결과통보

  * 기획재정부 → 위원회 심의 → 환경부 통보 → 예산 정부안 편성

○ **조사 요구서 제출시 완료사항** (서식13 참고)

- 상위 중장기계획(자원순환 시행계획, 도시계획 등)에 반영
- 사업 예정부지 입지선정 및 사업기획 완료

  * 민자사업은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자료 준비 완료

-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완료
-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기획하지 않아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 (예타면제)**

| |
|---|
|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면제<br>- **(절차)** 예비타당성 면제요구 신청(시·군·구) → 환경부<br>→ 기획재정부(위원회 심의) → 면제 여부 결정 통보 |

Ⅰ-⑥-1. **지방재정투자심사** (해당사업에 한함)

□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

○ (관련 고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 **(주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 2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

○ (자체심사) 시·군·구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시·도 사업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 (의뢰심사) 추진 주체인 지자체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심사 의뢰

- (시·군·구 → 시·도 심사 의뢰)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시·군·구 → 중앙 심사 의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전까지**

○ (심사의뢰)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 (심사시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중앙(시・도) 투자심사 일정 (심사는 4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구분 | 의뢰 | | 심사 |
|---|---|---|---|
| | 중앙 | 시・도 | |
| 제1차 | 1.31까지 | 1.15까지 | 3.31까지 |
| 제2차 | 4.30까지 | 4.15까지 | 6.30까지 |
| 제3차 | 8.31까지 | 8.15까지 | 10.31까지 |

Ⅰ-⑥-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해당사업에 한함)

□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주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제외)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 **(주요내용)**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

○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시급성・필요성・경제성・재원조달능력 등 투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

- **(절차)** 타당성조사 의뢰 → 추진여부 검토 → 약정 →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검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결과통보

○ (신청시기) 정기 신청 및 수시신청(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안부와 협의 후 신청)

| 신청단계 | 제1차 | 제2차 | 제3차 |
|---|---|---|---|
| 시・군・구 → 시・도 | 1월 15일 | 4월 15일 | 8월 15일 |
| 시・도 → 행정안전부 | 1월 31일 | 4월 30일 | 8월 31일 |

Ⅰ-⑥-3. **지방재정영향평가** (해당사업에 한함) (서식 12 및 붙임 10 참조)

□ **(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 **(주체)**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지방 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전까지

□ **(주요내용)** 지자체가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면 미리 해당지자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절차)**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 예산절차 1 ] 사전예산협의

□ 업무 절차 ※ **반드시 예산신청 전까지 사전예산협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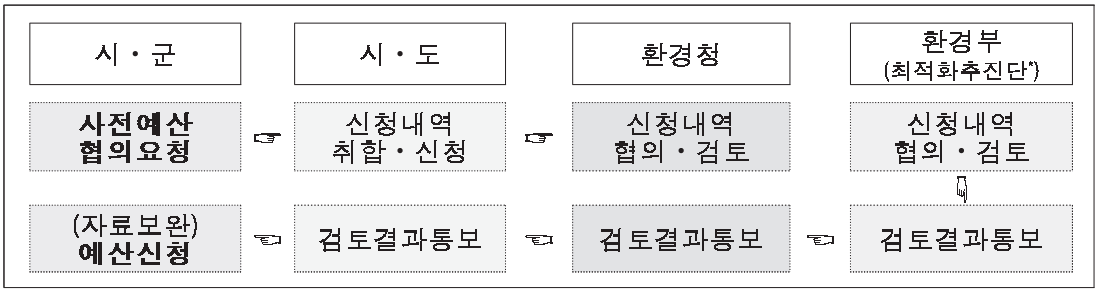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붙임7)

□ **대상 : 신규사업**(신설, 증설, 대보수 사업) **예산신청 전 제출** (사업기간 중 최초 1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제외)**

□ **아래 사업절차 이후 상시 요청**

○ 재정사업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 민간투자사업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적격성판단 이후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신청 전까지 적격성판단 검토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을 포함한다

※ 당해연도 이전에 사전예산협의와 예산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도 당해연도 신규사업으로 재신청할 경우 사전예산협의 재실시

□ **제출서류 및 요청방법**

○ **(제출서류)**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서식 1) 및 참고자료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3. 사전예산협의 검토사항 참조)

○ **(요청방법)** 문서신청 및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등록(붙임8. 시스템 사용방법 참조)

□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 **(결과통지)** 환경부에서 문서통보 및 '예산관리시스템'에 '검토결과서' 등록

○ **(조치사항)**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서(서식 2)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신청서 제출

## [ 예산절차 2 ] 예산안 신청

□ 업무 절차 ※ **매년 예산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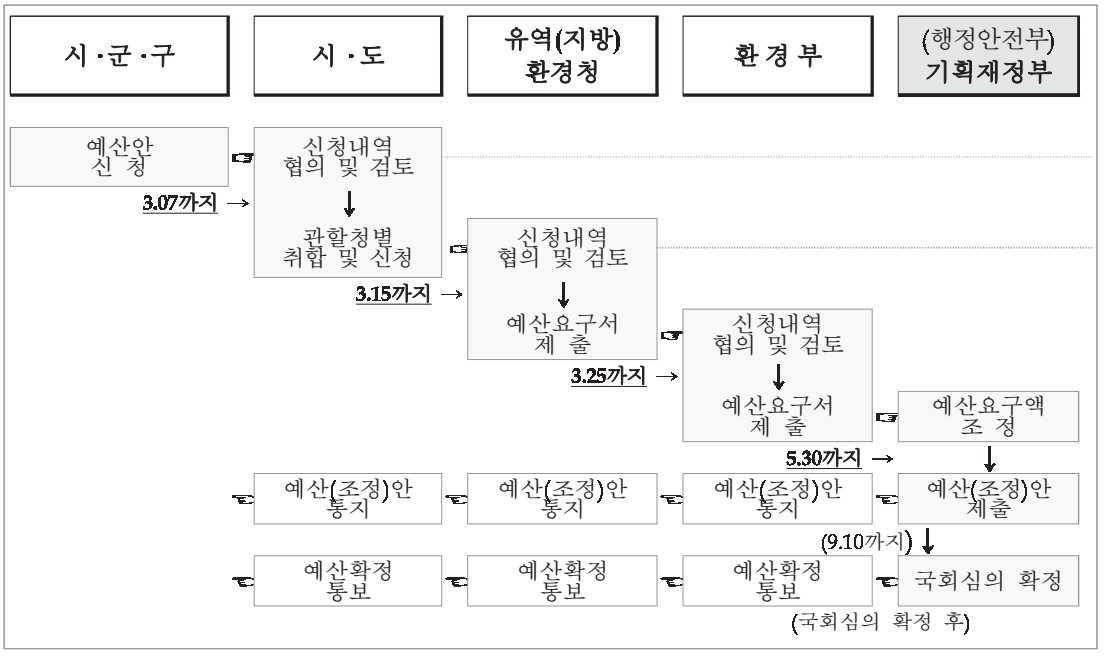


□ **대상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사업기간 중 매년 3.07까지 제출)

○ 사전예산협의를 완료한 **신규사업**

○ 이전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설계 · 시공중인 **계속사업**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참조)

| 구 분 | 제출서류 양식 | 제출기관 | 기한 |
|---|---|---|---|
| 시·군·구 |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3] | 시 · 도 | **3월 07일** |
| 시·도 |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3], [서식 4] | 환경부 또는 환경청 | **3월 15일** |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은 환경부로 직접 제출

○ **(신청방법)** 문서신청 및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안 신청' 등록(붙임8. 시스템 사용방법 참조)

□ **결과 통지**

○ e-나라도움 시스템 (e-호조 연계), 환경부 누리집 12월중 게시

- 환경부(www.me.go.kr) → 법령/정책 → 국회관련정보

## [ 예산절차 3 ] 예산 교부신청

### □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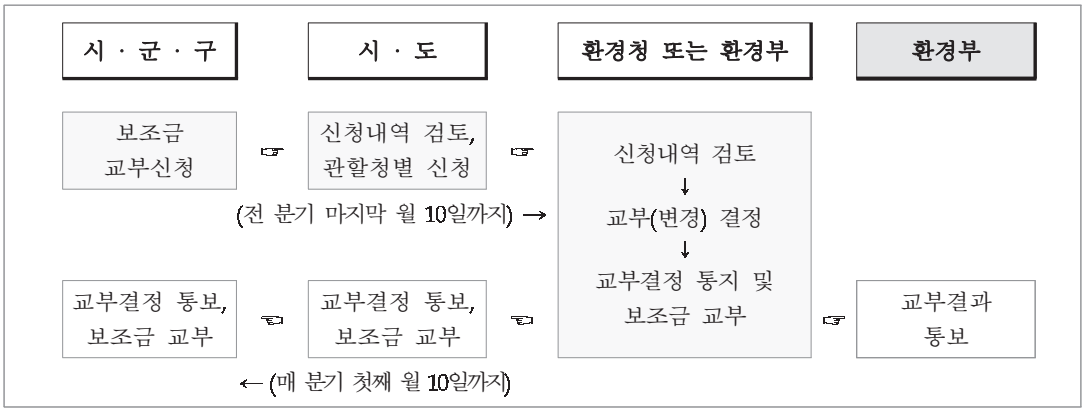


□ **대상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사업기간 중 분기별 제출)

○ 예산안신청 제출 후 국회심의 확정 통보된 **신규 및 계속사업**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6) 및 사업추진계획서(서식6의 붙임서식)

○ **(신청방법)** 문서신청 (전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제출, 1분기는 별도 지정)

- 시·군·구 취합 후 시·도→환경청(또는 환경부) 제출일 기준

□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V.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참조)

○ **(결과통지)** 환경청 또는 환경부에서 교부결정통지서(서식7) 문서통보

- 보조금은 분기별 소요액을 매 분기 첫째 월 10일에 교부

○ **(조치사항)**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예산절차 4 ] 수행상황보고

### □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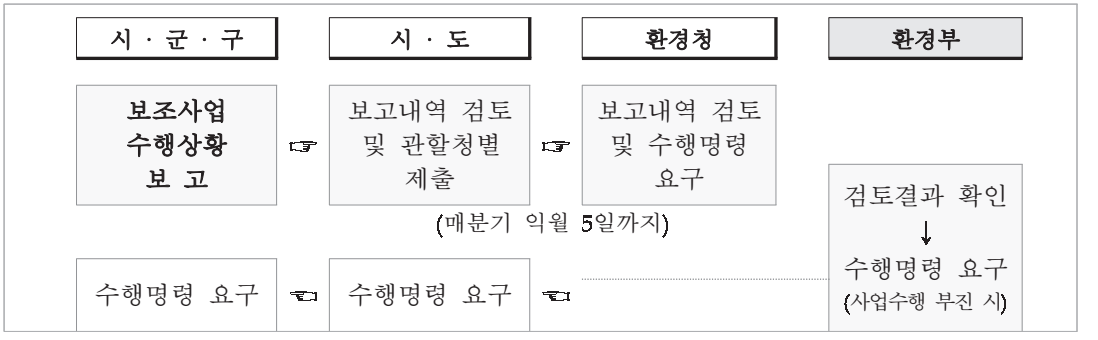


### □ 대상 : 보조금을 교부받은 모든 국고보조사업

###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서식8)

- 매 분기말까지의 실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계획 대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제출방법)** 문서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

- 시·군·구 취합 후 시·도→환경청(또는 환경부) 제출일 기준

### □ 검토결과 조치사항 (V.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참조)

○ 보고서 제출지연, 집행률 저조한 경우 시정명령, 재정집행점검 실시

○ 명령 위반시 현지확인 특별관리

○ 부진사업 예산감액, 교부결정 취소

# Ⅱ. 설계

## Ⅱ-①. 기본 및 실시설계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73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부터 제23조**

□ **(시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전까지

□ **(주요내용)**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설의 형식, 지반토질, 개략 공사비, 실시설계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 수행,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도서 작성

□ **(작성원칙)** 기본계획의 시설용량, 사업내용 및 기간, 총사업비 이내 작성

○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환경청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

- **실시설계 완료(공사발주 전) 재원협의 신청**
- 폐촉법 제4조 및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지하화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하여 설계결과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환경청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사항에 한해 국고지원

□ **(정책방향)**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4. 시설별 예산지원기준 참조)

| |
|---|
| **(1) 주민 건강 및 환경권 보호** |
| ① **(최적시설 설치)** 처리시설 계획 시 기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 ② **(방지시설 최적화)** 최적가용기법 도입으로 악취,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

○ 최근 10년간 폐기물종류별 발생량, 인구 증·감 추이 등을 바탕으로 폐기물원단위발생량을 산정 후 적정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붙임3.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의 세부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및 관련 규정(붙임1) 참조

○ **설계과정 중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하는 절차**는 대상사업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함

□ 설계과정 중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절차

**(1) 환경성조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조사대상**

| 구 분 | 대상시설 | 대체가능한 서류* |
|---|---|---|
| 폐기물시설촉진법 | 법 적용되는 전체 시설 | 환경영향평가서,<br>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br>설치승인 대상시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br>환경영향평가서,<br>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 환경성조사는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성조사서 제출

○ **조사항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참고

**(2) 설계의 경제성 검토(VE)**(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검토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10% 이상 조정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 발주청이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

**(3)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검토대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등

*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

**(4)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대상임. 아래 굴착심도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굴착
- 지하안전영향평가 : 20미터 이상 굴착

○ 사업계획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함

**(5)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 구 분 | 대상계획 | 협의 요청시기 |
|---|---|---|
| 전략환경영향평가<br>(시행령 제7조 [별표2]) | 1)「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
| | 3)「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
| 환경영향평가<br>(시행령 제31조제2항,<br>시행령 제47조제2항) | ·매립시설: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br>·소각시설: 100톤/일 이상<br>·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00톤/일 이상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br>(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전)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br>(시행령 제59조,<br>시행령 제61조제2항) | 사업계획면적이 아래 이상인 지역<br>·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br>·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br>·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br>·농림지역: 7,500㎡ 이상<br>·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br>·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등 | 사업 승인 전 |

**(6) 건설기술심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계획·조사·설계용역 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의견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은 중복받지 않아도 됨

**(7) 기타** : 그 밖의 타법에 따라 이행하는 절차

## [ 예산절차 5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

□ 업무 절차 ※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반드시 신청**

| 시・군 | | 시・도 | | 환경청 | | 환경부 (최적화추진단*) |
|---|---|---|---|---|---|---|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 신청** | ☞ | 시·도비 확인, 재원협의·총사업비 조정 신청 | ☞ | 신청내역 협의・검토 | | 신청내역 협의・검토 |
| | | | | | | ☟ |
| **공사계약 의뢰** | ☜ | 검토결과통보 | ☜ | 검토결과통보 | ☜ | 기획재정부 협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검토결과통보 |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붙임7)

□ **신청시기 :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계약 의뢰 이전**

- 세부사항은 본 지침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 3. 총사업비 관리절차 사.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참조

○ 예산 반영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설용량,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에 변동이 발생된 경우 사전에 환경청→환경부(→기재부) 협의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예산반영년도 1월말까지 신규등록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기본계획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도서 1식) 등

- 법령에 의해 시행한 조사용역비, 법정경비 지출증빙자료 등 포함

○ **(신청방법)** 문서신청,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서식 11) 및 참고자료

□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검토기준은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참조)

○ **(결과통지)** 재원협의 의견 또는 총사업비 변경승인 통보서 문서통보

○ **(조치사항)** 통보된 총사업비, 시설용량으로 공사계약 의뢰

-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총사업비 감액조정

## Ⅱ-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승인 (해당시설에 한함)

□ **(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2조**

□ **(대상)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 시설**

□ **절차**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절차 > | < 세 부 내 용 > |
|---|---|
| 입지선정 결정·고시 | ▸폐촉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 |
|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공고 | ▸폐촉법 제11조의3 제1,3항 |
|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공고 | ▸폐촉법 제11조의3, 제2,3항<br>▸폐촉법 시행령 제12조 |
| ▽ | |
| 시설 설치 | |

□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에 한함)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 첨부)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6.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
8. 환경성 조사서
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
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해당시)

※ 위 항목 중 1,2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단,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시설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제외)

## Ⅱ-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 (대상) 폐촉법 적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 구분 | 대 상 시 설 |
|---|---|
| 설치 승인 |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br>2.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br>5.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br>6. 매립시설 |
| 설치 신고 | 1. 설치승인 대상 시설의 규모 미만인 시설<br>2.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 변경 승인 대상 |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br>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br>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쪼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br>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br>6. 주요설비 변경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 절차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절차 > | < 세 부 내 용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 ▸지자체 → 시·도 또는 환경청 |
| ▽ | |
| 적정여부 검토(타 법률 저촉여부 검토) 및 승인·수리 | ▸시·도 또는 환경청 |
| ▽ | |
| 시설 설치(설치검사 등) | |
| ▽ | |
| 사용개시 신고 및 수리 | ▸지자체 → 시·도 또는 환경청 |

□ **설치승인·신고 수리권자**

○ 유역(지방)환경청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2 이상의 시·도 및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시·도가 설치하는 시설(단, 동일 시·도의 2개 이상의 시·군·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시·도지사 : 그 외 폐기물처리시설

□ **세부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참조**

## II-④.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등 (해당시설에 한함)

□ **(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및 제26조**

□ **(대상)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 시설**

□ **절차**

|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 > | < 세 부 내 용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 ▸폐촉법 제11조의3 |
| ▽ | |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
| ▽ | |
| 환경상 영향조사 | ▸폐촉법 제17조제2항 |
| ▽ | |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 ▸폐촉법 제17조제1항 |

## Ⅲ. 공사

### Ⅲ-①. 공사발주 등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77조**

□ **사업추진방식, 공사계약, 시공, 공사관리감독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준수**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

○ 시설을 설치한 후 각각의 시설들이 설계에서 정한 성능으로 정상 가동되는지 시운전을 통해 점검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예산절차 5 ] 총사업비 조정**

□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낙찰차액 감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구

□ 공사 착공 이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에 따른 물가변동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달청 사전검토를 받아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세부사항은 본 지침 'Ⅵ.총사업비 관리계획 / 3. 총사업비 관리절차 / 사.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참조

## Ⅳ. 완료

### Ⅳ-①. 사용신고 및 검사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주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설치자**

□ **(시기)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 **(제출서류) 사용개시신고서 및 시설설치 검사결과서* 제출**

○ 설치검사 대상 :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 예산절차 6 ] 국고보조금 정산

□ 업무 절차 ※ **준공 3개월 이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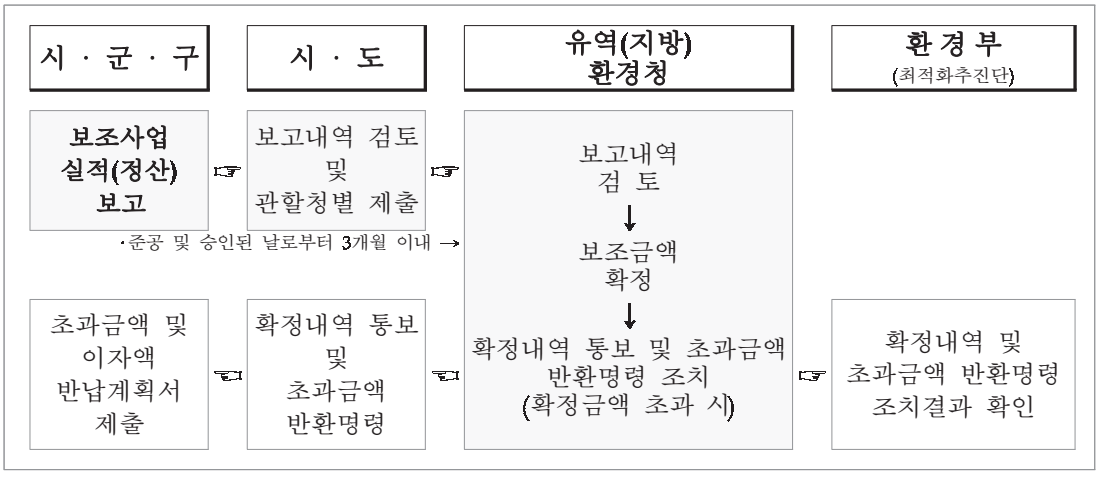


□ **대상 : 설치 준공된 국고보조사업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 2. 예산집행 및 정산 절차 - 라. 실적(정산) 보고 및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서식9)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참고

○ **(제출방법)** 문서신청 및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 교부, 집행, 정산'에 정산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 등록(붙임8. 시스템 사용방법 참조)

□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 **(결과통지)** 국고보조금 정산 심사·확정서 문서통보

○ **(조치사항)** 반납계획서 작성 및 반납고지서 발부 시 국고환수

- 국고보조금 교부시점과 거치기간의 이자 반납

- 국고 지원제외 대상 반납액 국고 환수

# Ⅴ. 운영

## Ⅴ-①. 시설 운영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주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 관리대장 작성

○ 운영자는 폐기물 반입량, 처리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록하는 '시설운영관리 일지' 및 '재활용제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단, 개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원료 및 제품관리대장 등 관계 장부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유지관리 요령

○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별·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반입폐기물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열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별「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안전관리계획에는 운영요원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방재장비수급계획, 긴급복구반 편성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Ⅴ-②. 정기 검사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 정해진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를 통보하여야 함

○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은 사용할 수 없음

○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

### Ⅴ-③. 기술진단· 지원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Ⅴ-④. 시설 운영 실적관리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0조의2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의 관할구역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름 (붙임4. 설치·운영 실태 평가시스템 자료제출 참조)

# III

#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1. 사전예산협의

□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예산투자 효율성, 준비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도모

□ 대 상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 **신규사업 (신설·증설·대보수 사업)**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제외)

□ 업무 절차

| 시·군 | | 시·도 | | 환경청 | | 환경부 (최적화추진단*) |
|---|---|---|---|---|---|---|
| **사전예산 협의요청** | ☞ | 신청내역 취합·신청 | ☞ | 신청내역 협의·검토 | | 신청내역 협의·검토 |
| (자료보완) **예산신청** | ☜ | 검토결과통보 | ☜ | 검토결과통보 | ☜ | 검토결과통보 |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붙임7)

□ 요청 시기 : 아래 사업절차 이후 상시 요청

○ 재정사업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 민간투자사업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적격성판단 이후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신청 전까지 적격성판단 검토보고서를 제출 가능한 사업을 포함한다.

※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예산신청 전까지는 사전예산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 당해연도 이전에 사전예산협의와 예산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확정단계에서 누락된 사업도 당해연도 신규사업으로 재신청할 경우 사전예산협의 재실시

□ 제출서류 및 요청방법

○ **(제출서류)**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서식 1) 및 참고자료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과 함께 제출

○ **(요청방법)** 문서신청 및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등록(붙임8. 시스템 사용방법 참조)

□ 검토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 **(결과통지)** 환경부에서 문서통보 및 '예산관리시스템'에 '검토결과서' 등록

○ **(조치사항)**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서(서식2)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신청서 제출

## 2. 사전예산협의 검토사항

###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여부**

- 국고보조사업 분류 및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대체신설 포함), 대보수 사업 여부

○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등 반영 여부**

-「자원순환 시행계획·집행계획」 상의 시설 설치계획 반영 여부와 계획을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 검토

○ **설치시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상의 목표연도와 일치 여부

- 계획인구,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산정 여부 및 지역 여건변화(대규모 개발사업 등), 정책방향 등 반영 여부

- 개발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하는 경우, 준공 이후 처리량 또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발 추진현황, 폐기물 발생량 추세, 유사 사례비교 등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규모 결정

- 관할지역 내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이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군부대 물량비율에 따라 지방비 일부를 군부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운반비용 및 처리비용 등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납부

- 기존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추가 설치사업은 처리량 증가사유, 향후 처리량 추이 등 현황분석 및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처리 등 다양한 처리방안 검토 후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음식물(음폐수),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방안을 최우선 검토

○ **총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 시설용량별 표준단가(붙임2)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

* 지하화 할 경우,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지하화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전예산검토요청서(서식1) 제출

* 단, 지하화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표준사업비의 1.4배 이내에서 설계결과 재원협의 또는 총사업비 조정 시 환경청 협의 후 환경부 승인사항에 한해 국고지원

-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국고 비지원대상 포함 여부

※ (예시) 총사업비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보조율 30%일 경우,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50억원에 30%를 곱한 15억원이 국고지원액

○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 여부**

- 인접 행정구역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 · 광역화 · 연계처리 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거나,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하여 권고한 사항 반영 여부

- 지자체 간 협의문서 또는 최적화 협약서 제출

### (2) 사업추진의 시급성

○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환경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대규모 개발계획 또는 기존 시설의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도래* 등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부족 여부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 소각시설
  -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시설 : 용량 관계없이 15년 이상
  - ·2005년 이후 가동 개시한 시설 중 50톤/일 초과는 20년 이상, 50톤/일 이하는 15년 이상
- 소각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 15년을 원칙으로 함

※ 도서지역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기술진단 결과서에 따름(39p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 참고)

### (3) 사업추진의 사전 준비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조기추진 가능성**

- 재정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행 여부,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적격성판단 완료 여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예타면제 절차 완료 여부

○ **설치부지 결정 등 민원해소**

-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 절차 완료 여부
- 국회, 감사원, 언론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수립여부

### (4) 예산투자의 효율성

○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 처리 후에 발생하는 잔재물(불연물, 폐수 등)의 예상 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직접, 위탁, 연계처리 등) 수립 여부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잔재물(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물질) 전체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

※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해양폐기물 선별시설의 재활용 잔재물*을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포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3)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선별·파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시설용량에 포함하여 산정 (붙임 3 참고)

○ **악취방지계획의 적정성**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악취방지시설이 설치계획에 반영된 경우

○ **기존 시설의 활용성**

- 기존 시설을 이용한 잔재물(불연물, 폐수 등) 처리방안 마련 여부(인근 처리시설과 연계 또는 부지 내 시설과의 공동이용 등)

○ **최종 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생성물(소각여열, 바이오가스 등)의 수요처 확보 또는 활용방안의 적정성 여부
- 음식물 사료 · 퇴비의 경우, 공급사와 계약체결 결과 등 공급처 확보

**(5) 정부정책 방향 이행도**

○ **탄소중립, 에너지활용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지자체**

○ **직매립 제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친환경매립시설 (불연물, 소각재에 한하여 매립) 설치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등의 재활용 잔재물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자체**

○ **불법폐기물 처리실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 결과 등급 우수시설 우선지원**

○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화 및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청정개발체제 (CDM)**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연계계획이 있는 사업 우선 지원** (다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감축량 모니터링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3. 예산신청 대상

□ **(필수)** 최적화추진단과 사전예산협의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 심의

○ 필수 절차를 이행완료한 사업에 한해 사전예산협의 가능

**(1) 사전 절차의 이행**

① **(기본계획 · 적격성판단 검토)** 사업 추진방식별 사전절차 이행

- 재정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 민자사업 :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판단 검토

② **(입지 결정)** 폐촉법 대상시설은 입지의 결정·고시 이행

③ **(주민 의견 선(先)반영)** 시설 구상부터 지역주민의 의견 적극 반영

-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설 지하화 검토
- 편익시설의 종류, 랜드마크 등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형 시설 설치 고려

**(2) 주민 건강 및 환경권 보호**

① **(최적시설 설치)** 처리시설 계획시 기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② **(방지시설 최적화)** 최적가용기법 도입으로 악취,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 매립시설의 경우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도록 계획하여 악취, 먼지 저감

**(3) 에너지 활용성 극대화**

① **(소각여열 회수)**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회수·활용(스팀, 온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망*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산업단지에 열원 공급, 지역난방 연계, 온실 등과 연계한 사업 등

② **(바이오가스)**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 적용,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방안* 검토

*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수소 생산·저장시설, 수소충전소 등

○ **(최적화 사업)**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 시·도 권역 내 2개 이상의 시·군·구가 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우선지원

- 기본협약 및 실시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국고보조율 상향

○ **('폐쇄 후 신설' 또는 '대보수'사업)**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에 적합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함

> ***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
> **① 2004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
> → 50톤/일 이하는 사용개시 후 10년 이상,
> 50톤/일 초과는 사용개시 후 11년 이상 경과한 후 실시한 기술진단결과서
> **② 2005년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
> → 50톤/일 이하는 사용개시 후 11년 이상,
> 50톤/일 초과는 사용개시 후 14년 이상 경과한 후 실시한 기술진단결과서
> **③ 도서지역 소각시설**
> → 모든 기술진단결과서 (위 인정기준의 최소 사용연한 이내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

- 미지원 대상(기술진단 여부 불문)
  ·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소모품 및 부대설비 교체 등
  · 시설별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도래* 이전에 보수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 – 소각시설
> ·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시설 : 용량 관계없이 15년 이상
> · 2005년 이후 가동 개시한 시설 중 50톤/일 초과는 20년 이상, 50톤/일 이하는 15년 이상
> – 소각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 15년을 원칙으로 함
> ※ 도서지역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기술진단 결과서에 따름(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 참고)

○ **(신·증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준공 이후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발 추진현황, 폐기물 발생량 추세, 유사 사례 비교 등 시급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지원

- 조기착공을 위해 민원해소, 입지결정·고시 완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적격성판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결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우선지원

## 4. 시설별 예산지원기준

### 1) 매립시설

#### 가) 매립시설

- **(신규)** 매립시설의 설치는 주변지역 영향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기존)**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이 5년 내외로 임박하여 증설이 필요한 경우
-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친환경 매립시설 신규·증설 우선 지원
- 매립시설의 상부를 시설물(지붕 또는 에어돔) 등 덮는 형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설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지원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설치승인 또는 신고 기관의 의견 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나목의2)의타),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고시)

#### 나)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 사용 종료 또는 사용종료가 임박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 확보가 어렵거나 사용종료매립지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지자체
-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13.4)」의 「붙임 1」 '매립지 순환이용사업 타당성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
- 착공 전 당해지역에 소각시설, 고형연료제조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되어 가동이 가능한 지역 또는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지역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시 지방비 부담)
- 주변지역 민원해소, 선별토사 등의 자원화, 해당 지자체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이용으로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비 절감 및 여열회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지역 우선 지원(지자체 직접 처리시 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방비 부담)

### 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 비위생매립지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신고)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매립지가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지(공구별· 단계별 종료 포함)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가 요구되는 시설

-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4)」의 「붙임 1」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
- 착공 전 당해지역에 소각시설, 고형연료제조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되어 가동이 가능한 지역 또는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지역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시 지방비 부담)
- 주변지역 민원해소, 선별토사 등을 자원화, 해당 지자체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이용으로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비 절감 및 여열회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우선지원(지자체 직접처리시 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방비 부담)
- 대상지가 사유지인 경우, 지자체가 정비 주체인 경우에 한해 국고지원 (등기부등본 등 대상지의 소유권 변경사항 및 매립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 2) 폐기물자원회수시설

### 가) 소각시설

- 시설규모 100톤/일 이상(300일/년 기준)을 설치하는 지역을 우선하나 지역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급적 50톤/일 이상의 규모를 설치 지향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외 반입대상 폐기물(재활용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대형폐기물, 하천 하구폐기물, 해양폐기물 선별 잔재물 등)이 증가된 경우, 최근 10년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추이 및 향후 예상 발생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 (붙임3 참조)
- 하수찌꺼기 건조물을 혼합소각하고자 할 경우, 건조 후 물량에 대하여 소각시설 용량으로 산정(단, 건조설비의 경우 생활하수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예산신청)
- 기준질 기준 최소 발열량 3,300kcal/kg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 및 대기오염방지설비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소각여열(스팀, 전기 등)을 이용·공급·판매가 가능한 지역(산업단지 열원공급, 지역난방·온실 연계, 열병합발전 등)을 우선 지원하되, 소각여열회수시설 국고보조는 발전설비에 한함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기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준수

### 나)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음폐수 처리대책이 필요한 지역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 필요한 경우, 음식물(음폐수),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해당 시설의 설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환경부)'에 따라 해당 부서와 협의(기존시설에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추가하려는 경우 포함)

- 시설규모 40톤/일 초과(300일/년 기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에 따라 전처리 공정을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구 분 | 전처리 공정 계열 수 |
|---|---|
| 40톤/일 이하 | 1계열 |
| 40톤/일 초과 ~ 150톤/일 이하 | 2계열 |
| 150톤/일 초과 ~ 300톤/일 이하 | 3계열 |
| 300톤/일 초과 ~ 400톤/일 이하 | 4계열 |
| 400톤/일 초과 | 5계열 |

-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가스, 열, 전기 등)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 생성된 가스를 포집·저장·이용할 수 있는 설비와 미활용 가스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소설비, 설비 부식이나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탈황, 제습 등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발전기, 보일러 등 바이오가스 이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제조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3호, '19.12)을 준수하여 안전설비 설치

- 악취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설비는 연중무휴 24시간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최종 배출되는 부산물(폐수, 고형물 등)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인접한 지역
- 바이오가스를 통해 수소생산, 고품질화, 저장설비를 설치하여 수소충전소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시설의 설치는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으로 공모하고 있으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환경부)'에 따라 해당 부서와 협의

### 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 지자체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 열, 전기 등의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매립가스 포집가능량 추정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발생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우선 지원
- 매립가스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지역, 매립폐기물이 전처리되지 않고 기반입된 지역, 유기성폐기물(하수찌꺼기 등) 반입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매립가스 활용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당분간 지속적으로 매립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 매립장 LFG 자원화 사업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추진계획을 검토한 매립지 보유 지자체
-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19호, 2018.12)」,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매립가스 저장시설 등의 내진설계를 포함하여야 함

- 기설치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운영중인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의 노후설비 교체 및 포집정·이송관로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 3) 재활용시설

#### 가) 생활자원회수센터

- 인접 자치구 또는 광역시 전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적 및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 일반 공공선별시설

-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를 위하여 20톤/일 이상(260일/년 기준)의 선별시설을 설치하거나,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과 집적화하여 설치하는 경우
- 기존 시설을 대체하여 재활용품 선별 작업여건 및 시설환경의 현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선별시설 선별률 개선을 위해 기계적 처리설비(파쇄설비, 감용설비 등) 또는 자동선별설비(플라스틱 광학선별기 등)를 설치·교체하는 경우
- 운영중인 시설이 화재,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되었거나, 설비의 고장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공공선별시설 내 투명페트병 별도 투입·선별·압축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초분광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AI기반 선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요처를 감안한 잔재물의 연료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적환시설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고지원 협의가능
- 재활용가능자원 선별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기·탈취 및 강제급기설비, 악취처리설비를 포함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미세먼지($PM_{10}$) 200㎍/㎥)

**(2)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 소금, 뻘 등이 묻은 해양폐기물을 선별·적정처리 목적으로 기계적 선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양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설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을 보관하는 시설로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및 불연성(폐콘크리트 등 폐재류) 폐기물을 기계적 또는 수선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인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연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우선지원

**(4)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회수물 처리계획(물질 및 열적 재활용)이 수립된 경우
- 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한 지역 중에서 소각·매립량이 많아 폐기물 처분 부담금 규모가 크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이 높아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자체 우선 지원
- 파쇄기, 타격식·디스크·풍력식 선별기, 분쇄기, 압축기, 집진기, 방음장치, 컨베이어 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함

**(5)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 공동주택, 거점수거시설에서 별도 배출된 폐비닐 수거품 내 이물질을 제거 · 선별하여 폐비닐 선별효율 제고 및 잔재물 처리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지역
- 기존 생활자원회수센터 일반 공공선별시설 내 연계설치 가능한 지역
- 파쇄기, 타격식·디스크·풍력식 선별기, 분쇄기, 압축기, 컨베이어 시설 등을 포함

**나) 열분해시설**

-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한 잔재물(또는 공공 매립 · 폐기물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폐기물 중 선별된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연료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원료로 생산 ·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 4) 기타시설

### 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가미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자원 회수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주민수익 향상을 위한 주변관광지, 문화유산 자원 등과 연계하는 사업
- '22년까지 후보지 선정 공모('23년 신규사업)이후 타당성조사 시행하였으나, '23년부터는 서식 14 사업계획서를 포함, 사전예산협의 및 예산신청 실시

* '23년 한시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예산검토 가능, 다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진행, 완료)'사업은 사전예산검토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존 및 증설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신규시설로서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에 대해 국고보조율 50% 적용)

* 붙임 11 사업 시설유형 참고

- 국고보조금액 : 30억원 이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은 신·증설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 가능하며, 이 경우 서식 14 사업계획서에 시설의 종류, 폐자원에너지 활용 계획 및 주민의견수렴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에 폐자원 활용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업무매뉴얼('23.1)」참고하여 사업 계획 및 추진

### 나)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 도서 및 산간지역 등으로, 해당 읍·면 이하 지역단위 분산처리가 효율적인 농어촌 지역
- 2개 이상의 도서를 연계, 주기적으로 선박 수거하여 본섬에 거점(집적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지원(최소 시설용량은 200kg/hr 이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시 해당 도서지역에서의 설치·운영비의 경제성 검토 시행 (개별 도서별 수거·선박운반, 거점수거·소각 방식을 비교, 산출근거 자료 제시)

- 소각(도서지역에 한함), 매립, 재활용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처리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다) 설치 · 운영 실태평가 정밀기술지원 시설의 개선사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제5항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한 시설 중 '기술지원 결과보고서'에 따라 설비 보완 등을 통한 성능향상 및 시설 수명연장이 가능한 시설개선 사업
- 국고보조금액 : 6억원 이내 (보조율은 시설별 국고지원 비율에 따름)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08호, '21.10)」 제17조(기술지원) 중 시설개선비용 산출이 포함된 '정밀 기술지원'에 한함

### 라) 그 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5. 예산안 신청·편성절차

□ **목 적**

○ 보조사업자의 연차별 사업비 요구액에 대하여 사업 기간과 진행정도를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집행 달성

□ **대 상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사업기간 중 매년 3.7까지 제출)

○ 사전예산협의를 완료한 **신규사업**

○ 이전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설계 · 시공중인 **계속사업**

□ **업무 절차** ※ **매년 예산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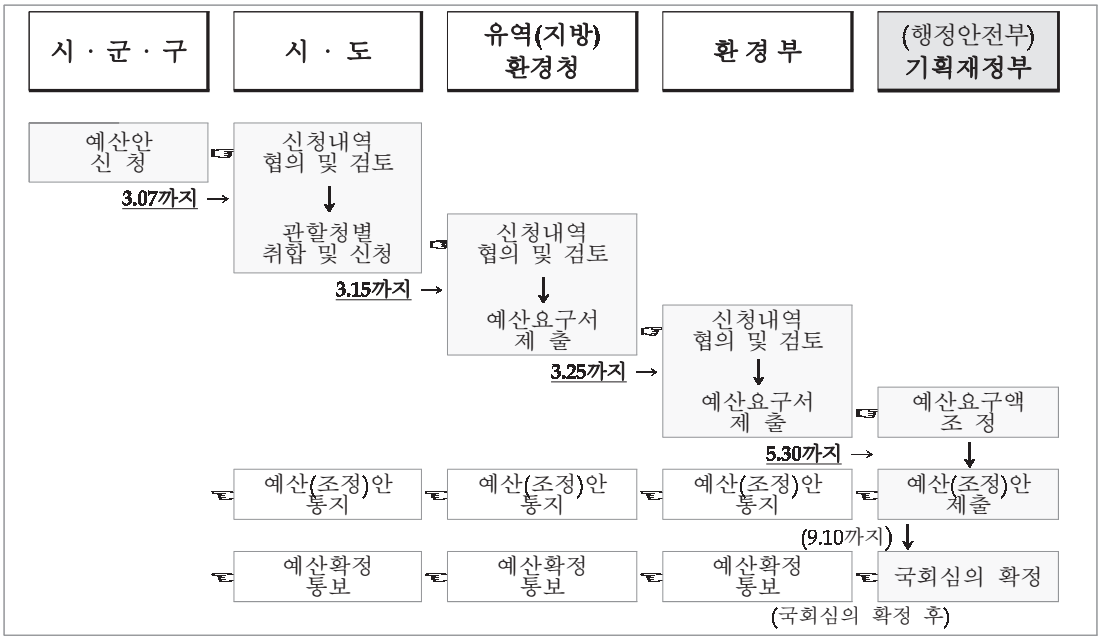


□ **신청기한 및 서류**

○ 시 · 군 · 구 → 시 · 도 : **3월 7일까지**

○ 시 · 도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3월 15일까지**

※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지 않은 보조사업은 환경부로 직접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3월 25일까지**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 의거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보조사업자는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엄수

| 구 분 | 제출 양식 | 제출 기관 | 기한 | 부 수 |
|---|---|---|---|---|
| 시 · 군 · 구 |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3] | 시 · 도 | 3월 07일 | 각 1부 |
| 시 · 도 |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4] | 환 경 청 | 3월 15일 | 각 2부 |
| 환 경 청 | 사전검토결과서, [서식 4], [서식 5] | 환 경 부 | 3월 25일 | 각 1부 |

○ 환경청→환경부(서식5) 취합 신청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여건, 실 집행률, 완공예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의 사업 우선순위를 제출할 것

- ‘Ⅴ.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방안’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진도에 따라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간 조정검토(안)을 제출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 도,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하여 환경부에 신청

○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를 첨부

○ 완공예정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신청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실시설계 준공보고서 및 설계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있을 경우, 납부액 및 예상납부액 기재, 지방재정 공시현황 및 납부대장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방법**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문서제출과 병행하여 예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 ·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안 신청 및 편성’ 메뉴의 ‘예산안 신청’을 등록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

○ **(결과통지)** 환경부 누리집 게시

- www.me.go.kr → 법령/정책 → 국회관련정보 → 예산
- 기획재정부 조정(안) 9~10월 중, 국회 심의확정 12월 중

○ **(조치사항)** 분기별 예산교부 신청 및 수행상황 보고

# Ⅳ

#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 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 1. 기본방향

□ 폐기물 분야 보조금의 집행관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예산집행목표 : 상반기 실집행률 55%, 연말 실집행률 90% 이상**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기초 지자체 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부진한 사업은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 시기 조정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

## 2. 예산 교부

□ 예산 교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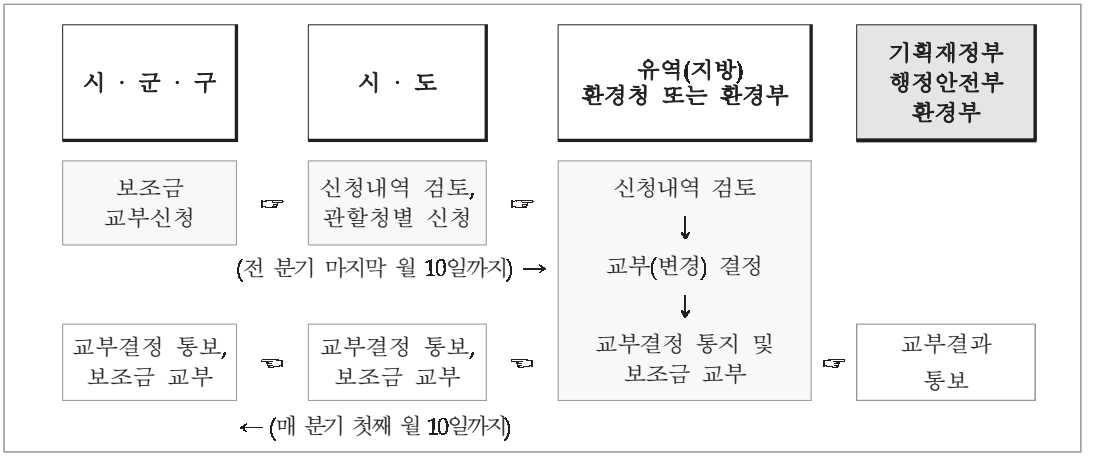

## 가. 보조금 교부신청 (지자체→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 신청기한 (보조금법 제16조)

○ 시 · 군 · 구는 집행실적, 집행계획 등을 고려한 분기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1분기는 별도 지정 일까지) 시 · 도를 거쳐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

○ 시 · 군 · 구는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결과 총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단계별 관리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검토 및 조정하여 신청

### □ 신청서류 (보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6」)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계획서(「서식 6」의 붙임서식)를 교부신청서에 첨부

## 나. 교부결정 및 통지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지자체)

### □ 교부결정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변경결정 포함)하거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 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및 사업여건 등

### □ 교부결정의 통지 (보조금법 제19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서식 7」)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지자체,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며, 보조금은 분기별 소요액을 매 분기 첫째 월 10일까지 교부

## 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지자체)

### □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제3항)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 □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법 제21조 제2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9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 지원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법 제31조, 제33조의2, 시행령 제13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라. 보조금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보조금법 제34조 제2항)

### 마. 보조금의 이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과 재이월은 아래 사항에 한해 환경부(또는 환경청)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본 사항에 한해 재이월 가능)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년 이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거나 예산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3. 예산 집행 및 정산 절차

### 가. 수행상황 보고 (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 **보고대상 및 기한** (보조금법 제25조)

○ 보고대상 :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

* 종료된 사업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

○ 작성기준 : 매분기말까지의 실집행실적

○ 보고기한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 보고서식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서식 8」)

※ 사업추진실적,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명령** (보조금법 제26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사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관련기관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조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통해 검토

○ 검토과정에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집행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검토 요청

○ 유역(지방)환경청은 수행상황 검토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며, 보조사업자가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의 수행명령(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 명시)을 환경부에 조치 요구(위임 보조사업)

○ 환경부는 보조사업자가 수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일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다. 검사 및 확인

□ **검사·확인 방법** (보조금법 제36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예산내역 검토 및 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때에는 최적화추진단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

○ 검사·확인 시기

- 보조금 예산신청 또는 교부결정 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 명령 및 정산보고 시 등

□ 「재정집행점검반」의 구성·운영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필요시 「재정집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한 특별관리, 예산삭감 등 집행구조 개선 지속

○ 점검반 구성 : 환경부(환경청) 및 최적화추진단 업무담당 등

○ 주요 점검내용 (재정집행점검표「서식 10」참조)

-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비(이월예산 포함) 집행률 확인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또는 집행의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 등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함
- 점검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나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

□ 재정집행상황 자체 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획재정부)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이 실시간 관리되므로 전산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실적 입력 철저 관리

## 라. 실적(정산) 보고 (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 보고대상 및 기한 (보조금법 제27조)

○ 보고대상 : 보조사업 준공, 보조사업 폐지승인

○ 제출기한 : 준공 및 폐지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환경부 및 기재부 재원협의 과정을 통해 승인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의 준공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제출서식 :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서식 9」)

○ 제출방법 : 문서제출,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예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 · 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 교부, 집행,정산'** 메뉴의 **'정산 실적보고서'**를 등록하고 **'정산 심사 · 확정'** 확인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증빙서류 : 계약내역, 재원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및 준공보고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또는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등) 증빙자료},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 **보조금액의 확정 및 정산** (보조금법 제28조 및 제29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2개월이내(보완기간 제외)에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명령 조치)

○ 검토과정에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집행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요청

○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의 반환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

○ 보조금의 정산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 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실시설계 및 환경부·기재부 재원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승인된 주민편익시설은 사업기간 내 집행할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사 착공이후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편익시설의 설치비용 중 국고는 반환하고, 지방비에 한해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폐촉법 제21조)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 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붙임9) 참조

○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미집행한 사업비 또는 납부받은 지체상금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정산시 실적보고시점(사업기간 완료) 이전년도까지 납부받은 원인자부담금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국고보조금을 재산정하여야 함

- 근거서류 : 납부대장, 통장사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등 첨부

○ 자료의 보완 및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인자부담금을 누락·축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패널티 부과

- 계속사업의 경우, 총 국고 10%p 삭감 및 당해연도 예산 미지급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예산협의 시 우선순위 미반영

## <정산절차 및 기준>

○ 정산절차

보조사업 완료 (준공 및 승인)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접수 ☞ 국고교부내역 및 정산서류 검토 ☞ 자료보완 요청 (필요시) ☞ 보조금액 확정 및 통보

○ 정산기준

| 구 분 | 국고정산 인정대상 | 국고정산 불인정대상 |
|---|---|---|
| 공통 사항 | 회계부서 지출담당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결의서<br>※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 회계부서 지출담당자의 서명(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결의서<br>*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른 부분(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 |
| 공사 및 용역 | ○ 계약서 : 지출결의서 상의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 계약서(변경 계약 시 변경사유 포함)<br>○ 준공정산확인서 : 준공금액과 계약금액 불일치시 제출<br>○ 준공검수조서 :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사조서 | 좌측의 정산인정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br>○ 토지보상비: 보상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용비용, 이주대책 등의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br>○ 민간투자사업 관련비용: 영업준비금(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br>○ 장비구입비: 수거차량 등의 장비구입비(단,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br>○ 사무용품비, 홍보비, 보조금 확정 이전의 출장여비 등 |
| 관급 자재 | ○ 물품검수조서: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계약서 및 검수조서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사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검수조서<br>※ (1) 소액의 물품구매인 경우 내부결재 문서로 대체<br>(2)지출결의서 금액과 납입고지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대체 | |
| 시설 부대비 | ○ 부대비용 : 방한화, 안전화 등 안전용품비, 사업 관련 심의비용 등 공사이행을 위해 필수적 소요되는 비용, 영수증·고지서 등 제출 | |
| 민간 투자사업 | ○ 실시협약 및 준공 재무모델<br>○ 최종 실시협약서<br>○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한 계약서, 지출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세금계산서 | |

※ 기타 사전예산협의, 재원협의, 총사업비 최종확정내역, 국고 확정 및 교부내역,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검수조서, 위수탁협약서 등 정산관련 자료 반드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본)의 지출증빙자료(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행한 지출내역)를 제출하여 정산인정 여부 결정

# V

#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 Ⅴ.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 1. 기본방향

□ **예산 집행 실집행률 목표 : 상반기 55%, 연간 90% 이상**

□ 기관별(지자체, 환경청, 환경부) 집행률 제고 대책 추진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기초 지자체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부진한 사업은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 시기 조정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

## 2. 사업단계별 집행률 제고 방안

### 가. 사전예산검토

□ 사업준비성이 결여되어 사업지연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전예산검토 단계부터 미반영하여 사업배제할 수 있음

○ 입지선정 등 설치부지 확보 여부, 필요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지연 요소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철저 검토

### 나. 예산편성

□ 설계 중인 사업은 연내 공사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

○ **(신규사업)** 설계비가 반영된 사업은 설계용역 조속 발주 및 계약

○ **(계속사업)** 사업추진공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수별 계약금액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최소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 낙찰차액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등 이·불용액 최소화

| 구 분 | 국고지원 세부기준 |
|---|---|
| 계속사업 | ○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br>- 2024년 완공예정사업 : 완공소요 보조금 전액지원<br>- 2025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보조금의 40% 이하<br>- 2026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보조금의 20% 이하<br>- 2027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보조금의 10% 이하<br>※ 지급기준은 준공시점, 사업진행률, 재정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신규사업 | ○ 2024년 완공예정 사업은 완공소요 보조금 전액 지원하되, 국고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사업기간 2년 이상 사업의 경우, 2024년에는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추진 공정상 공사착공이 가능한 경우 시설 공사비 일부(총 국고보조금의 30%까지) 지원 가능 |

## 다. 예산집행관리

###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변경 절차 생략

### □ 예산집행실적 주기적 점검 실시

○ 매월, 분기별 및 수시로 집행점검

○ 필요시, 현장확인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전년도 이월사업은 상반기 전액 실 집행을 목표로 특별관리 실시

□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부진사업 예산 감액지원 및 패널티 적용**

<table>
<tr><th>구 분</th><th>국고의 건전한 집행구조 정착을 위한 부진사업별 감액기준</th></tr>
<tr><td>집행부진 사업</td><td>○ 계속사업으로서 '22년말 기준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table>
<tr><th>구 분</th><th>감 액 비 율</th></tr>
<tr><td>**'22년 예산 실집행률** 50% 미만<br>('23.5월말기준 실집행률 30% 미만)</td><td>30%</td></tr>
<tr><td>**'22년 예산 실집행률** 30% 미만<br>('23.5월말기준 실집행률 20% 미만)</td><td>40%</td></tr>
<tr><td>**'22년 예산 실집행률** 20% 미만<br>('23.5월말기준 실집행률 10% 미만)</td><td>60% 이상</td></tr>
<tr><td>**2년 연속('21년～'22년) 집행률** 10% 미만</td><td>예산편성 제외</td></tr>
</table>
※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은 전문기관이 실 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td></tr>
<tr><td rowspan="2">지자체 예산 패널티</td><td>○ 계속사업의 경우, 총 국고 10%p 감액 및 당해연도 예산 미반영<br>○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예산협의 시 우선순위 미반영</td></tr>
<tr><td>-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누락·축소한 지자체<br>- 사업 완료 후 정산절차 또는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br>-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최하위 시설로 선정된 지자체</td></tr>
</table>

## 라. 사업의 취소 및 국고 환수

□ 2년 연속 미착공한 계속사업은 사업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업추진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기 교부된 국고는 이자 포함하여 환수조치

# VI

# 총사업비 관리계획

# VI. 총사업비 관리계획

## 1. 개 요

### 가. 목 적

□ 단위사업별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나. 대상사업

□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 다. 기본방향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아래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관리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 대상기준 |
|---|---|
| 매립시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 |
| 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 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제외한 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고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은 동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따른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에 따름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

○ 다음 연도 완공 예정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시,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총사업비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완공연도에는 총사업비 변경 불허

## 2. 총사업비 산정기준

### 가. 총사업비 산정 시 고려사항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을 반드시 준수**

□ **(신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붙임2)'를 기준으로 개략 총사업비를 산정한 뒤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관리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 개정에 따른 지하화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도 사전예산검토, 예산신청 시 표준사업비로 신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재원협의·총사업비 조정 시 환경청 협의 및 환경부 승인사업에 한해 국고지원

- 사전예산검토시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 표준사업비를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표준사업비 한도로 조정

□ **(계속사업)** 기 협의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총사업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추진계획에 따른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예산 신청

-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확정된 총사업비(물가상승분 반영)를 기준으로 잔여사업비를 신청. 특히, 다음연도 준공예정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산정

- 준공연도가 1년 이상 남은 계속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연내 전액 집행되도록 차수계약 준공일정을 마련, 이월이 방지되도록 사업비를 산정하여 신청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및 관리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공동시설 포함). 단,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사용할 수 있음

○ 원인자부담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산정

※ (예시) 총사업비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 국고보조율 30%일 경우, 국고보조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50억원에 30%를 곱한 15억원임

○ 신규사업 신청 시 신청시점(예산반영 이전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보유금액(이자포함)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정산 시 실적보고시점(사업기간 완료) 이전년도까지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액(이자 포함)을 정산보고서에 기입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산정 (붙임9.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이자산정 방법 참고)

-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을 알 수 있는 관련서류(납부계획서, 납부대장, 고지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원인자부담금을 누락·축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신규사업 예산 검토 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는 각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보유분 중 지자체별 반입비율 등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분담

- 다만, 시설 입지 및 운영지자체의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는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나. 총사업비 산정방법

□ **총사업비**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 1) 공사비

○ 각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 · 운영지침에 제시된 시설규모 산정방법 (붙임3 참조) 및 공사비 산정식을 적용하여 공사비(토목 · 건축 · 기계 · 전기 · 조경) 산정

○ 총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 · 발굴비, 임목 · 지정 · 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 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 ·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 부담금 · 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 준공도서전산화비용 · 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포함

○ 주민편익시설(「폐촉법 시행령」 제24조) 설치비는 '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폐촉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20.12.10 이전 설치계획 승인 완료시설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의 10% 이내
- '20.12.10 이후 설치계획 승인 완료시설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의 20% 이내로 별도 추가 지원 가능, 단,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한해 지원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계획은 실시설계 및 주민협의체 협의결과가 반영된 것에 한함

### 2) 보상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지매입 등에 따른 보상비를 말하며,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토지 매입 또는 취득과 관련된 경비는 간접 보상비에 해당하므로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

### 3) 시설부대경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기획재정부의 요율변경 시 변경요율 적용)

**< 직 선 보 간 법 >**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아래의 직선보간법으로 요율을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미만은 절삭

### (1) 설계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

○ 설계수행시 수반되는 관련 조사비, 시험비, 검사비도 실시설계비에 포함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검토비
- 사업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지하안전영향평가비, 장외영향평가비, 통합허가 용역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 준공에 따라 소요되는 설치검사수수료, 초기·정기안전점검비, 설치 검사비, 사용전검사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비 등

※ 준공에 따른 검사비 등은 설계비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비 중 조사용역비로 산입하여 인정

### (2) 감리비

○ 설계서대로 공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비용 등

○ 책임감리 대상 현장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 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의거 적정 안전관리기술인 투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22년 계속 및 신규사업)

- 다만, (각 부처는) 기준요율 내에서 최대한 적정 안전관리기술인 우선 투입에 노력하여야 하며, 별도 지원여부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협의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을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과)와 사전에 협의

## □ 시설부대경비 요율

< 시설별 시설부대경비 적용방법 >

| 시설 종류 | 감리 구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
| 매립시설 | 비상주 감리 | 건설부문 | 건설부문 | 건설부문 |
| | 전면 책임감리 | | 단순한 공종 | |
| 매립 외 처리시설 | 비상주 감리 | 산업플랜트부문 | 건설부문 | 건설부문 |
| | 전면 책임감리 | | 복잡한 공종 | |

### 1)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 공 사 비 |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 공사감리비[1] | 시설부대비[2] |
|---|---|---|---|---|
| 5 천만원 까 지 | 3.35 | 6.42 | 3.02 | 1.08 |
| 1 억 원 까 지 | 3.19 | 6.09 | 2.85 | 0.90 |
| 2 억 원 까 지 | 2.69 | 5.11 | 2.26 | 0.72 |
| 3 억 원 까 지 | 2.53 | 4.78 | 2.06 | 0.72 |
| 5 억 원 까 지 | 2.36 | 4.46 | 1.89 | 0.72 |
| 10 억 원 까 지 | 2.17 | 4.07 | 1.66 | 0.63 |
| 20 억 원 까 지 | 1.97 | 3.71 | 1.53 | 0.36 |
| 30 억 원 까 지 | 1.88 | 3.54 | 1.48 | 0.36 |
| 50 억 원 까 지 | 1.80 | 3.41 | 1.45 | 0.27 |
| 100 억 원 까 지 | 1.71 | 3.24 | 1.41 | 0.25 |
| 200 억 원 까 지 | 1.61 | 3.06 | 1.37 | 0.23 |
| 300 억 원 까 지 | 1.57 | 3.01 | 1.35 | 0.23 |
| 500 억 원 까 지 | 1.50 | 2.90 | 1.33 | 0.23 |
| 1,000 억 원 까 지 | 1.45 | 2.79 | 1.30 | 0.23 |
| 2,000 억 원 까 지 | 1.39 | 2.70 | 1.28 | 0.21 |
| 3,000 억 원 까 지 | 1.37 | 2.64 | 1.25 | 0.19 |
| 5,000 억 원 까 지 | 1.32 | 2.58 | 1.23 | 0.17 |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2)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의 50%를 가산한다. ('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2)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 구 분 / 공 사 비 |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
|---|---|---|
| 5 천 만 원 까 지 | 3.12 | 8.01 |
| 1 억 원 까 지 | 2.91 | 7.46 |
| 2 억 원 까 지 | 2.76 | 7.06 |
| 3 억 원 까 지 | 2.60 | 6.66 |
| 5 억 원 까 지 | 2.47 | 6.32 |
| 10 억 원 까 지 | 2.30 | 5.89 |
| 20 억 원 까 지 | 2.18 | 5.58 |
| 30 억 원 까 지 | 2.05 | 5.26 |
| 50 억 원 까 지 | 1.95 | 4.99 |
| 100 억 원 까 지 | 1.81 | 4.65 |
| 200 억 원 까 지 | 1.72 | 4.41 |
| 300 억 원 까 지 | 1.62 | 4.16 |
| 500 억 원 까 지 | 1.54 | 3.94 |
| 1,000 억 원 까 지 | 1.43 | 3.67 |
| 2,000 억 원 까 지 | 1.36 | 3.48 |
| 3,000 억 원 까 지 | 1.28 | 3.28 |
| 5,000 억 원 까 지 | 1.21 | 3.11 |

※ "산업플랜트"란 하수,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은 건설부문요율 적용)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 소각시설 용량 및 예산(안) 산정 (참고) (기계적 처리 + 소각) >**

①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 : 46톤/일

② 실제 설치시설 및 용량 : 기계적 처리시설(불연물 등 제거시설) 62톤/일 + 소각시설 46톤/일

③ **예산(안) 산정(소각시설 용량산정 기준으로 산정) :**
60톤/일(46톤/일×365일÷300일<가동일>),
**60톤/일×5.82억원/톤 = 349억원**
→ **시설용량은 소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적 처리시설 등의 용량은 제외하고 순수한 로의 설계용량만으로 산정**

### 3)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단위 : %)

| 공 사 비 | 개 산 요 율 | | |
|---|---|---|---|
|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100 억 원 까 지 | 9.66 | 10.73 | 11.80 |
| 200 억 원 까 지 | 7.34 | 8.14 | 8.97 |
| 300 억 원 까 지 | 6.24 | 6.92 | 7.62 |
| 400 억 원 까 지 | 5.48 | 6.09 | 6.70 |
| 500 억 원 까 지 | 4.96 | 5.52 | 6.07 |
| 700 억 원 까 지 | 4.38 | 4.87 | 5.35 |
| 1,000 억 원 까 지 | 3.93 | 4.36 | 4.79 |
| 1,500 억 원 까 지 | 3.44 | 3.82 | 4.21 |
| 2,000 억 원 까 지 | 3.11 | 3.45 | 3.79 |
| 3,000 억 원 까 지 | 2.73 | 3.03 | 3.32 |
| 5,000 억 원 까 지 | 2.32 | 2.57 | 2.82 |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위 기준요율은 '22. 5. 1 이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22. 5. 1 이전 계약된 계속사업은 전면책임감리사업장 중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시행일 이후 잔여공사기간에 대해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제70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를 자율조정하되, 계약건당 조정한도는 별도로 정한다.

## 3. 총사업비 관리절차

| | |
|---|---|
| 사 업 구 상 | ▪「자원순환 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 타당성조사 후 추정 총사업비 산정(붙임2. 표준단가 적용)<br>▪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사전예산협의, 예산신청-편성, 총사업비 관리 대상 신규등록보고서 제출 |
| 예비타당성 조사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함<br>-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에 의거 예타면제 협의 |
| 기 본 설 계 | ▪ 설계 후 추정 총사업비 변경 시 환경청 협의 및 환경부 승인<br>→ 사업추진 재검증 |
| 실 시 설 계 및 재 원 협 의 | ▪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환경청 또는 환경부와 재원협의 (실시설계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 재원협의와 총사업비 변경을 일원화하여 진행)<br>▪ 재원협의 의견 반영 후 총사업비변경 환경부 승인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 |
| 발주 및 계약 | ▪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br>▪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발생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변경 요구 |
| 시 공 및 준 공 | ▪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 전 또는 착공 후 총사업비 변경 시 환경청(또는 환경부)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br>▪ 다음연도 완공되는 사업을 총사업비 변경 시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완공 전년도까지 환경청(또는 환경부)에 변경 요구 (완공 당해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변경 불가)<br>▪ 완공 30일 이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완료보고서 제출<br>▪ 완공 3개월 이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후 환경청(또는 환경부)심사·확정 |

※ 총사업비 관리대상의 총사업비 변경승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

(지자체 신청 → 환경부(환경청) → 기획재정부 승인)

## 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내용

| 사업단계 | 총사업비 관리 주요사항 |
|---|---|
| 기본계획 | (107조) 관리대상 사업은 매년 1월말까지 신규등록보고서 제출<br>(31조) 일괄입찰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 |
| 기본설계 | (18조)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br>- 제출서류 :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지침 제57조, 건축사업) |
| 실시설계 | (21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br>(23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입찰·발주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br>- 제출서류 : 설계VE 결과,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제57조, 건축사업),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제22조),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br>※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진행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협의* |
| 공사 발주 및 계약 | (25조) 기재부에서 승인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br>(26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
| 시공 | (27조)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총사업비 협의*<br>- 조정 가능 사유(제64조) :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법령 제·개정 및 연약지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 |
| 준공 | (110조) 사업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

□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사례 ('19~'21)

| 순번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위반현황(건) | | | 총계 (건) |
|---|---|---|---|---|---|---|
| | | | '19 | '20 | '21 | |
| 1 | 공사계약 후 협의없이 설계변경 | 27조 | 1 | - | - | 1 |
| 2 | 낙찰자 임의 선정* | 32조 | - | - | 1 | 1 |
| 3 | 낙찰차액 지연 감액 | 26조 | 1 | 5 | - | 6 |
| 4 | 사업기간 연장 등 요구의무 위반** | 28조 | 1 | 3 | - | 4 |
| 5 | 설계과정에서의 필수사항 누락 | 17조 | 1 | - | - | 1 |
| 6 | 실시설계 완료 후 기재부 미협의 | 23조 | - | 1 | - | 1 |
| 7 | 실시설계 후 공사비 초과 발주 | 25조 | - | 1 | - | 1 |
| 8 | 자율조정 미통보 | 104조 | 2 | - | - | 2 |
| 9 | 자율조정 통보기한 미준수 | 104조 | 8 | 4 | - | 12 |
| 10 | 총사업비 협의 없이 설계변경 | 19조 | 1 | - | - | 1 |
| 11 | 협의없이 감리계약 증액 변경 | 27조 | - | 1 | - | 1 |
| 12 | 협의조정사항임에도 자율조정 실시 | 23조 등 | - | 1 | - | 1 |

* **(낙찰자 임의선정)**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낙찰자 선정 이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완료 전에 낙찰자 선정

** **(사업기간 연장 등 요구의무 위반)**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연장 요청

## 나.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은 시·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수립기간이 아닌 경우 변경) 시 반영되어야 함

### 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 환경 · 사회 · 재정 · 용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 표준단가(붙임2)에 따른 추정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주 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라.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제21조의 예타면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요구 (서식 13)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면제

-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제3항)

- **(절차)** 시·군·구 → 환경부(해당 과) →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 기획재정부(위원회 심의) → 면제 여부 결정 통보

- **(제출서류)** ① 예타면제 요구서,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③ 기존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④ 자원순환 시행계획 반영내역

### 마. 신규등록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 최초 편성년도 1월말까지 신규등록보고서(총사업비 관리지침 붙임9)를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추경사업은 추경 확정 후 10일 이내)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된 경우 조정요구·조정승인 절차 후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신규등록

### 바. 기본설계

□ 기본설계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환경청(또는 환경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검토 요청)

○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전기·조경·배수공사비,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이후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최소화하여야 함

※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한국감정원에 표본기준가격 조사 의뢰 실시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른 설계 검토 및 제57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사.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서 승인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환경청(또는 환경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필요 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검토 요청)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필수(일괄 입찰사업 제외)

* 지하화 또는 주민편익시설 등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등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른 설계 검토 및 제22조에 따른 단가 적정성 검토 시행

### 아.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이하 재원협의)

□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지방) 환경청(또는 환경부)과 재원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재원협의 요청 시 기본계획보고서, 기본 및 실서설계 도서 등을 유역(지방) 환경청(또는 환경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원협의 신청시기**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
- **민자사업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 이후 '정부고시사업'은 RFP고시 이전, '민간제안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실시계획 승인 의뢰 전)**

□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재원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관계법령의 규정, 사업내용·규모·기간·총사업비의 변동사항과 그 사유, 국고지원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원협의 의견 또는 총사업비 변경승인 통보서를 작성 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청장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최적화추진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최적화추진단은 기술검토 의뢰서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재원협의 기술검토 의견 또는 총사업비 조정 기술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함

**<최적화추진단 기술검토 요청 대상사업>**

① 실시설계 결과 국고보조 대상 항목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규모(시설용량)가 사전예산검토 결과서(또는 기 승인사항)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③ 기본계획의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④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사업 중 신·증설사업*(15년 이상 사용에 따른 대체 신설 포함)

**<환경부 또는 환경청 자체 검토 대상사업>**

①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② 실시설계 결과 재원협의 완료 사업으로서 공사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설비 설치·교체·보수에 따른 재원협의는 환경청 자체 검토 대상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자. 발주 및 계약

□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확정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낙찰차액) 발생 시 30일 이내에 유역(지방)환경청(또는 환경부)에게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시설부대경비 포함하여 감액)

※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차. 시공 및 준공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유역(지방)환경청(또는 환경부)과 요청·협의하고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필수

○ 턴키사업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정부의 귀책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포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다음연도 완공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2월 말까지 환경청장(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 완공년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물가상승분 금액으로 공사비 정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완공될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5) 제출

## 4. 총사업비 조정 신청절차

□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 시 신청

○ **(위임사업)** 시·군·구 → 시·도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그 외 사업)**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 제출서류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서식 11), 그 밖의 참고자료

## 5. 조정원칙

### 가. 기본 조정원칙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 불가피한 사유 :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의 발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 **[총사업비 자율조정]** 낙찰차액 감액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고, 자율조정항목 중 일부는 한도액이 있어야만 조정 가능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2의 붙임3 참고)

| 자율조정 한도액 외 자율조정 | 자율조정 한도액 내 자율조정 |
|---|---|
| · 물가변동<br>·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반납<br>· 관급자재비 변경(사급자재 전환 제외) | · 법정경비 반영하는 설계변경<br>·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br>· 현장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 |

※ 일괄입찰사업, 대안입찰사업은 관련규정에 의거 제외(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9조 2항)

### 나.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 **보상비**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나, 국고보조 제외)

○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등 해당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관련서류 확인 후 기지출된 금액으로 조정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반영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를 집행한 후 정산

○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기관 간 감정가격이 1.1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 **공사비**

○ 공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을 말함

※ 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의 경우는 설계결과보고서 상의 공사비로 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당초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 확인 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조정

○ 착공 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법령 제·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과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 확인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용

□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말함

○ 감리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 공사비 총액에 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관계규정(예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단,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 설계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반영

○ 시설부대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지 않아야 함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 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

# VII

# 관련 서식

# Ⅶ. 관련 서식

서식 1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서식 2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서식 3 : 국고보조금 신청서(시 · 군 · 구 작성)

서식 4 : 예산신청 총괄현황(시 · 도 작성)

서식 5 : 예산신청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서식 6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7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서식 8 :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서식 9 :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서식 10 :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서식 11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서식 12 :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서식 13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서식 14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검토 요청서

[서식 1]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처리시설별로 작성)

## 1. 예산신청 일반현황

| | | | |
|---|---|---|---|
| 자치단체 명 | | 담당자(연락처)<br>(사무실/핸드폰) | |
| 처리지역 1)<br>(최적화 권역) | | 처리대상<br>폐기물량 | |
| 처리시설 종류 | | 시설용량<br>(톤/일, ㎥) | |
| 처리시설설치<br>예정지 2) | | | |
| 총사업비<br>(백만원) | ① | 사업방식<br>(재정/민자) | |
| 원인자부담금<br>(백만원) 3) | ② | 민간자본<br>(백만원) | ③ |
| 국고지원금<br>(백만원) | ④=(①-②)×⑤ | 국고 보조율<br>(%) | ⑤ |
| 지방비<br>(백만원) | | 기타<br>(백만원) | ⑤ |
| 예정사업기간 4) | yyyy.mm ~ yyyy.mm | 착공예정연도 | |

* 1) "처리지역"은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자체 명을 기재하고, "(최적화 권역)"은 2014년 12월에 확정된 폐기물처리권역의 지자체명을 모두 기재한다.
* 2)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는 시설 설치 지역의 주소를 기재한다.
* 3)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금액을 기재한다.
* 4) "예정사업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시작한 년도 및 월부터 시설 설치가 종료되어 가동개시를 시작하는 년도 및 월을 기재한다.

## 2. 권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최적화하는 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

(단위 : 톤/일)

| 구 분 | 발생량 | 처리량 | | | | | |
|---|---|---|---|---|---|---|---|
| | | 계 | 재활용 | 소각 | 매립 | 연료화 | 기타 2) |
| 계 | | | | | | | |
| 분리배출 | | | | | | | |
| 종량봉투 | | | | | | | |

| | | | | | | | | |
|---|---|---|---|---|---|---|---|---|
| 기타 1) | 재활용 잔재물 | | | | | | | |
| | 대형 폐기물 | | | | | | | |
| | 수해 폐기물 등 | | | | | | | |

* 1) 대형폐기물, 재활용잔재물 등 지자체에서 매년 보고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의 량을 기재하되 발생원별로 작성
  - 재활용 잔재물은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및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등에서 발생된 잔재물량의 (위탁)처리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
  - 수해폐기물 등은 태풍, 장마 등 수해로 인해 하천 하구로 이송된 폐기물을 포함
* 2)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 )로 처리방법을 기재 〔예 : (민간위탁)〕

### □ 음식물류 등

(단위 : 톤/일)

| 구 분 | 발생량 | 처리량 | | | | | | | | | | |
|---|---|---|---|---|---|---|---|---|---|---|---|---|
| | | 계 | 자체처리 | | | | | 위탁처리 | | | | |
| | | | 소계 | 퇴비 | 사료 | 바이오가스 | 기타1) | 소계 | 퇴비 | 사료 | 바이오가스 | 기타1) |
| 계 | | | | | | | | | | | | |
| 음식물류 | | | | | | | | | | | | |
| 음폐수 | | | | | | | | | | | | |
| 가축분뇨 | | | | | | | | | | | | |
| 하수슬러지 | | | | | | | | | | | | |

* 하수슬러지를 음식물 등과 혼합 처리하는 방법 이외의 처리방법(소각 등)은 별도 기재
* 1)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 )로 처리방법을 기재 〔예 : (해양투기)〕

## 나. 처리권역 내 공공처리시설 현황(최적화하는 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 폐기물처리시설

| 시설구분 | | 시설용량 (톤/일, 천㎥/일) | 최초 가동연도 | 수거지역 (처리권역) | 처리량 (톤/일, 천㎥/일) | 국고지원 여부 | 운영현황 (운영중, 설치중 등) |
|---|---|---|---|---|---|---|---|
| 생활자원회수센터 | | | | | | | |
| 음식물 | 바이오가스화 | | | | | | |
| | 사료화 | | | | | | |
| | 퇴비화 | | | | | | |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 | | | | |
| 전용보일러 | | | | | | | |
| 소각시설 | | | | | | | |

## □ 매립시설

| 매립지명 (매립 단계별) | 사용 기간 | 매립면적(㎡) | | | 매립용량(㎥) | | | 매립현황 | | 운영 현황 (운영중, 설치중 등) |
|---|---|---|---|---|---|---|---|---|---|---|
| | | 조성 면적 | 매립 면적 | 매립율 | 조성 용량 | 매립 용량 | 매립율 | 전년도 매립용량 | 잔여 예상 매립기간 | |
| 계(전체)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 순환형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굴착 및 조성계획, 폐합성수지, 토사, 캔류 등의 예상 발생량 및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매립시설 현황 | | | 정비 | | | 조성 | | |
|---|---|---|---|---|---|---|---|---|
| 사용 기간 | 면적 (㎡) | 용량 (㎥) | 면적 (㎡) | 굴착량 (㎥) | 잔여량 (㎥) | 면적 (㎡) | 용량 (㎥) | 사용가능 예상기간 |
| | | | | | | | | |

* 굴착된 폐기물 처리계획 제시(예 : 폐합성수지 등 가연물 굴착량의 00%인 00㎥(또는 00톤)은 운영 또는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00톤/일)에 처리(또는 위탁처리), 토사(00%) 등은 재매립, 고철 등 유가물(00%)은 매각

## □ 비위생 매립시설 현황

| 시설명 (또는 소재지) | 매립용량 (톤/일, 천㎥/일) | 매립기간 (매립시작년도) | 정비계획 | | | 사업착수 계획년도 |
|---|---|---|---|---|---|---|
| | | | 안정화 | 굴착 | 순환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굴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폐합성수지, 토사, 캔류 등의 예상 발생량 및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예) 폐합성수지 등 가연물 굴착량의 00%인 00㎥(또는 00톤)은 운영 또는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00톤/일)에 처리(또는 위탁처리), 토사(00%) 등은 재매립, 고철 등 유가물(00%)은 매각

## 다. 기타 환경기초시설

| 시설구분 | 최초 가동연도 | 처리량 (톤/일, 천㎥/일) | 시설용량 (톤/일, 천㎥/일) | 처리지역 (또는 수거지역) | 슬러지 처리 | |
|---|---|---|---|---|---|---|
| | | | | | 처리량 (톤/일) | 처리방법 |
| 가축분뇨처리시설 | | | | | | |
| 하수처리시설 | | | | | | |
| 폐수종말처리시설 | | | | | | |

## 라. 관할구역 내 민간처리시설 현황(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구 분 | | 업소명 (소재지) | 시설용량 (톤/일, 천㎥/일) | 처리량 (톤/일, 천㎥/일) | 가동연도 | 수거지역 | 비고 |
|---|---|---|---|---|---|---|---|
| 생활자원회수센터 | | | | | | | 처리방법 기재 |
| 음식물 | 바이오가스화 | | | | | | |
| | 사료화 | | | | | | 수요처 및 공급조건 기재 |
| | 퇴비화 | | | | | | 〃 |
| 소각시설 | | | | | | | |
| 매립시설 | | | | | | | |

* 선별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영업을 하는 기업 포함
* 음식물, 소각 등은 처리업,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현황을 기재

## 3. 사업필요성 자체 검토

| 검 토 항 목 | | 검 토 결 과 |
|---|---|---|
| 적정성 |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반영 여부<br>(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서 승인여부) | |
| | 설치시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br>(산정근거 제시)<br>-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는 그 내역(사업기간, 착공연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기재 | |
|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br>(산정근거 제시) | |
| | 최적화 반영 여부<br>(지자체간 협의 문서 또는 협약서 등) | |
| 시급성 |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 |
| 준비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
| |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예타면제 결정 | |
|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민자사업),<br>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재정사업) | |
| | **민원해소 여부**<br>(국회, 감사원, 언론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 해소) | |
| | 입지결정 절차 이행상황 | |
| | 주민의견 수렴 여부 | |
| 효율성 |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br>(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잔재물(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물질) 전체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 | |
| | 기존시설 연계(또는 활용) 가능성 | |
| | 최종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br>(소각여열, 바이오가스 등) | |

## 【 적정성 】 1.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승인 결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대체신설 포함), 증설, 대보수 사업 국고지원

○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시행계획·집행계획 변경 후 신청

⇒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 반영 부분 내용 및 환경부 승인결과 첨부

(예시)

환경부

**환 경 부**

수신 시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시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승인 알림(재전송)

1. 관련문서
   가. 시 자원순환과-27 호('20.6.10.)
   나. 환경영향평가과-19 호('20.7.13.)

2. 귀 기관이 제출한 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승인시 우리부가 통보한 검토의견 및 승인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재송부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시행계획 추진시 동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계획 검토의견 및 승인조건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정책과-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 팩스번호 044-201- / @me.go.kr / 대국민 공개

(환경부→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승인 문서

(예시)

2018년~2022년

# OO 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안)

## 최종보고서

2020.3월

자원순환시행계획(표지)

(예시)

○ 향후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27년에 발생 예상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톤/일)을 1차 소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대비 약 톤/일[40]의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소각 감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 재활용성 폐기물(19%, 톤/일)을 전량 재활용할 경우 2027년 소각시설 필요용량은 약 1,326톤/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추가적으로 도의 음식물류폐기물(31%, 톤/일)의 잔재물 소각률 약 6%를 고려할 경우, 톤/일의 소각용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도의 2027년 소각시설 필요용량은 총 톤/일로 예상됨.

○ 소각시설 필요용량 톤/일의 가동률 0.84[41]를 고려할 경우 도는 2027년 약 톤/일( 톤/일)의 소각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4. 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필요성

○ 도는 장기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금지 및 가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 폐기물) 증가에 따라 소각시설 확충 및 소각재 처리시설(매립지 및 고형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표 7-4> |도 소각시설 투자계획

| 구분 | 시 · 군 | 규모(톤/일) | 폐쇄(톤/일) | 증가용량(톤/일) | 사업기간 |
|---|---|---|---|---|---|
| | 총계 | | | | |
| | 소계 | | | | |
| 신설 | 시 | | | | 2020-2024 |
| | 시 | | | | 2021-2027 |
| | 시 | | | | 2019-2026 |
| | 시 | | | | 2021-2027 |
| | 시 | | | | 2021-2023 |
| | 시 | | | | 2021-2024 |
| | 시 | | | | 2022-미정 |
| | 시 | | | | 2020-2026 |
| | 시 | | | | 2019-2025 |
| | 시 | | | | 2021-2026 |
| | 시 | | | | 2021-2024 |
| | 시 | | | | 2020-2023 |
| | 소계 | | | | |
| 대보수 | 시 | | | | 2017-2023 |
| | 시 | | | | 2022-2025 |
| | 시 | | | | 2020-미정 |
| | 시 | | | | 2023-2024 |

* 시 260톤/일 중 실제 할당량은 130톤/일, 나머지는 130톤/일임.

40) 2027년 종량제봉투 예상 발생량 6,711톤/일에서 2017년 소각·연료화 처리용량 4,110톤/일을 제외한 용량

41) 2018년 전국 소각시설 평균 가동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처리현황 및 필요용량)

○ 투자계획에는 시・군・구의 시설별 사업기간, 시설용량, 재원별 투자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재원 : 국고보조금,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등

(예시)

<부록 표 1-1> 매립시설

| 구 분 | 사업기간 | 규모(천㎥) | 재정형태 | 투자계획(억원) | | | | | |
|---|---|---|---|---|---|---|---|---|---|
| | | | | 계 | | 국고 | 지방비 | 민자 | 기타 |
| 계 | | 231 | | 135.0 | | 31.3 | 103.7 | | |
| 시 | 2019 | | 자체조달 | 소계 | 14.6 | 7.3 | 7.3 | | |
| | | | | 2019 | 14.6 | 7.3 | 7.3 | | |
| 군 | 2019~2022 | | 국고, 지방비 | 소계 | 120.4 | 24.0 | 96.4 | | |
| | | | | 2019 | 0.2 | | 0.2 | | |
| | | | | 2020 | 0.2 | | 0.2 | | |
| | | | | 2021 | 60.0 | 12.0 | 48.0 | | |
| | | | | 2022 | 60.0 | 12.0 | 48.0 | | |

<부록 표 1-2> 소각시설

| 구 분 | 사업기간 | 규모(톤/일) | 재정형태 | 투자계획(억원) | | | | | |
|---|---|---|---|---|---|---|---|---|---|
| | | | | 계 | | 국고 | 지방비 | 민자 | 기타 |
| 계 | | 4,440 | | 16,231.6 | | 4,285.7 | 7,854.4 | 1,995.7 | 2,095.9 |
| 시 | 2017~2023 (대보수) | | | 소계 | 1,500 | 366.0 | 1,134 | | |
| | | | | 2020 | 50.0 | | 50.0 | | |
| | | | | 2021 | 485.0 | 122.0 | 363.0 | | |
| | | | | 2022 | 492.0 | 122.0 | 370.0 | | |
| | | | | 2023 | 473.0 | 122.0 | 351.0 | | |
| 시 | 2021~2027 | | 자체 조달 | 소계 | 1,160 | 320.0 | 840.0 | | |
| | | | | 2021 | 200.0 | | 200.0 | | |
| | | | | 2022 | 15.0 | 4.5 | 10.5 | | |
| | | | | 2023 | 315.0 | 105.5 | 209.5 | | |
| | | | | 2024 | 315.0 | 105.0 | 210.0 | | |
| | | | | 2025 | 315.0 | 105.0 | 210.0 | | |
| | 2022~2025 (대보수) | | 자체 조달 | 소계 | 640.0 | 192.0 | 448.0 | | |
| | | | | 2022 | 10.0 | 3.0 | 7.0 | | |
| | | | | 2023 | 210.0 | 63.0 | 147.0 | | |
| | | | | 2024 | 210.0 | 63.0 | 147.0 | | |
| | | | | 2025 | 210.0 | 63.0 | 147.0 | | |
| 시 | 2020~2024 이후 | | | 소계 | 1,773.3 | 389.0 | 389.0 | 645.3 | 350.0 |
| | | | | 2020 | 1.3 | | 1.3 | | |
| | | | | 2021 | 6.2 | 1.4 | 1.4 | 2.3 | 1.2 |
| | | | | 2022 | 359.4 | 78.9 | 78.9 | 130.8 | 70.9 |
| | | | | 2023 | 1,141.3 | 250.4 | 250.4 | 415.3 | 225.3 |
| | | | | 2024 | 265.1 | 58.4 | 57.1 | 96.9 | 52.6 |

시·군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예시)

| 구 분 | 개소 | 사업규모 | 투자계획(억원) | | | | | |
|---|---|---|---|---|---|---|---|---|
| | | | 년도 | 계 | 국고 | 지방비 | 민자 | 기타 |
| 총계 | 48 | | 총계* | 24,916.1 | 6,125.0 | 12,691.0 | 3,529.1 | 2,570.9 |
| | | | 2018 | 394.5 | 25.7 | 141.8 | 227.0 | |
| | | | 2019 | 625.4 | 55.8 | 195.6 | 374.0 | 0.0 |
| | | | 2020 | 380.0 | 58.4 | 299.6 | 22.0 | 0.0 |
| | | | 2021 | 2,700.5 | 795.7 | 1,569.0 | 321.7 | 14.1 |
| | | | 2022 | 6,274.5 | 1,096.7 | 2,916.8 | 1,155.2 | 1,105.7 |
| | | | 2023 | 6,283.8 | 1,566.8 | 3,020.6 | 1,069.7 | 626.7 |
| | | | 2024 | 3,562.6 | 1,178.4 | 1,933.8 | 237.1 | 213.4 |
| | | | 2025 | 2,254.8 | 656.0 | 1,341.3 | 122.5 | 135.0 |
| | | | 2026 | 1,006.0 | 370.5 | 573.5 | | 62.0 |
| | | | 2027 | 481.0 | 130.0 | 351.0 | | |
| | | | 2028 | 323.0 | 83.0 | 240.0 | | |
| 매립시설 | | 천㎥ | 소계 | 135.0 | 31.3 | 103.7 | | |
| | | | 2019 | 14.8 | 7.3 | 7.5 | | |
| | | | 2020 | 0.2 | | 0.2 | | |
| | | | 2021 | 60.0 | 12.0 | 48.0 | | |
| | | | 2022 | 60.0 | 12.0 | 48.0 | | |
| 소각시설 (신설) | | 톤/일 | 소계* | 13,068.4 | 3,172.3 | 5,804.6 | 1,995.7 | 2,095.9 |
| | | | 2019 | 0.2 | | 0.2 | | |
| | | | 2020 | 17.5 | | 17.5 | | |
| | | | 2021 | 503.2 | 52.9 | 349.9 | 97.3 | 3.2 |
| | | | 2022 | 3,667.8 | 543.9 | 1,433.8 | 628.2 | 1,061.8 |
| | | | 2023 | 3,416.5 | 887.3 | 1,368.7 | 928.3 | 232.3 |
| | | | 2024 | 2,363.0 | 766.2 | 1,189.7 | 219.4 | 187.6 |
| | | | 2025 | 1,672.3 | 495.0 | 919.8 | 122.5 | 135.0 |
| | | | 2026 | 638.0 | 271.0 | 305.0 | | 62.0 |
| | | | 2027 | 160.0 | 48.0 | 112.0 | | |
| 소각시설 (대보수) | | 톤/일 | 소계 | 3,163.2 | 1,113.0 | 2,050.2 | | |
| | | | 2020 | 51.6 | | 51.6 | | |
| | | | 2021 | 1,106.6 | 557.3 | 549.3 | | |
| | | | 2022 | 501.9 | 124.9 | 377.0 | | |
| | | | 2023 | 1,083.2 | 304.9 | 778.3 | | |
| | | | 2024 | 210.0 | 63.0 | 147.0 | | |
| | | | 2025 | 210.0 | 63.0 | 147.0 | | |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 | 톤/일 | 소계 | 3,465.5 | 482.1 | 1,753.5 | 755.0 | 475.0 |
| | | | 2018 | 246.2 | 12.0 | 103.2 | 131.0 | |
| | | | 2019 | 274.0 | 4.0 | 69.0 | 201.0 | |
| | | | 2020 | 84.2 | | 84.2 | | |
| | | | 2021 | 311.3 | 13.2 | 176.8 | 110.5 | 10.8 |
| | | | 2022 | 522.5 | 58.4 | 266.8 | 153.5 | 43.9 |
| | | | 2023 | 1,015.1 | 104.2 | 375.1 | 141.4 | 394.5 |
| | | | 2024 | 336.1 | 87.4 | 205.4 | 17.6 | 25.8 |
| | | | 2025 | 168.0 | 50.0 | 118.0 | | |
| | | | 2026 | 169.0 | 51.0 | 118.0 | | |
| | | | 2027 | 169.0 | 51.0 | 118.0 | | |
| | | | 2028 | 170.0 | 51.0 | 119.0 | | |
| 매립지 정비시설 | | 천㎥ | 소계 | 10.0 | | 10.0 | | |
| | | | 2018 | 4.0 | | 4.0 | | |
| | | | 2019 | | | | | |
| | | | 2020 | 6.0 | | 6.0 |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시설용량,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

## 【 적정성 】 2.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결과

⇒ 최적화 기본·실시협약서 첨부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율 상향 적용
⇒ 단독시설 설치하는 경우도 권역 내 지자체간 조사 실시, 공문 첨부

(예시)

소각시설 광역화 설치 · 운영

기본협약서

20

③ 제1항의 사업비는 양 군수가 함께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은 군수가 운영 · 관리하고, 군비는 동일한 비율로 상호 분담한다.
④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업무분장 등)** ① 본 협약과 관련한 양 군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1. 군수
가.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협의 및 지원
나. 시설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추진
다. 주민협의 주민협의 등 추진
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 실시협약 체결(안) 작성 등
2. 군수
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 및 행정절차 추진 지원
나. 인접 지자체 및 주민협의 등 지원
다. 광역 소각시설 설치 · 운영 추진 협의 및 지원
② 군수는 이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계획 추진 중 사업비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군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조치한 후 남해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주민지원을 위해 하동군수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기금에 출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주민지원 기금은 군수가 운영 · 관리한다

소각시설 광역화 설치운영 기본협약서

군과 군은 공동으로 소각시설 설치·운영의 광역화를 위하여 군수와 군수(이하 "양 군수"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군수 간에 소각시설 광역화 설치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을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광역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운영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라 함은 소각시설의 공동이용 또는 연계처리 등을 위하여 군과 군 간 광역화 실시협약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제3조(의무)** ① 양 군수는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의 광역화 추진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공,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② 군수는 소각시설 설치·운영의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 및 사업완료 후 시설운영을 담당한다.
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기간, 사업범위, 사업비 규모 및 대가지급 등을 포함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와 협의한다.
④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제4조(사업비 구성 및 조달)** ①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한다.
② 광역 소각시설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 군수가 상호 협의하여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 집행한 사업비를 포함한다.

**제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양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협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비를 정산한다. 다만, 양 군수가 협의하여 시행된 사업비와 하동군수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양 군수는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출하거나 이 협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행정선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4조의 사업비 및 제6조의 주민지원기금은 제2조제1호의 소각시설을 서로 같은 용량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적용되고, 양 군수가 설치하는 소각시설의 용량이 다른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용량비율로 분담한다.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군수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제정

최적화 협약서 (기본 및 실시협약)

(예시)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최적화 협의 요청**

1. 평소 우리군정에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 ·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규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또한 매립용량 포화로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최적화 반영 여부**에 대한 귀 시 · 군의 의견이 필요함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의견을 **2020.1.3(금)까지**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최적화 협의내용**
- **군 폐기물소각시설 신규설치 및 매립시설 증설**에 따른 최적화권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및 연계처리 가능 여부. 끝.

군 수

수신자 시장(환경보호과장), 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군수(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담당 환경과장
협조자
시행 환경과- 접수
우 /
전화번호 팩스번호 / @korea.kr / 대국민 공개

최적화 실무협의회 추진 경과 (협의요청 문서 등)

(예시)

군

수신 군수(환경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화 검토 결과 제출

1. 환경보전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 환경과- 호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검토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및 **연계처리 불가**함을 회신 드립니다.
※ 소각시설 : 사업비 확보되어 2020년부터 설치 추진 예정.
※ 매립시설 : 매립지 종료기한이 남아 광역화 연계 어려움. 끝.

★주무관 환경시설관리 사업소장
협조자
시행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접수
우 /
전화번호 팩스번호 / @korea.kr / 대국민 공개

최적화 실무협의회 추진 경과 (협의결과 회신 등)

## 【 적정성 】 3. 시설규모의 적정성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설용량 산정부분 첨부
(인구,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변동계수, 통계 등)

(예시)

라. 변동계수 산정

변동계수는 2017년 기준 1.17로 산정되었으며 최대값은 9월로 확인됨

(단위 : kg/일)

| 구 분 | | 2015 | | 2016 | | 2017 | | 비 고 |
|---|---|---|---|---|---|---|---|---|
| | | kg/월 | kg/일 | kg/월 | kg/일 | kg/월 | kg/일 | |
| 1월 | | 549,789 | 17,735 | 537,898 | 17,352 | 591,640 | 19,085 | |
| 2월 | | 536,315 | 19,154 | 506,687 | 18,096 | 599,329 | 21,405 | |
| 3월 | | 601,416 | 19,401 | 651,987 | 21,032 | 693,483 | 22,370 | |
| 4월 | | 556,598 | 18,553 | 611,633 | 20,388 | 658,816 | 21,961 | |
| 5월 | | 523,980 | 16,903 | 634,143 | 20,456 | 640,725 | 20,669 | |
| 6월 | | 491,226 | 16,374 | 597,941 | 19,931 | 698,169 | 23,272 | |
| 7월 | | 642,033 | 20,711 | 630,436 | 20,337 | 765,332 | 24,688 | |
| 8월 | | 630,225 | 20,330 | 567,184 | 18,296 | 775,548 | 25,018 | |
| 9월 | | 549,350 | 18,312 | 606,918 | 20,231 | 813,116 | 27,104 | |
| 10월 | | 565,552 | 18,244 | 665,191 | 21,458 | 811,937 | 26,192 | |
| 11월 | | 567,965 | 18,932 | 640,821 | 21,361 | 750,648 | 25,022 | |
| 12월 | | 449,402 | 14,497 | 547,341 | 17,656 | 692,277 | 22,332 | |
| kg/년 | | 6,663,851 | | 7,198,180 | | 8,491,020 | | |
| 일평균 환산 | 최대값 | (7월) 20,711 | | (10월) 21,458 | | (9월) 27,104 | | (A) |
| | 평 균 | 18,262 | | 19,716 | | 23,260 | | (B) |
| 변동계수 | | 1.13 | | 1.09 | | 1.17 | | (A)/(B) |

※ 자료 : 군 내부자료
※ 변동계수 = 월별 최대값 / 평균

바. 군 장래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발생량 산정 결과

가동일수 300일, 변동계수 1.17적용한 결과 35톤의 시설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됨

| 구 분 | 단위 | 2024년 | 2029년 | 2034년 | 2039년 | 비고 |
|---|---|---|---|---|---|---|
| 장 래 인 구 | [인] | 24,487 | 25,084 | 25,526 | 25,526 | |
| 적용 발생원단위 | [kg/인·일] | 1,007 | 1,007 | 1,007 | 1,007 | 최근 년도 |
| 종량제봉투 발생량 | [톤/일] | 24.7 | 25.3 | 25.7 | 25.7 | 처리 대상 |
| 가동일수/변동계수 | - | 가동일수 300일/년 / 변동계수 1.17 | | | | |
| 필 요 용 량 | [톤/일] | 35.2 | 36.0 | 36.6 | 36.6 | |
| 시설용량 산정결과 | [톤/일] | 35 | | | | |

※ 종량봉투 발생량[톤/일] = 장래인구[인] * 적용 발생원단위[kg/인·일] * 단위환산(1톤/1,000kg)
※ 필요용량[톤/일] = 종량제봉투 발생량[톤/일] * 변동계수(1.17) / 가동일수(300일/365일)

<시설규모 산정 요약>

| | 구분 | 내용 | | 비고 |
|---|---|---|---|---|
| 1 | 계획인구 | 1,213,716 | 인 | 2025년기준,(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 2 | 발생원단위 | 0.491 | kg/인.일 | 국가통계 과거 10년 및 감량률 반영한 향후 예측치 산정 |
| 3 | 발생량 | 595.93 | 톤/일 | ① × ② |
| 4 | 재활용잔재물 | 25 | 톤/일 | |
| 5 | 가동일수 | 300 | 일/년 | 소각시설 기준 가동일수 (300일) |
| 6 | 기존시설 | 250 | 톤/일 | 가동일수 300일 기준 |
| 7 | 시설용량 | 500 | 톤/일 | (③ + ④) × 365 ÷ 300 − ⑥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설용량 산정부분 첨부)

다. 장래인구 산정

장래인구는 수학적 예측(등차, 등비, 지수함수, 로지스틱법을 적용)을 통해 산정하였다.

2015 강원도 시군단위 장래인구 추계결과의 계획인구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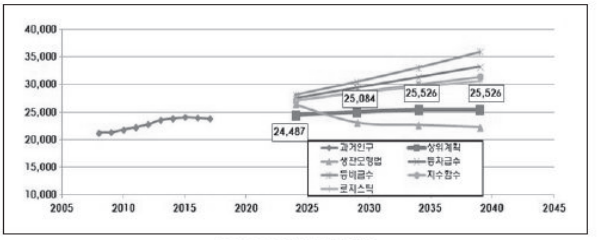


(그림 5.2.2-2) 장래인구산정

<표 5.2.2-2> 장래인구 산정

| 구 분 | | 2018년 | 2024년 | 2029년 | 2034년 | 2039년 | 비 고 |
|---|---|---|---|---|---|---|---|
| 수학적 예 측 | 등차급수법 | - | 27,609 | 29,493 | 31,376 | 33,260 | |
| | 등비급수법 | - | 28,098 | 30,508 | 33,125 | 35,967 | |
| | 지수함수법 | - | 27,120 | 28,617 | 30,042 | 31,407 | |
| | 로지스틱법 | - | 27,132 | 28,493 | 29,664 | 30,657 | |
| 자연적 예 측 | 생잔모형법 | - | 23,466 | 23,113 | 22,688 | 22,285 | |

**다. 장래 인구 추정 결과**

본 계획에서는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의 수학적인 방법과 통계청 전남 인구증감률을 적용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한 결과 수학적인 방법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계획에서는 수학적방법 추정인구와 통계청 인구증감률을 적용한 추정인구의 평균을 적용한 인구추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5] 군 장래인구 적용 (단위 : 인)

| 구 분 | | 수학적 방법 | 통계청 전남 인구증감률 방법 | 적용인구(평균) |
|---|---|---|---|---|
| 곡 | 2020년 | 53,801 | 54,968 | 54,385 |
| | 2021년 | 53,185 | 54,920 | 54,053 |
| | 2022년 | 52,571 | 54,873 | 53,722 |
| | 2023년 | 51,959 | 54,832 | 53,395 |
| | 2024년 | 51,349 | 54,800 | 53,075 |
| | 2025년 | 50,741 | 54,777 | 52,759 |
| | 2026년 | 50,136 | 54,764 | 52,450 |
| | 2027년 | 49,532 | 54,761 | 52,147 |
| | 2028년 | 48,931 | 54,766 | 51,848 |
| | 2029년 | 48,331 | 54,774 | 51,553 |
| | 2030년 | 47,734 | 54,780 | 51,257 |
| | 2031년 | 47,138 | 54,781 | 50,960 |
| | 2032년 | 46,545 | 54,776 | 50,661 |
| | 2033년 | 45,954 | 54,762 | 50,358 |
| | 2034년 | 45,364 | 54,737 | 50,051 |
| | 2035년 | 44,777 | 54,696 | 49,736 |
| | 2036년 | 44,191 | 54,639 | 49,415 |
| | 2037년 | 43,607 | 54,567 | 49,087 |
| | 2038년 | 43,025 | 54,481 | 48,753 |

목표연도 인구예측 결과 (예시)

(예시)

**가. 군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2018년 현재 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율은 98.8%이며, 생활폐기물 배출 원단위는 0.87kg/인·일로 조사되었다.

< 군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 구 분 | 행정구역 인구 (명)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인구 (명) |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 | 배출량 (톤/일) | 전년대비 (%) | 발생원단위 (kg/인·일) |
|---|---|---|---|---|---|---|---|
| | | | 인구 (명) | 인구비율 (%) | | | |
| 2009년 | 57,490 | 56,830 | 660 | 1.1 | 49.3 | | 0.87 |
| 2010년 | 57,362 | 56,683 | 679 | 1.2 | 48.9 | -0.81 | 0.86 |
| 2011년 | 56,863 | 56,231 | 632 | 1.1 | 48.5 | -0.82 | 0.86 |
| 2012년 | 57,224 | 56,604 | 620 | 1.1 | 48 | -1.03 | 0.85 |
| 2013년 | 57,617 | 56,982 | 635 | 1.1 | 49.2 | 2.50 | 0.86 |
| 2014년 | 57,520 | 56,898 | 622 | 1.1 | 38.2 | -22.36 | 0.67 |
| 2015년 | 57,017 | 56,402 | 615 | 1.1 | 39.1 | 2.36 | 0.69 |
| 2016년 | 56,379 | 55,751 | 628 | 1.1 | 38.3 | -2.05 | 0.69 |
| 2017년 | 55,774 | 55,140 | 634 | 1.1 | 36.6 | -4.44 | 0.66 |
| 2018년 | 55,086 | 54,366 | 650 | 1.2 | 47.5 | 29.8 | 0.87 |

자료 :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10~2018, 환경부,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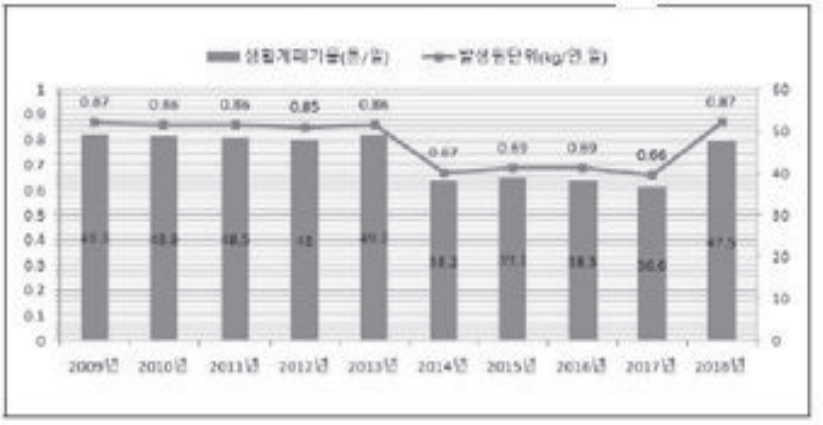


최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등 폐기물발생량 원단위 산출근거

(예시)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6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옥정 11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12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 수용인구(변경없음)

- 163,324인 (옥정 : 106,351인, 회천 : 56,973인)

○ 수용세대(변경)

- 기정 : 58,968세대 (옥정 : 38,625세대, 회천 : 20,343세대)

- 변경 : 61,824세대 (옥정 : 41,481세대, 회천 : 20,343세대)

○ 인구밀도(변경없음)

- 146인/ha (옥정 : 151인/ha, 회천 : 138인/ha)

| 구 분 | 면 적(㎡) | | 수용세대(호) | | 수용인구(인) |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양주신도시 | 4,054,945.2 | 4,059,354.3 | 58,968 | 61,824 | 163,324 | 163,324 | |
| 단독주택 | 759,822.2 | 644,459.4 | 2,127 | 1,894 | 5,957 | 5,049 | |
| 일반형 | 427,530.2 | 427,551.4 | 1,431 | 1,431 | 4,006 | 3,834 | |
| 블록형 | 332,292.0 | 216,908.0 | 696 | 463 | 1,951 | 1,215 | |
| 공동주택 | 3,295,123.0 | 3,414,894.9 | 56,841 | 59,930 | 157,367 | 158,275 | |
| 아파트 | 3,245,456.0 | 3,365,227.9 | 56,470 | 59,559 | 156,328 | 157,310 | |
| 60㎡ 이하 | 827,754.0 | 889,918.0 | 18,574 | 19,990 | 50,211 | 52,187 | |
| 60~85㎡ | 1,862,803.0 | 2,126,155.9 | 30,280 | 34,872 | 84,790 | 92,555 | |
| 85㎡ 초과 | 554,899.0 | 349,154.0 | 7,616 | 4,697 | 21,327 | 12,568 | |
| 연립주택 | 49,667.0 | 49,667.0 | 371 | 371 | 1,039 | 965 | |

452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기간, 착공연도 등)

## 【 적정성 】 4. 총 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의 산정

⇒ 표준단가 적용여부 및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영여부

(증빙서류 있을 시 첨부(해당부분 발췌))

<총 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 산정 요약>

| | 구분 | 내용 | | 비고 |
|---|---|---|---|---|
| 1 | 표준단가 | 3.81 | 억원/톤 | 시설용량 200톤/일 초과 |
| 2 | 시설용량 | 300 | 톤/일 | 시설규모의 적정성 중 |
| 3 | 총 사업비 | 1,143 | 억원 | ① × ② |
| 4 | 원인자부담금 | 452 | 억원 | 신규사업 신청시(예산반영 이전년도) 보유액(이자 포함) |
| 5 | 국고보조율 | 30 | %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재정·민자) |
| 6 | 총 국고보조금 | 207.3 | 억원 | (③ - ④) × ⑤ |

표준단가를 적용한 총 사업비, 총 국고보조금 산정 결과

○ 원인자부담금은 「폐촉법」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규사업 신청 시, 신청시점(예산반영 이전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보유금액을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근거서류(납부대장,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누락·축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산검토 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1) 납부 대장(예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현금출납부**

[단위 : 원]

| 년월일 | 적요 | 수입 | 지출 | 잔액 | 결재 | | |
|---|---|---|---|---|---|---|---|
| | | | | | 주무관 | 팀장 | 과장 |
| 2017.[illegible].19. | | 1,809,622,000 | | 1,809,622,000 | | | |
| 2017.12.31 | | 669,310 | | 1,810,291,310 | | | |
| 2018.01.23. | | | | 1,810,291,310 | | | |
| 2018.06.30. | | 2,693,110 | | 1,812,984,420 | | | |
| 2018.12.31 | | 2,741,820 | | 1,815,726,240 | | | |
| 2019.01.15. | | | | 1,815,726,240 | | | |
| 2019.03.04. | | | 1,815,726,240 | 0 | | | |
| 2019.06.30. | | 925,290 | | 925,290 | | | |

(2) 통장 사본(예시)

| 예금주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이율 |
|---|---|---|---|
| 서산시청 | 일반정기예금 | | 연1.650% |

신규일: 20 년03월04일 계약기간: 033개월27일
만기일: 20 년12월31일 만기시지급액(세전): ₩1,900,330,990

금고 일반정기예금

| 일련번호 | 년월일 | 찾으신 금액 | 맡기신 금액 | 남은 금액 | 거래내용 | 거래점코드 |
|---|---|---|---|---|---|---|
| 1 | 튼튼한 민족은행 슈퍼뱅크 - 농협! 담당직원: | | | | | |
| 2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 | | | | |
| 3 | 않습니다. | | | | | |
| 4 |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 | | | |
| 5 | 0304 | | 1,815,726,240 | ₩1,815,726,240 | 신규 | |
| 6 | | | | | | |
| 7 | | | | | |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근거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해당되거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하화 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재원협의)하여야 함

※ 지하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표준단가의 1.4배 이내에서 사업비 산정하여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영화관, 수영장 등 여가·체육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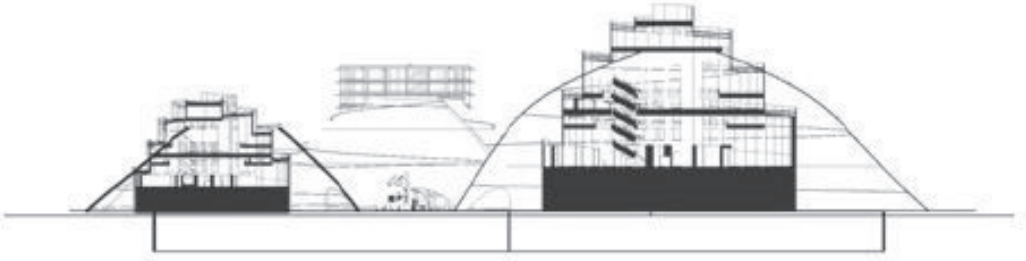

카페

파머스마켓

옥상정원

실내수영장

지하화 시설 및 복합시설 등 포함 여부 (설치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민원 등)

## 【 적정성 】 5. 폐기물 성상분석의 적정성 여부

⇒ 반입 폐기물의 계절별 성상 분석 결과,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 예측 결과

(예시)

**마) 원소조성**

- ❑ 폐기물의 원소조성 분석결과 탄소(C), 산소(O), 수소(H)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소(N), 황(S), 염소(Cl) 성분이 미량으로 분석되었으며, 소각장 폐기물의 가연성분 가중평균 비율을 보면 탄소가 28.25~36.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소가 14.65~24.49%, 수소가 3.92~6.27%로 나타났고, 질소, 황, 염소가 2%미만으로 나타남 재활용선별업체 폐기물 또한 탄소, 산소,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소, 황, 염소 성분이 미량으로 분석되었으며 탄소가 30.51%, 62.57%로 높게 분석됨 성상별로는 비닐/플라스틱류의 탄소 함량이 가장 높고, 기타가연분이 낮게 분석되었음

<표 3.2.3-12> 원소조성 분석 결과(소각장 1차)

(단위 : %(Wet base))

| 구분 | | Ash | C | H | O | N | S | Cl | Br |
|---|---|---|---|---|---|---|---|---|---|
| 1호기 | 음식물류 | 8.64 | 19.18 | 2.32 | 17.88 | 0.57 | 0.07 | 0.29 | – |
| | 종이류 | 8.86 | 35.38 | 4.97 | 38.89 | 0.41 | 0.25 | 0.09 | – |
| | 목재류 | 2.64 | 29.43 | 4.00 | 30.47 | 0.98 | 0.24 | 0.09 | – |
| | 고무/피혁류 | – | – | – | – | – | – | – | – |
| | 비닐/플라스틱류 | 5.49 | 66.54 | 11.41 | 10.11 | 0.45 | 0.07 | 1.56 | – |
| | 섬유류 | 5.96 | 37.29 | 3.99 | 33.86 | 0.72 | 0.25 | 0.13 | – |
| | 기저귀 | – | – | – | – | – | – | – | – |
| | 기타(연탄재등) | 7.09 | 8.16 | 1.17 | 7.61 | 1.28 | 0.16 | 0.02 | – |
| | 평균 | 7.48 | 36.73 | 5.45 | 24.49 | 0.59 | 0.17 | 0.45 | – |
| 2호기 | 음식물류 | 4.10 | 13.21 | 1.83 | 13.89 | 0.60 | 0.04 | 0.19 | – |
| | 종이류 | 2.75 | 21.89 | 3.22 | 28.67 | 0.27 | 0.04 | 0.10 | – |
| | 목재류 | 3.01 | 26.90 | 3.59 | 26.85 | 0.68 | 0.05 | 0.07 | – |
| | 고무/피혁류 | – | – | – | – | – | – | – | – |
| | 비닐/플라스틱류 | 7.62 | 51.81 | 8.84 | 4.47 | 0.28 | 0.02 | 1.09 | – |
| | 섬유류 | 4.72 | 38.40 | 3.79 | 33.13 | 0.54 | 0.05 | 0.15 | – |
| | 기저귀 | 7.84 | 32.83 | 5.37 | 16.39 | 0.62 | 0.04 | 0.11 | – |
| | 기타(연탄재등) | 8.78 | 10.61 | 1.51 | 12.01 | 0.69 | 0.08 | 0.01 | – |
| | 평균 | 5.05 | 28.25 | 4.20 | 17.50 | 0.38 | 0.04 | 0.35 | – |
| 3호기 | 음식물류 | 10.28 | 15.36 | 2.12 | 16.79 | 0.44 | 0.03 | 0.25 | – |
| | 종이류 | 13.27 | 24.37 | 3.71 | 26.53 | 0.25 | 0.02 | 0.09 | – |
| | 목재류 | 7.98 | 27.47 | 3.70 | 27.93 | 0.81 | 0.13 | 0.08 | – |
| | 고무/피혁류 | – | – | – | – | – | – | – | – |
| | 비닐/플라스틱류 | 10.20 | 49.43 | 5.98 | 20.14 | 0.43 | 0.03 | 1.36 | – |
| | 섬유류 | 5.89 | 38.75 | 3.67 | 31.45 | 0.56 | 0.02 | 0.08 | – |
| | 기저귀 | 5.08 | 23.93 | 4.88 | 9.54 | 0.30 | 0.03 | 0.04 | – |
| | 기타(연탄재등) | 24.42 | 8.37 | 1.22 | 25.98 | 0.32 | 0.08 | 0.08 | – |
| | 평균 | 12.19 | 31.56 | 3.92 | 23.45 | 0.40 | 0.03 | 0.53 | – |
| 3호기 | 음식물류 | 13.54 | 21.96 | 3.23 | 22.29 | 1.25 | 0.06 | 0.33 | – |
| | 종이류 | 11.55 | 17.73 | 2.56 | 27.48 | 0.30 | 0.05 | 0.05 | – |
| | 목재류 | 10.73 | 28.87 | 3.96 | 30.07 | 0.31 | 0.02 | 0.09 | – |
| | 고무/피혁류 | – | – | – | – | – | – | – | – |
| | 비닐/플라스틱류 | 2.62 | 53.56 | 8.97 | 6.94 | 0.40 | 0.07 | 0.85 | – |
| | 섬유류 | 0.95 | 30.15 | 4.36 | 35.95 | 0.35 | 0.02 | 0.13 | – |
| | 기저귀 | 2.33 | 13.53 | 3.04 | 4.40 | 0.15 | 0.01 | 0.04 | – |
| | 기타(연탄재등) | 22.77 | 3.62 | 0.48 | 19.60 | 0.21 | 0.04 | 0.20 | – |
| | 평균 | 8.31 | 29.83 | 4.80 | 18.73 | 0.36 | 0.05 | 0.38 | – |

**라) 삼성분**

- ❑ 소각장 폐기물의 성상별 수분, 가연분, 회분의 평균 비율을 보면 수분은 24.6~41.4%, 가연분은 52.3~67.9%, 회분은 5.6~12.2%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수분의 함량이 높은 폐기물은 음식물류로 37.3~66.1%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연분은 비닐/플라스틱류가 64.5~90.1%, 회분은 고무/피혁류가 15.7~28.0%로 높게 분석되었음
- ❑ 재활용선별업체 의 성상별 삼성분 평균 비율은 대영의 경우 수분 37.7%, 가연분 50.5%, 회분 11.8%로 분석되었고, 부성의 경우 수분 7.7%, 가연분 81.4%, 회분 10.9%로 분석되었음 부성의 수분 비율이 낮고, 가연분 비율이 높은 것은 폐기물 성상 중 비닐/플라스틱류의 비율이 90%이상이므로 전체 폐기물의 삼성분이 비닐/플라스틱류와 유사하게 나타남

<표 3.2.3-9> 삼성분 분석 결과(소각장 1차)

(단위 : %)

| 구분 | 1호기 | | | 2호기 | | | 3호기 | | | 4호기 | | |
|---|---|---|---|---|---|---|---|---|---|---|---|---|
| | 수분 | 가연분 | 회분 | 수분 | 가연분 | 회분 | 수분 | 가연분 | 회분 | 수분 | 가연분 | 회분 |
| 음식물류 | 51.0 | 40.3 | 8.6 | 66.1 | 29.8 | 4.1 | 54.7 | 35.0 | 10.3 | 37.3 | 49.1 | 13.5 |
| 종이류 | 11.2 | 80.0 | 8.9 | 43.0 | 54.2 | 2.8 | 31.8 | 55.0 | 13.3 | 40.3 | 48.2 | 11.5 |
| 목재류 | 32.2 | 65.2 | 2.6 | 38.9 | 58.1 | 3.0 | 31.9 | 60.1 | 8.0 | 25.9 | 63.3 | 10.7 |
| 고무/피혁류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비닐/플라스틱류 | 4.4 | 90.1 | 5.5 | 25.9 | 66.5 | 7.6 | 12.4 | 77.4 | 10.2 | 26.6 | 70.8 | 2.6 |
| 섬유류 | 17.8 | 76.2 | 6.0 | 19.2 | 76.1 | 4.7 | 19.6 | 74.5 | 5.9 | 28.1 | 70.9 | 0.9 |
| 기저귀 | 0.0 | 0.0 | 0.0 | 36.8 | 55.4 | 7.8 | 56.2 | 38.7 | 5.1 | 76.5 | 21.2 | 2.3 |
| 기타(연탄재등) | 74.5 | 18.4 | 7.1 | 66.3 | 24.9 | 8.8 | 39.5 | 36.1 | 24.4 | 53.1 | 24.1 | 22.8 |
| 평균 | 24.6 | 67.9 | 7.5 | 39.6 | 54.8 | 5.6 | 27.9 | 59.9 | 12.2 | 37.6 | 54.1 | 8.3 |

<표 3.2.3-10> 삼성분 분석 결과(소각장 2차)

(단위 : %)

| 구분 | 1호기 | | | 2호기 | | | 3호기 | | | 4호기 | | |
|---|---|---|---|---|---|---|---|---|---|---|---|---|
| | 수분 | 가연분 | 회분 | 수분 | 가연분 | 회분 | 수분 | 가연분 | 회분 | 수분 | 가연분 | 회분 |
| 음식물류 | 61.5 | 36.8 | 1.7 | 59.2 | 35.9 | 5.0 | 60.4 | 33.7 | 6.0 | 44.9 | 45.3 | 9.7 |
| 종이류 | 45.7 | 43.9 | 10.4 | 37.3 | 55.4 | 7.4 | 27.4 | 67.1 | 5.5 | 25.9 | 60.8 | 13.3 |
| 목재류 | 23.1 | 67.2 | 9.8 | 22.7 | 76.4 | 0.9 | 35.6 | 60.9 | 3.5 | 26.4 | 72.7 | 1.0 |
| 고무/피혁류 | 3.4 | 80.9 | 15.7 | 1.7 | 70.3 | 28.0 | 9.8 | 71.3 | 18.9 | 0.0 | 0.0 | 0.0 |
| 비닐/플라스틱류 | 27.2 | 66.8 | 6.0 | 15.5 | 82.3 | 2.2 | 13.3 | 71.1 | 15.6 | 34.3 | 64.5 | 1.2 |
| 섬유류 | 16.5 | 70.1 | 13.4 | 19.8 | 69.5 | 10.7 | 23.5 | 71.3 | 5.2 | 55.5 | 40.8 | 3.8 |
| 기저귀 | 0.0 | 0.0 | 0.0 | 31.9 | 59.1 | 9.0 | 52.1 | 42.8 | 5.0 | 63.6 | 33.4 | 3.0 |
| 기타(연탄재등) | 52.3 | 28.4 | 19.2 | 49.4 | 41.2 | 9.4 | 49.5 | 38.7 | 11.8 | 61.9 | 30.1 | 8.0 |
| 평균 | 38.5 | 52.3 | 9.1 | 31.1 | 62.0 | 7.0 | 31.7 | 58.7 | 9.7 | 41.4 | 52.5 | 6.1 |

열량계 산정결과 건조고위 발열량은 평균 4,596~5,871kcal/kg, 습윤고위 발열량 3,471~4,283kcal/kg, 습윤저위 발열량이 2,737~3,842kcal/kg으로 분석되었음 성상별로는 비닐/플라스틱류의 발열량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기타가연분이 낮게 분석되었음 듀롱식에 의한 발열량 산정결과 습윤고위 발열량은 2,809~3,997kcal/kg, 습윤저위 발열량은 2,441~3,502kcal/kg로 분석되었음

- ❑ 재활용선별업체 폐기물의 발열량은 습윤저위 발열량이 각각 2,575kcal/kg, 7,157kcal/kg로 분석되었으며, 듀롱식에 의한 습윤저위 발열량은 각각 2,024kcal/kg, 7,209kcal/kg로 분석됨 부성의 경우 비닐/플라스틱류의 조성비율이 높아 발열량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사료됨

<표 3.2.3-15> 발열량 분석 결과(소각장 1차)

(단위 : kcal/kg)

| 구분 | | 단열열량계 | | | Dulong 식 | |
|---|---|---|---|---|---|---|
| | | 건조고위 | 습윤고위 | 습윤저위 | 습윤고위 | 습윤저위 |
| 1호기 | 음식물류 | 4,098 | 2,006 | 1,444 | 1,584 | 1,153 |
| | 종이류 | 3,656 | 3,248 | 2,879 | 2,910 | 2,574 |
| | 목재류 | 4,481 | 3,040 | 2,529 | 2,453 | 2,044 |
| | 고무/피혁류 | – | – | – | – | – |
| | 비닐/플라스틱류 | 8,482 | 8,111 | 7,441 | 8,841 | 8,199 |
| | 섬유류 | 3,955 | 3,251 | 2,882 | 2,943 | 2,621 |
| | 기저귀 | – | – | – | – | – |
| | 기타(연탄재등) | 3,188 | 813 | 118 | 740 | 230 |
| | 평균 | 4,596 | 3,694 | 3,206 | 3,629 | 3,206 |
| 2호기 | 음식물류 | 4,394 | 1,487 | 799 | 1,101 | 606 |
| | 종이류 | 3,885 | 2,213 | 1,649 | 1,652 | 1,220 |
| | 목재류 | 4,484 | 2,742 | 2,192 | 2,259 | 1,832 |
| | 고무/피혁류 | – | – | – | – | – |
| | 비닐/플라스틱류 | 10,508 | 7,789 | 6,990 | 7,011 | 6,379 |
| | 섬유류 | 4,448 | 3,593 | 3,225 | 2,992 | 2,672 |
| | 기저귀 | 4,943 | 3,124 | 2,444 | 3,789 | 3,279 |
| | 기타(연탄재등) | 3,675 | 1,238 | 598 | 866 | 386 |
| | 평균 | 5,736 | 3,718 | 3,097 | 3,228 | 2,746 |
| 3호기 | 음식물류 | 2,517 | 1,139 | 558 | 1,252 | 809 |
| | 종이류 | 4,218 | 2,878 | 2,394 | 2,108 | 1,717 |
| | 목재류 | 4,482 | 3,052 | 2,567 | 2,299 | 1,908 |
| | 고무/피혁류 | – | – | – | – | – |
| | 비닐/플라스틱류 | 9,881 | 8,653 | 8,210 | 5,184 | 4,786 |
| | 섬유류 | 4,564 | 3,671 | 3,307 | 3,051 | 2,735 |
| | 기저귀 | 5,297 | 2,320 | 1,381 | 3,192 | 2,592 |
| | 기타(연탄재등) | 1,390 | 841 | 495 | −10 | −313 |
| | 평균 | 5,403 | 4,283 | 3,842 | 2,809 | 2,441 |
| 3호기 | 음식물류 | 3,976 | 2,491 | 1,989 | 1,933 | 1,534 |
| | 종이류 | 3,884 | 2,320 | 1,847 | 1,139 | 760 |
| | 목재류 | 4,389 | 3,250 | 2,806 | 2,407 | 2,038 |
| | 고무/피혁류 | – | – | – | – | – |
| | 비닐/플라스틱류 | 7,915 | 5,810 | 4,991 | 7,097 | 6,452 |
| | 섬유류 | 4,150 | 2,984 | 2,487 | 2,397 | 1,993 |
| | 기저귀 | 5,456 | 1,282 | 125 | 1,942 | 1,319 |
| | 기타(연탄재등) | 3,864 | 1,813 | 1,439 | −377 | −721 |
| | 평균 | 5,431 | 3,518 | 2,897 | 3,252 | 2,768 |

폐기물 성상분석 결과 (계절별)

(예시)

**나) 물리적 조성**

-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은 소각장 1, 2, 3호기 및 재활용선별업체 2지점에서 인력을 통해 수선별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물리적 조성결과는 중량비로 분석하였음
- 물리적 조성 분석결과 소각장 호피의 경우 가연성 폐기물이 평균 96.1% 불연성 폐기물이 3.9%로 조사되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중 비닐/플라스틱류의 비율이 29.1%, 종이류 26.6%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연성 기타 13.2%, 섬유류 12.6%, 음식물류 8.7%, 기저귀 6.1%이며 그 외 목재류, 고무/피혁류는 1.0% 이하로 조사되었음 불연성 폐기물은 유리/도자기류 2.7%, 금속류 1.2%로 분석됨
- 재활용선별업체 중 대영의 경우 가연성 폐기물이 각각 67.0%, 불연성 폐기물 33%로 분석되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중 비닐/플라스틱류가 39.9%, 종이류 2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불연성 폐기물은 유리/자기류가 29.5% 높게 분석되었음 부성의 경우 가연성 폐기물이 100%로 이중 비닐/플라스틱류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3-5> 물리적 조성 분석 결과(소각장)

(단위 : %)

| 구분 | | 1차 | | | | 2차 | | | | 평균 |
|---|---|---|---|---|---|---|---|---|---|---|
| | | 1호기 | 2호기 | 3호기 | | 1호기 | 2호기 | 3호기 | | |
| 가연성 | 음식물류 | 14.0 | 6.4 | 11.7 | 3.5 | 11.5 | 7.2 | 12.5 | 2.9 | 8.7 |
| | 종이류 | 36.7 | 30.5 | 18.3 | 23.6 | 32.2 | 30.1 | 16.8 | 24.5 | 26.6 |
| | 목재류 | 0.6 | 1.1 | 0.3 | 1.4 | 0.5 | 0.8 | 0.3 | 1.3 | 0.8 |
| | 고무/피혁류 | 0.0 | 0.0 | 0.0 | 0.0 | 1.1 | 1.8 | 0.2 | 0.0 | 0.4 |
| | 비닐/플라스틱류 | 22.0 | 25.9 | 32.8 | 34.2 | 30.9 | 24.0 | 30.3 | 32.6 | 29.1 |
| | 섬유류 | 9.8 | 13.8 | 15.9 | 13.5 | 10.3 | 11.6 | 13.7 | 12.1 | 12.6 |
| | 기저귀 | 0.0 | 7.3 | 2.7 | 5.4 | 0.0 | 9.9 | 6.5 | 6.1 | 4.7 |
| | 기타 | 12.7 | 14.3 | 15.4 | 15.8 | 9.1 | 9.0 | 14.0 | 15.3 | 13.2 |
| | 소계 | 95.7 | 99.3 | 97.1 | 97.4 | 95.6 | 94.4 | 94.3 | 94.8 | 96.1 |
| 불연성 | 금속류 | 3.0 | 0.7 | 0.5 | 2.6 | 1.3 | 0.3 | 1.4 | 0.1 | 1.2 |
| | 유리/도자기류 | 1.3 | 0.0 | 2.4 | 0.0 | 3.1 | 5.3 | 4.3 | 5.1 | 2.7 |
| | 자갈류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토사류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기타(연탄재등)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소계 | 4.3 | 0.7 | 2.9 | 2.6 | 4.4 | 5.6 | 5.7 | 5.2 | 3.9 |
| 합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 예측 결과

## 【 시급성 】 1.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 기존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 기존시설 대보수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함

○ 기술진단 결과 "폐쇄 후 신설" 판정인 경우에 한해 기존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며,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연수 이전에 폐쇄하고 시설 설치시 국고지원 대상 아님
※도서지역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기술진단 결과서에 따름(39p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 참고)

○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소모품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등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시)

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기술진단 보고서

진단기관 : 한국환경공단

201 . 06

기술진단보고서(표지)

폐기물 발생량 504.9톤/일을 통하여 필요 소각시설의 용량을 산정할 경우 310일 가동을 가정하여, 약 600톤/일(594.5톤/일)의 시설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7년 일평균 소각량 기준으로 약 95톤/일, '18년 8월 기준으로 약 131톤/일의 소각처리 외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소각을 위한 성능향상, 장기사용 시설의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현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체류시간 확보, 수도권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준수, 에너지회수효율 극대화 및 통합 환경허가제도 효과적 대처 등을 위해서 현 시설에 대한 대보수가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설비인 소각로, 폐열보일러, 반건식알칼리흡수탑, 백필터, 선택적촉매반응탑 등은 적정한 상태유지 및 '12년 기술진단에 따른 보수를 실시하여 현재의 수선유지비로 유지보수 시 대보수 이전까지(약 5년) 지속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7.5.3. 기대효과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대보수를 통해 시설의 전면적인 교체를 실시할 경우 고발열량 폐기물의 반입으로 감소된 소각량 회복을 통해 향후 반입 폐기물 전량 처리 등 현저한 성능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19년 이상 장기 사용된 시설의 사용연한 20년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에너지회수효율 극대화, 통합 환경허가제도 효과적 대응 및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진단결과 (폐쇄·신설 또는 대보수 등)

<그림 7.3> 소각로 보수비용

따라서, 설비 노후화 및 발열량 증가에 따른 감소된 소각량 복원 방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5.2 시설 효율화 방안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능력 회복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 폐기물처리정책의 효율화 등을 위해 신규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역특성상 생활폐기물처리의 어려움으로 가연성폐기물 반입증가로 저위발열량 증가하여 소각로, 보일러 등 주요설비의 노후화 심화 및 건물 외부벽체 · 지붕은 판넬 구조물로 열적무시 상태로 재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각동 내부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최근의 발열량(약 4,000kcal/kg)을 고려한 대보수 시 소각로 등 주요설비의 설치가 어려워 소각성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규설치 시, 최근 발열량을 고려한 적정용량의 소각설비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매립 제로화를 실현하여 정부의 폐기물정책 부합 및 매립지 운영 정상화로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시설 설치 시에는 면밀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장래의 인구변동에 따른 소각량 산정 및 입지선정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의 소각대상 폐기물의 매립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 시 설치기간 동안 운영방식 변경(준연속식→연속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방식 변경 시 소각량 증가를 통한 폐기물매립량 감소, 연료사용량 감소 등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24시간 연속가동으로 인한 운영비 등이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진단결과 (폐쇄·신설 또는 대보수 등)

| 설비명 | 설비명 | 시설개선 사항 | 비용(천원) |
|---|---|---|---|
| | 기타설비 | Air Compressor 및 정출탱크 교체 | 16,822 |
| | 그 외 | 도장, 보온공사 및 철거비용 | 67,359 |
| | 소계(기계) | | 453,727 |
| 전기 | 전기설비 | 전선, 콘텍타, 풀박스 및 트레이 공사 등 | 12,262 |
| | 계장설비 | 수배전반 설치공사, 소내 동력케이블 공사 등 | 25,760 |
| | 소계(전기) | | 38,022 |
| 총합계(기계+전기) | | | 491,749 |
| 시설부대경비 | | | 54,731 |
| 공사비 총계 ① | | | 546,480 |
| 기타간접경비(경비, 제보험 등) ② (①의 27%) | | | 147,549 |
| 원가총계 ③ (①+②) | | | 694,029 |
| 부가가치세 ④ (③의 10%) | | | 69,402 |
| 최종보수금액 (③+④) | | | 763,431 |

하지만, 이 금액은 신규 설치비용의 약 74%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시설 개선의 타당성 중 경제성이 부족하며 소각로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계 후 약 10년가량 지난 소각로의 수명을 증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모든 설비를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폐기물 관리 및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계근시설을 추가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기술진단결과 (폐쇄·신설 또는 대보수 등)

(예시)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승인번호 제 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 | | | |
|---|---|---|---|
| ① 상호(명칭) | 시<br>음식물자원화(사료화)시설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시장 | | |
| ④ 업 종 | 공공기관 | | |
| ⑤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 | |
| ⑥ 시설설치예정지 | 일원(전화번호: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용

| ⑦ 처리시설명 | ⑧ 처리시설 규격(능력) | ⑨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⑩ 처리예상량 (톤/연) | ⑪ 방지시설명 |
|---|---|---|---|---|
|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 톤/일×3기 ( 톤/일) | 음식물류 폐기물 | 톤/일 | 습식탈황기, 건조배가스집진기, 촉열식연소장치 + 악액세정탑 |
| ⑫ 승인조건 | "붙임 참조" | |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201 년 1 월 28일

유역환경청장 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변경사항>

| 일자 | 내용 | 확인 |
|---|---|---|
| 201 . 1. 28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규) | |
| 201. 10. 4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br>-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
| 201. 8. 2 | • 사용개시신고 수리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등 (국고 지급기준연수 도래여부 확인)

**【 준비성 】 1.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사전예산협의 및 예산신청 이전 절차의 이행결과 제시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보고서

○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적격성판단 결과보고서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면제사업 선정통보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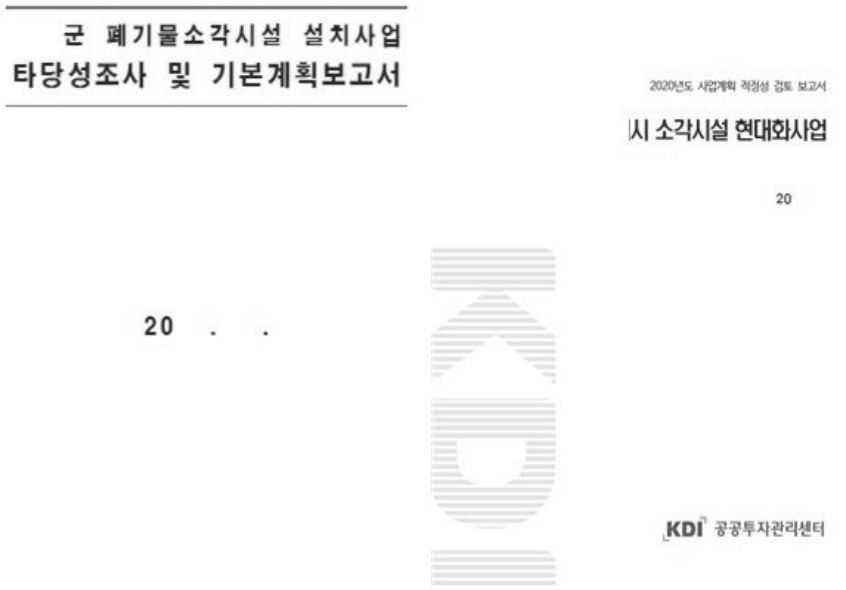


사전절차 이행 여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보고서 첨부)

## 【 준비성 】 2. 민원해소 여부

⇒ 입지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및 주변지역 협의결과 제시

○ (도시·군계획시설) 시설결정(변경)고시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 (폐촉법 대상사업) 입지결정(변경)고시 및 입지선정 추진사항

○ (토지매수 및 보상) 등기부등본 및 보상합의서 등

(예시)

고 시

영덕군 고시 제2006 - 192호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0조, 제82조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2006. 8. 30.

영 덕 군 수

1.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가.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기정 | 변경 | 변경후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신설 | 1 | 폐기물처리시설 |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 영덕군 강구면 하계리 산18번지 일원 | - | 증)89,389 | 89,389 | - | |

2)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1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신설 A = 89389㎡ | · 영덕군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환경적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및 향후 폐기물의 재계적이고 계획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

제5571호 경 상 북 도 보 2011. 10. 17(월)

□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계 | | | | | 22,171 | - | 22,171 | | |
| 기정 | 3 | 남산 폐기물 처리장 |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 어모면 남산리 293-1일원 | 22,171 | - | 22,171 |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1.29) | |

마. 용도지역계획도, 토지이용변경계획도, 기반시설변경계획도 등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구 분 | 용수 수요량(㎥/일) 기 정 | 변 경 | 비 고 |
|---|---|---|---|
| 계 | 3,400 | 3,400 | - |

민원해소 여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

(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10.] [조례] [2023. 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ı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규모와 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하여 결정 · 고시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기계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 또는 비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생물학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ı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ı으로서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을, 그 밖에 구성방법과 운영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권한)** ① 지원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권한 범위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시 제2021-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

시장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 :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시설종류 :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 시설규모 : 소각용량

3. 폐기물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관리구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 위 치 :
   ○ 지번 및 지목 :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 부지면적 :

6. 공사 시행기간 : 20

※ 현장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민원해소 여부 (폐촉법 시설 지자체 조례 및 입지결정 고시)

## 【 효율성 】 1.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처리계획 제시

○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계획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폐수 처리계획

(예시)

**제 6 장 기 본 계 획**

### 6.3.9 소각재 및 재활용잔재물 처리방안

제처리설비는 폐기물의 소각시 발생하는 소각재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재배출원은 소각로, 폐열보일러, 반건식반응탑 및 여과집진기 등으로 바닥재 처리설비 및 비산재 처리설비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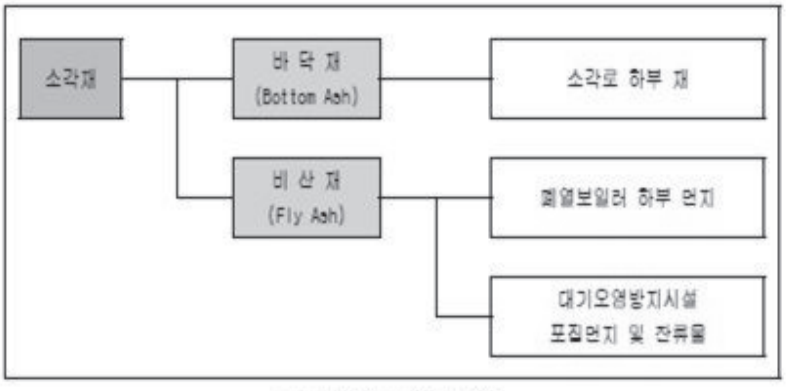


<그림 6.3-6> 소각재 분류

[표 6.3-19] 소각재 지정폐기물 판정기준

| 항목 | 기준치(mg/L) | 항목 | 기준치(mg/L) | 항목 | 기준치(mg/L) | 항목 | 기준치(mg/L) |
|---|---|---|---|---|---|---|---|
| Pb | 3 | As | 1.5 | Cd | 0.3 | CN | 1 |
| Cu | 3 | Hg | 0.005 | $Cr^{+6}$ | 1.5 | 용출시험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제시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함량임(소각재).

**가. 바닥재 처리**

소각로 하부에서 배출되는 바닥재는 바닥재 저장조로 이송되어 반출차량에 의해 기존방식대로 군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잔재물 처리계획 제시 (기본계획, 타 시설과의 협의결과 문서 등)

## 【 효율성 】 2. 기존시설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 다음의 폐기물을 기존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협의결과 제시

○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잔재물 반입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처리 잔재물 반입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및 비산재 반입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반입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중 유입부하량 검토 결과 수록
- 유입 처리시설과의 협의문서 제출

(예시)

제 6 장 기 본 계 획

**나. 소각여열 활용방안**

소각열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플랜트는 생활폐기물의 발열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난방이나, 소내 소요전력으로 이용 등으로의 여열 이용이 가능해져 폐기물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폐기물이 아니라 유용하게 이용 가능한 열원이라는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각여열을 이용한 설비들이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1) 소각여열 이용방법

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변환되는 에너지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열 공급설비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사용하여 열교환기를 통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통 10~30 kg/㎠·G의 포화증기가 사용되며 열부하의 변동에 대비하여 증기 복수기를 설치하여 열공급 열량을 제어한다.

(나) 발전설비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증기터빈 발전기에서 전기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다) 열병합발전설비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발전, 공정용 증기 및 지역난방용 용수 등 고압에서부터 저압까지 다양하게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 목적에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통구성이 가능한 방식이다. 전 증기량 및 열공급 조건이 공정적으로 변수가 많은 시스템이어서 부하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 여열이용설비 계획**

수관식 보일러를 적용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소각로 설치예정부지의 주변에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지역 난방이나 발전 등의 활용 방안 보다는 관리동 및 재활용선별시설 휴게실, 샤워실등 난방 및 온수로 활용하며, 향후 음식물쓰레기 건조용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시설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서식 2]**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 구분 | | 검토항목 | 검토사항 | 확인 (예시) |
|---|---|---|---|---|
| 적정성 | 1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신규, 대보수) | ○ |
| | | | 아닌 경우(일부 개선, 유지보수 등) | |
| | 2 |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반영여부 |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반영 | ○ |
| | | | 자원순환시행계획 반영요청 공문(시. 군 → 시.도) | |
| | | | 미반영 | |
| | 3 | 설치기간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상 목표연도와 설치시기 일치 | ○ |
| | | | 타당성조사, 통계 활용 시설용량 산출 | |
| | | | 산출 부적정, 근거 부족 | |
| | 4 | 총사업비 및 총국고보조금의 산정 | 표준단가 적용, 원인자부담금 제외 (원인자 증빙자료 제출) | |
| | | | 표준단가 초과 | *보완* |
| | 5 | 최적화 반영여부 | 협약체결 완료(기본,실시협약) | |
| | | | 단독시설 설치(지자체간 협의공문 첨부) | |
| | | | 미반영(협약 또는 지자체간 협의공문 미제출) | *보완* |

| 구분 | 검토항목 | | 검토사항 | | 확인 (예시) |
|---|---|---|---|---|---|
| 시급성 | 6 |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 (신설,증설)보유시설 없거나, 용량부족으로 신규시설 설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에 증설량 산출, 시급사유 제시 | ○ |
| | | | (대보수/폐쇄후 신설) 기술진단보고서 인정기준까지 운영완료 후 진단 |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종합결론 : 대보수 또는 폐쇄신설 명시) | |
| | | | |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종합결론 : 유지보수 및 일부개선) | |
| | | | | 진단결과보고서 미제출 (진단의뢰, 시설확인, 분석중) (종합결론 없음) | |
| | | | (대보수/폐쇄후 신설)인정기준 연한 미도래 | 기술진단 실시여부 관계없음 | |
| 준비성 | 7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재정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 최종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내 완료 | ○ |
| | | | | 최종보고서 미제출 | |
| | | | (민자사업)사업계획 적격성판단 결과보고서 | 최종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내 완료 | |
| | | | | 최종보고서 미제출 | |
| |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또는 면제결정 완료 | |
| | |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 완료 | ○ |
| | | | | 예비타당성조사(면제요구) 미추진 | |
| | 8 | 민원해소 여부 | 입지선정 대상사업 | 입지결정 고시 완료, 주민의견 수렴결과 제출 | ○ |
| | | |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또는 후보지 타당성조사 진행중 | |

| 구분 | 검토항목 | | 검토사항 | 확인 (예시) |
|---|---|---|---|---|
| 효율성 | 9 |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 소각재 처리계획 수립(바닥재 관내 매립, 비산재 위탁처리 등) (타당성조사, 내부결재 근거 제출) | ○ |
| | | | 폐수 처리계획 수립(관내 처리시설 연계부하량 산출, 위탁처리 등) (타당성조사, 내부결재 근거 제출) | |
| | | | 처리량 산출 및 처리계획 미수립 | |
| | 10 | 악취방지계획의 적정성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 수립 | ○ |
| | 11 | 기존시설과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 재활용잔재물 반입(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 선별업체) | |
| | | |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반입 (공공 음식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 |
| | | | 바닥재 및 비산재 매립(매립시설 설치승인서 제시) | ○ |
| | | | 폐수 연계처리 (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등) | ○ |
| | | | 연계하지 않는 경우 | |
| | 12 | 최종생성물(소각여열 등) 활용방안의 적정성 | 소각여열,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 활용(사료, 퇴비의 경우 공급처 확보) | ○ |
| | | | 미활용 | |

| 구분 | 검토항목 | | 검토사항 | | 확인 (예시) |
|---|---|---|---|---|---|
| 정책이행도 | 13 | 정부정책 방향 이행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반영 | (탄소중립, 에너지 활용형)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의견 수렴 및 선호도 조사 시행 | | |
| | | | 불법폐기물 처리실적이 있는 지자체 | | ○ |
| | | | 민간재활용품 선별업체의 재활용 잔재물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는 지자체 | | ○ |
| | | |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화 및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청정개발체제(CDM)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연계계획 있는 사업 | | |
| | | | 직매립 제로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수립 완료(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등 기본계획 반영) | ○ |
| | | | | 미수립 | |
| | | |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운영실태평가 결과 (100점 만점) | A(매우우수) | |
| | | | | B(우수) | ○ |
| | | | | C(보통) | |
| | | | | D(미흡) | |
| | |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결과 (100점 만점) | A(매우우수) | |
| | | | | B(우수) | |
| | | | | C(보통) | ○ |
| | | | | D(미흡) | |
| | | | | 미제출, 미입력 | |
| | | | 정산 이행 여부 | 준공 후 3개월 이내 정산 신청서 제출 | ○ |
| | | | | 정산 신청하였으나, 자료 보완 미이행 | |
| | | | | 원인자부담금 누락, 축소 | |

| 보완사항 |
|---|
| *(예시) 1. 최적화 협약 또는 지자체간 협의 공문 첨부*<br>*2. 민원해소 여부 확인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주민의견 수렴 미완료*<br>*3.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결과 표준단가를 초과하였으므로 표준단가 이내로 재산정 필요* |

## [서식 3] ⇒ 시·군·구 작성서식

# 국 고 보 조 금 신 청 서

시 · 군 · 구명

## Ⅰ. 예산신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 '23년 예산 | '24년 예산요구 | | | | | | 비고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자본 | 기타 | |
| 합 계 | | | | | | | | |
| ㅇ생활자원회수센터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ㅇ매립시설 | | | | | | | | |
| ㅇ비위생매립지 정비 | | | | | | | | |
| ㅇ소각시설 | | | | | | | | |
| ㅇ매립가스자원화시설 | | | | | | | | |
| ㅇ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 | | | | | | |
| ㅇ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 | | | | | | |
| ㅇ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 | | | | | | |
| ㅇ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23년 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등 기재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 Ⅱ. 단위사업별 예산설명자료

| | 직책 | 성명 | 연락처 |
|---|---|---|---|
| 담당자 | 국(실)장 | | 지역번호-국-번 |
| | ○○○과장 | | 지역번호-국-번 |
| | 사무관/주사 | | 지역번호-국-번 |

# 단위사업명(신규, 계속)

[작성참고]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회계 - △△계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결산 | 2023예산 (A) | 2024예산(안) | | 증 감 (B-A) | |
|---|---|---|---|---|---|---|
| | | | 요구 | 검토안 (B) | | % |
| ○ 사업명 | | | | | | |

[작성참고]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23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하고 '24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작성참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기술

#### □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시설종류[1] | |
| 사업기간 | 'yy~'yy (ex : ('24) 'yy~'yy → ('27)'yy~'zz) |
| 총사업비 | 백만원<br>[국고 : 백만원( %), 지방비 : 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 백만원( %), 민간자본 : 백만원( %), 기타 : 백만원( %)] |
| 사업규모[2] | |
| 지원조건[3] | |
| 사업시행주체 | |
| 위치(면적)[4] | ( ㎡) |

[작성참고] 1) ‘Ⅰ.예산신청 총괄표’의 시설종류를 기재(ex> 생활자원회수센터)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및 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 이용방법에 따른 시설종류(발전시설, 열공급시설 등)까지 기재

2) 단위 : 톤/일(매립시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천㎥ ⇒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주변녹지지역을 제외한 순수 매립부지면적 기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대상매립지의 평균매립고(m)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 처리량(톤/일)까지 기재

3)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4) 매립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주변녹지지역 등을 포함

5) 소각시설 신설 및 대보수의 경우,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표준단가 적용

6)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있을 경우, 납부액 및 예상납부액을 기재하고 지방재정 공시현황 및 납부대장 등 증빙자료 제출

## 2. ’24년 요구내용

###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작성참고]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며, ´24년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① 총사업비 : 표준단가(---백만원) × 용량(톤/일, ㎥)
② ’24년도 사업비 : 총사업비 × ---%(당해년도 요구 비율)
(계속사업일 경우 기 투자액, 요구액, 잔액 명시)

* ’23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24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 구 분 | ’23 예산 | ’24 요구 |
|---|---|---|
| □ 사업명 | | |
| ▪ ㅇㅇ내역사업 | (ex)… 지원 | (ex) … 으로인해 ’23년 미요구 |
| ▪ ㅇㅇ내역사업 | (ex) -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 ▪ ㅇㅇ내역사업 | | |

## □ 지원 필요성

○

[작성참고]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22까지 예산 | '22 결산 | '23 예산 | '24예산 소요내역 |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 | | | | 금액 | 산출근거 | '24년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 합 계 | | | | | | | | | | | |
| 세부내역 | ◦ 기본설계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공사비<br>- 토목공사<br>- 건축공사<br>- 기계공사<br>- 전기공사 | | | | | | | | | | |
| | ◦ 감리용역 | | | | | | | | | | |
| | ◦ 위탁수수료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 | | | | | | | | | |
| 재원별 | ◦ 국고 | | | | | | | | | | |
| | ◦ 지방비<br>- 시·도비<br>- 시·군비 | | | | | | | | | | |
| | ◦ 원인자부담금<br>- 택지개발부담금 | | | | | | | | | | |
| | ◦ 기타<br>- 민자<br>- 기타재원 | | | | | | | | | | |

주 1. 세부내역에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공사비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국고지원 대상항목에 한하여 신규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2. 산출근거에 물량, 단가 등을 기재(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6. 총사업비 변경요구"로 신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24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용역 준공내역서, 실시설계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

## 3. 중기재정 소요전망('24~'28)

### □ 사업운영 기본방향

[작성참고] 중기 기간 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년 도 | 금 액 | 산 출 근 거※ |
|---|---|---|
| 총사업비 | | |
| '23까지 | | |
| 2024 | | |
| 2025 | | |
| 2026 | | |
| 2027 | | |
| 2028 | | |

[작성참고]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4.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작성참고] 관련법령, 시책 등의 구체적인 조문내용 등을 기재

○ 추진경위

[작성참고] '23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하며,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 사업명 | '19예산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
| ○ | | | | | |

[작성참고]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 (2) 최근 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

[작성참고]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기재

(단위 : 백만원)

| 년도 | 당초예산 (A) | 전년이월 (B) | 이 · 전용 (C) | 예산현액 (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20년 | ( ) | ( ) | ( ) | ( ) | ( ) | ( ) | ( ) |
| '21년 | ( ) | ( ) | ( ) | ( ) | ( ) | ( ) | ( ) |
| '22년 | ( ) | ( ) | ( ) | ( ) | ( ) | ( ) | ( ) |

* 동 결산내역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이후 '23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 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정확히 작성)

[작성참고]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며,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한 후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 연도별 이 · 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22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및 '23년도 예산집행 전망

-

[작성참고] 1. 부진사유의 경우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만 작성하며, 사전 준비 부족,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 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 요인을 들어 설명

2. 예산집행 전망은 '22년도 발생한 이월액과 '23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작성참고] 1. 재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평가 결과 시기, 등급 등)

2.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약술하되, 구체적인 지적 · 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작성참고] 내용은 간략히 요약 정리

## (5) 사업추진절차

○

[작성참고]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6) 향후 추진일정

○

[작성참고] 1. 이후 일정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주요공정별로 기재

2. 신규 매립지의 경우 단계별(1 · 2 · 3단계 등) 조성계획(규모 등)까지 기재

## (7) 총사업비 관리

(단위 : 억원)

| 구 분 | 변경 년도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 변경사유 및 내역 |
|---|---|---|---|---|---|---|
| | | 당초 | 변경 | 착수 | 완료 | |
| 최 초 | yyyy | | | yyyy | yyyy | |
| ( )차 변경 | yyyy | | | yyyy | yyyy | |
| ( )차 변경 | yyyy | | | yyyy | yyyy | |
| 2024예산안 요구 | | | | yyyy | yyyy | |

##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사업기간) | 총사업비 | | '22 까지 | '23 예산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24 | | '25 | | '26 | |
| | 현행 | 요구 | | | 현행 | 요구 | 현행 | 요구 | 현행 | 요구 |
| ㅇ 사업명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ㅇ 국 고 | | | | | | | | | | |
| ㅇ 지 방 비 | | | | | | | | | | |
| ㅇ 원인자부담금 | | | | | | | | | | |
| ㅇ 민간자본 | | | | | | | | | | |
| ㅇ 기타 | | | | | | | | | | |

[작성참고]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5. '23년도 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계속사업만 작성)

○

[작성참고] 동 항목은 '24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 □ '22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약사항 | | '22년까지 집행상황 | | | | | | '23예산 |
|---|---|---|---|---|---|---|---|---|---|
| | 계약일 (착공일) | 완공 (예정)일 | 예산액 (A) | 계약액 (B) | B/A (%) | 지출액 (C) | C/A (%) | 차년이월 (D=A-C) | |
| **전체사업비** | | | | | | | | | |
| · 타당성조사 | | | | | | | | | |
| · 기본계획 | | |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기타부대비 | | | | | | | | | |
| · 시설공사 | | | | | | | | | |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 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 '23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상 진도 | '23년말 예상집행 상황 | | | | | | | 연도말 사업진도 |
|---|---|---|---|---|---|---|---|---|---|
| | | '23예산액 (E) | 전년 이월액(D) | 예산현액 (F=E+D) | 계약액 (G) | G/F (%) | 지출액 (H) | H/F (%) | |
| **전체사업비** | | | | | | | | | |
| · 타당성조사 | | | | | | | | | |
| · 기본계획 | | |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기타부대비 | | | | | | | | | |
| · 시설공사 | | | | | | | | | |

※ 환경청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절대공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인·허가기간 등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집행상황 전망치가 도출되도록 검토·수정(단년도 사업은 작성제외)

## 6. 사업추진 타당성 자체검토

### ★ 사전예산검토결과서 "보완"사항 반영결과 첨부

[작성참고] 보완 요청사항의 추진결과, 변경사항 등 해당부분을 캡처하여 예산신청서에 반영하고, 원본 보고서 등은 시스템 및 문서 첨부

### ①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작성참고] 1.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 집행계획」에 반영여부, 설치시기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여부, 총사업비(총국고보조금 포함)의 적정성 여부 등

2.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시행 · 집행계획 수립 연 · 월 및 반영내용을, 시행 · 집행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경우 시행 · 집행계획 변경 추진일정(용역, 승인신청 등)을 기재

3.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예산신청 전 사업 진척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사항을 기재

4. 인접지역 간 집적화 · 광역화 여부 기재

### ② 사업추진의 시급성 여부

-

[작성참고] 1. 기존 시설의 용량부족 여부, 정부시책사업 해당 여부 등
2.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근거를 들어 기술

### ③ 예산투자의 효율성 여부

-

[작성참고] 기존 시설과의 연계처리 여부, 최종생성물의 활용방안 및 수요처 확보, 잔재물의 처리계획 등

### ④ 예산투자의 형평성 여부

-

[작성참고] 각 시설별 국고지원기준 충족 여부, 지역편중 정도 고려 여부 등

### ⑤ 사전 진행상황의 준비성 여부

-

[작성참고] 사업의 사전 진행상황 완료 여부, 사업 진행상 문제 여부 등 (민자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 등 추진계획)

## 7. 참고자료

○ 대상지현황

[작성참고] 현재 계획 대상지의 대체시설 현황 및 처리체계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ex> - 생활자원회수센터 :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수거 및 처리현황, 분리배출유형(3~5종), 수거주기, 수거방법 등
- 비위생매립지정비 : 현재까지 매립량, 매립기간, 현재부지용도, 인근민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과 이격거리, 침출수 및 매립가스 발생량 등

- 소각시설 : 소각시설 용량, 소각시설 가동율, 여열발생량 (Gcal/년) 등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매립시설 일반현황(면적, 매립용량, 잔여용량 등), 가스발생량(㎥/분), 가스포집량(㎥/분) 등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작성참고] 1.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률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기술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적용물량 · 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기타사항

[작성참고] 기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요인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ex> - 생활자원회수센터 : 각종 재활용제품의 수요처 및 수요량 확보계획 등
- 비위생매립지정비 : 정비 후 토지이용계획 등
- 소각시설 : 여열회수율, 회수 후 여열이용계획 등

## [서식 4] ⇒ 시·도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 시 · 도명(관할 환경청명)

### ■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별 | 사업구분 (재정/민자)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총국고 | 국고비율 (%) | 신규/계속 | '22년까지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요구 | | | | | | 비 고 |
|---|---|---|---|---|---|---|---|---|---|---|---|---|---|---|---|---|
| | | 시작 | 종료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자본 | 기타 | |
| 소관합계 | | | | | | | | | | | | | | | | |
| □ **소각시설**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매립시설**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사 업 별 | 사업구분 (재정/민자)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총국고 | 국고비율 (%) | 신규/계속 | ’22년까지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요구 | | | | | | 비 고 |
|---|---|---|---|---|---|---|---|---|---|---|---|---|---|---|---|---|
| | | 시작 | 종료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자본 | 기타 | |
|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생활자원회수센터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순환형매립지 조성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사 업 별 | 사업구분 (재정/민자)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총국고 | 국고비율 (%) | 신규/계속 | ’22년까지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요구 | | | | | | 비 고 |
|---|---|---|---|---|---|---|---|---|---|---|---|---|---|---|---|---|
| | | 시작 | 종료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자본 | 기타 | |
| □ 비위생매립지 정비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A시 또는 B군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Ⅶ. 관련서식 |

## [서식 5] ⇒ 유역(지방)환경청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 유 역 (지 방) 환 경 청 명

### ■ 예산신청 조정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별 | 사업구분 (재정민자) | 사업기간 | | 총 사업비 | 총 국고 | 국고 비율 (%) | 신규/ 계속 | '22년까지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요구 | | | | | | 환경청 검토 | | | | | | 우선 순위 | 환경청 검토의견 |
|---|---|---|---|---|---|---|---|---|---|---|---|---|---|---|---|---|---|---|---|---|---|---|---|
| | | 시작 | 종료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기타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기타 | | |
| 소관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립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별 | 사업구분 (재정/민자) | 사업기간 | | 총 사업비 | 총 국고 | 국고 비율 (%) | 신규/계속 | '22년까지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요구 | | | | | | 환경청 검토 | | | | | | 우선순위 | 환경청 검토의견 |
|---|---|---|---|---|---|---|---|---|---|---|---|---|---|---|---|---|---|---|---|---|---|---|---|
| | | 시작 | 종료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기타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기타 | | |
|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자원회수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환형매립지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별 | 사업구분 (재정/민자) | 사업기간 | | 총 사업비 | 총 국고 | 국고 비율 (%) | 신규/ 계속 | '22년까지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요구 | | | | | | 환경청 검토 | | | | | | 우선 순위 | 환경청 검토의견 |
|---|---|---|---|---|---|---|---|---|---|---|---|---|---|---|---|---|---|---|---|---|---|---|---|
| | | 시작 | 종료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기타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기타 | | |
| □ 비위생매립지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C구(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추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A시 또는 B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유역(지방) 환경청 검토의견 란에는 단위사업별 지자체 국고신청액에 대한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계속사업의 경우 : ´24년도 완공사업으로서 ´23년도 국고지원액 중 사업진도 저조(집행률 60%)로 ´23년도 대비 20% 감액지원 등
신규사업의 경우 : 자원순환시행계획 미승인, 사업구상 단계로서 추진일정상 ´24년도 중 공사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반영 등

**[서식 6]**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자<br>(보조사업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전화<br>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사업명</td><td colspan="7"></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7"></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7">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td></tr>
<tr><td rowspan="2">사업비<br>(백만원)</td><td rowspan="2">총사업비</td><td rowspan="2">국고</td><td colspan="2">지방비</td><td rowspan="2">원인자<br>부담금</td><td rowspan="2">민간<br>자본</td><td rowspan="2">기타</td></tr>
<tr><td>시 · 도비</td><td>시 · 군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보조금신청액<br>(천원)</td><td colspan="7"></td></tr>
<tr><td>사업추진계획</td><td colspan="7">붙임참조</td></tr>
</tabl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OOO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서식 6의 붙임서식]**

# 사 업 추 진 계 획 서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2. 사업 추진현황

○

○ 2023년 현재 사업진도 :

[작성참고] 1.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2. 마지막의 현재 사업진도는 교부를 신청하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ex> 실시설계 %, 전체공정 %)

## 3. 투자실적 및 계획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기 투자실적 | ´23년도 사업비 | 향후 투자계획 |
|---|---|---|---|---|---|
| 계 | | | | | |
| 국 고 | | | | | |
| 지방비 | 소계 | | | | |
| | 시·도비 | | | | |
| | 시·군비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 민간자본 | | | | | |
| 기 타 | | | | | |

○ ´23년도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구분 | ´23년 예산현액 | | | 주요 집행내역 | 추진일정 (연/월) |
|---|---|---|---|---|---|
| | 계 | 전년 이월액 | ´23예산 | | |
| 합 계 | | | | | |
| | | | | | |

※ 사업비 구분은 기본계획비, 기본・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분

○ 연차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교부액 (A) | 전년이월액 (B) | 예산현액 (C=A+B) | 집행액 (D) | 집행률 (D/C) |
|---|---|---|---|---|---|
| 계 | | | | | |
| ´20년 | | | | | |
| ´21년 | | | | | |
| ´22년 | | | | | |

## 4. 지방비 확보여부

○

[작성참고] 1. “확보” 또는 “미확보”로 구분

2. 확보 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 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서식 7]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보조사업자 : OOOO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

2. 예산과목 : OOO(분야)-OOO(부문)-OOO(프로그램)-OOO(단위사업)-OOO(세부사업)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 세부사업 | 시도 | 시군구 | 단위사업장명 | 사 업 비 (천원) | | | | |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기타 |
| 【합 계】 | | | |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행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실적(정산)보고 :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고양식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서식 제8호, 제9호>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연락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 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불가

사. 실시설계 및 환경부 · 기재부 재원협의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은 총사업비 조정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집행할 경우에 한해 인정

아.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자.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차.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각 시설별 설치 ·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끝.

20○○년 ○월 ○일

# OO유역(지방)환경청장

[서식 8]

# 국고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 담당부서 | 직 위 | 성 명 | 전 화 | HP | E-mail |
|---|---|---|---|---|---|
| 000(시,도) | 과 장 | 0 0 0 | 000-000-0000 | | 00000@korea.kr |
| 000(시,군) | 담 당 | 0 0 0 | 000-000-0000 | | 00000@korea.kr |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0 0 0 | 000-000-0000 | | 00000@korea.kr |

## 1. 사업개요

❍ 위 치 : 000도 00시 000 000 00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0000.00~0000.00(00년 00월)

❍ 사업유형 : 재정사업, 민자사업(BTO)

❍ 사업규모 등 : 000(톤/일), 부지면적( ㎡), 수혜주민( 명) 등

❍ 총사업비 : 00,000백만원

- 국고( 00%) : 00,000 백만원
- 지방비( %) : 00,000 백만원
- 민간자본( %) : 00,000 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 : 00,000 백만원
- 기타( %) : 00,000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A) | 기 투자실적(연도별) | | | | 향후 투자계획(연도별) | | | |
|---|---|---|---|---|---|---|---|---|---|---|
| | | | 계(B) | 2021까지 | 2022 | 2023 | 계(C) | 2024 | 2025 | 2026 |
| 계 | | | | | | | | | | |
| 국고 | 소 계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지방비 | 소 계 | |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 | 시·군비 | | |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2. 추진현황

❍ 사업진도(공정률) : 00000 설계단계 ( %)

❍ 그간 추진실적(예)

- '00. 00. 00 :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0000 컨소시엄)*
- '00. 00. 00 : *민간투자사업 예산지원 가능여부 환경부 사전 협의*
- '00. 00. 00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검토의뢰(PIMAC)*
- '00. 00. 00 :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기본협약 체결(0000↔0000)*
- '00. 00. 00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검토 결과 통보 (환경부 최적화추진단→0000)*
- '00. 00. 00 : *PIMAC 민간제안서 검토의견 접수*
- '00. 00. 00 : *제3자공고(안) PIMAC 검토의뢰*
- '00. 00. 00 : *제3자공고(안) 검토결과 접수*
- '00. 00. 00 :

❍ '23년도 월별 추진계획

| 연 도 | 분 기 | 월 | 추 진 내 역 | 공정율(%) |
|---|---|---|---|---|
| '23년 | 1분기 | 1 월 | | |
| | | 2 월 | *제3자공고* | |
| | | 3 월 | *사전자격심사* | |
| | 2분기 | 4 월 | | |
| | | 5 월 | *제3자 제안 평가* | |
| | | 6 월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의* | |
| | 3분기 | 7 월 | *협상* | |
| | | 8 월 | *민투 심의 및 실시협약* | |
| | | 9 월 | *실시설계* | |
| | 4분기 | 10월 | | |
| | | 11월 |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 |
| | | 12월 | *착공* | 10% |

### <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

| 총 공 정(%) | | 총 투자비(백만원) |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계 획 | 실 적 | 계 획 | 실 적 | | |
| 00 | 00 | 00,000 | 00,000 | 0000.00.00 | 0000.00.00 |

## 3. 2023년 예산집행 현황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위수탁사업은 전문기관이 실 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예산현황 및 집행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 '23년 예산액 (a) | 이월액 (b) | 예산현액 (a+b) | 월별집행계획 | | |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합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국고 | |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
| 민자 | | | | | | | | | | | | | | | |
| 원인자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분기말 예산집행 예정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3년 ( )/4분기 집행현황 | | | | | | |
|---|---|---|---|---|---|---|---|
| | '22예산 (A) | 전년도 이월액(B) | 예산현액 (C=A+B)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D) | 잔액 (C-D) | % (D/C) |
| 합계 | | | | | | | |
| ㅇ국고<br>- 보조금 | | | | | | | |
| ㅇ지방비<br>- 시도비<br>- 시군비 | | | | | | | |
| ㅇ민간자본 | | | | | | | |
| ㅇ원인자부담금 | | | | | | | |
| ㅇ기타 | | | | | | | |

## 4.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조치계획)

## 5. 건의사항

❍

[서식 9]

#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준공일) | 위 치 (주소) | 사업규모 (톤/일, ㎥) | 총사업비(백만원) | | | | |
|---|---|---|---|---|---|---|---|---|
| | | | | 국 고 | 지방비 | 민간 자본 | 원인자 부담금 | 기타 |
| | 2021~2023 (2023.4.28.) | | 100톤/일 | | | | | |

## 2. 예산집행실적 및 정산

○ 연도별 재원별 예산교부내역

(단위 : 원)

| 연도 | 총사업비 | 국고 | | 지방비 | | | 민간 자본 | 원인자 부담금 | 기타 |
|---|---|---|---|---|---|---|---|---|---|
| | | 소계 | 보조율 (%) | 소계 | 시·도비 | 시·군비 | | | |
| 계 | | | | | | | | | |
| 2020 | | | | | | | | | |
| 2021 | | | | | | | | | |
| 2022 | | | | | | | | | |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 지출세부내역

(단위 : 원)

| 합계 | 총 공사비 | | | | | | 보상비 | 설계비 | 감리비 | 위탁 수수료 | 시설 부대비 |
|---|---|---|---|---|---|---|---|---|---|---|---|
| | 소계 | 공사비 | 주민 편익시설 | 폐기물 처리비 | 관급 자재비 | 조사 ·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3.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구 분 | 집 행 일 | 집 행 내 역 | 집 행 금 액 | 채 주 | 비 고 |
|---|---|---|---|---|---|
| 공 사 비 | 2021-01-30 | 1차년도 선금 | 330,000,000 | (주)OO건설 | |
| | 2021-03-10 | 1차년도 준공금 | 370,000,000 | (주)OO건설 | |
| | 2021-05-30 |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 650,000,000 | (주)OO건설 | |
| | 2021-09-10 |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 500,000,000 | (주)OO건설 | |
| | 2021-12-30 | 2차년도 준공금 | 750,000,000 | (주)OO건설 | |
| | 2022-03-28 |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 350,000,000 | (주)OO건설 | |
| | 2022-05-24 | 3차년도 제2회 기성금 | 300,000,000 | (주)OO건설 | |
| | 2022-06-30 | 3차년도 준공금 | 680,000,000 | (주)OO건설 | |
| | 2022-09-10 | 전기공사 선금 | 100,000,000 | ○○전기(주) | |
| | 2022-12-30 |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 100,000,000 | ○○전기(주) | |
| | 2023-03-30 |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 200,000,000 | ○○전기(주) | |
| | 소 계 | | 4,030,000,000 | | |
| 설 계 비 | 2019-10-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 74,000,000 | (주)OO엔지니어링 | |
| | 2020-03-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 100,000,000 | (주)OO엔지니어링 | |
| | 소 계 | | 174,000,000 | | |
| 감 리 비 | 2021-12-30 |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 100,000,000 | (주)OO엔지니어링 | |
| | 2021-12-30 |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 150,000,000 | (주)OO엔지니어링 | |
| | 2022-06-30 |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 200,000,000 | (주)OO엔지니어링 | |
| | 소 계 | | 450,000,000 | | |
| 시설부대비 | 2021-06-30 |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 500,000 | 김○○ | |
| | 2021-12-30 | 감독관 방한복 | 500,000 | (주)OO실업 | |
| | 2022-03-30 |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 1,000,000 | 김○○ | |
| | 2022-05-30 |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 500,000 | 이○○ | |
| | 2022-07-30 | 감독관 출장비(업부협의) | 500,000 | 이○○ | |
| | 2022-11-30 | 감독관 피복비 | 500,000 | (주)OO실업 | |
| | 2023-02-30 |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 500,000 | 김○○ | |
| | 소 계 | | 4,000,000 | | |
| 집 행 내 역 총 계 | | | 4,958,000,000 | - | |

## 4. 작성자 및 확인자

| 구분 | 담당과 | 직급 | 성명 | 전화 | 메일 |
|---|---|---|---|---|---|
| 작성자 | | | | | |
| 확인자 | | | | | |

## 5. 정산자료 체크리스트

| 번호 | 구분 | | 제출여부 | 미제출사유 |
|---|---|---|---|---|
| 1 |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 | | |
| 2 | 총사업비 승인 문서 | | | |
| 3 |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 | | |
| 4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 | |
| 5 |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 | | |
| 6 | 복합사업(공사나 용역을 타사업과 통합 발주한 경우)사업비 분계근거 | | | |
| 7 | 도급공사 |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 | |
| | | 최종계약서 | | |
| | | 준공검수조서 | | |
| | | 준공정산합의서 | | |
| | | 준공보고서, 도면, 내역서 | | |
| 8 | 폐기물처리용역 |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 | |
| | | 최종계약서 | | |
| | | 준공검수조서 | | |
| | | 준공정산합의서 | | |
| | | 준공내역서 | | |
| 9 | 설계비 |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 | |
| | | 최종계약서 | | |
| | | 준공검수조서 | | |
| | | 준공정산합의서 | | |
| | | 준공내역서 | | |
| 10 | 감리비 |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 | |
| | | 최종계약서 | | |
| | | 준공검수조서 | | |
| | | 준공정산합의서 | | |
| | | 위수탁 협약서(위탁사업일 경우) | | |
| 11 | 시설부대비 |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 | |
| | |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 | |
| 12 | 관급자재비 |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 | |
| | | 계약서 | | |
| | |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 | |
| 13 |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 | | |
| | |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장 | | |
| | | 고지서 | | |

## 6. 복합사업의 사업비 분계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식

| 시설구분 | 소각시설 (A) | 생활자원회수센터 (B) | 공통시설 (C) | 특이사항 |
|---|---|---|---|---|
| 공사비 | 준공내역의 금액 | | | |
| 시설별 비율 | A′=A/(A+B) | B′=B/(A+B) | | |
| 시설별 공사비(D) | $D_A$=A+A′×C | $D_B$=B+B′×C | | |
| 시설별 설계비(E) | $E_A$=E×A′ | $E_B$=E×B′ | | |
| 시설별 감리비(F) | $F_A$=F×A′ | $F_B$=F×B′ | | |
| 시설별 용역비(G) | $G_A$=G×A′ | $G_B$=G×B′ | | |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예시)

| 시설구분 | 소각시설 (A) | 생활자원회수센터 (B) | 공통시설 (C) | 계 |
|---|---|---|---|---|
| 공사비 | 50억 | 10억 | 20억 | **80억** |
| 시설별 비율 | A′=A/(A+B)<br>50억/60억=**83.3%** | B′=B/(A+B)<br>10억/60억=**16.7%** | | **100.0%** |
| 시설별 공사비(D) | $D_A$=A+A′×C<br>50억+20억×83.3%<br>=66.67억 | $D_B$=B+B′×C<br>10억+20억×16.7%<br>=13.33억 | | **80억원** |
| 시설별 설계비(E)<br>(설계비 2억원 가정) | $E_A$=E×A′<br>2억×83.3%=1.67억 | $E_B$=E×B′<br>2억×16.7%=0.33억 | | **2억원** |
| 시설별 감리비(F)<br>(감리비 4억원 가정) | $F_A$=F×A′<br>4억×83.3%=3.33억 | $F_B$=F×B′<br>4억×16.7%=0.67억 | | **4억원** |
| 합 계 | **71.67억원** | **14.33억원** | | **86억원** |

※ 총사업비 80억인 경우 소각 또는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소각시설(A, 50억) 생활자원회수센터(B, 10억)로 구분하고, 도로, 건축물 등 공동 사용시설(C, 20억)은 공통시설로 분리하여 소각(A)와 생활자원회수센터(B) 만으로 비율을 산정(83.3% : 16.7%)

※ 1.공동시설의 금액을 시설별 비율(A′, B′)에 따라 분리하여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산출
2.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총사업비 비율에 따라 분리

□ 국고보조금 정산 원칙 및 유의사항

○ 보조금의 정산 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 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실시설계 및 환경부 · 기재부 재원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승인된 주민편익시설은 사업기간 내 집행할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사 착공이후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편익시설의 설치비용 중 국고는 반환하고, 지방비에 한해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폐촉법 제21조)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붙임9) 참조

○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미집행한 사업비 또는 납부받은 지체상금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야하며 국고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 2. 총사업비 산정기준 가. 총사업비 산정 시 고려사항' 참고

[서식 10]

# 국 고 보 조 사 업 재 정 집 행 점 검 표

유역(지방)환경청명

(20 년 월말 기준)

## □ 재정집행점검반 운영실적

| 일 시 | 점검대상시설 | 점검 및 조치내용 |
|---|---|---|
| | | |

## □ 사업별 집행내역 총괄

(20 년 월말 기준, 백만원)

| 세부사업별 | 환경부 | | 보조사업자 | | | |
|---|---|---|---|---|---|---|
| | 당해년도 예산 | 교부액 (A) | 전년 이월액(B)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D) | D/C (%) |
| **소 관 합 계** | | | | | | |
| ㅇ생활자원회수센터 | | | | | | |
| ㅇ매립시설 | | | | | | |
| ㅇ비위생매립지 정비 | | | | | | |
| ㅇ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 | | | | |
| ㅇ소각시설 | | | | | | |
| ㅇ매립가스자원화시설 | | | | | | |
| ㅇ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 | | | | | |
| ㅇ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 | | | | |

## ○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

[작성참조] 계획대비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구체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을 제시

## □ 단위사업장별 세부집행내역

(20 년 월말 기준,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시·군 | 사업규모 | 환경부 | | | 보조사업자 | | | | | | | 사업진도(공정율) |
|---|---|---|---|---|---|---|---|---|---|---|---|---|---|
| | | | '23년 예산 | 예산현액 | 교부액(A) | 구분 | 전년이월액(B) | 예산현액(A+B-C) | 집행액(D) | | | D/C(%) | |
| | | | | | | | | | 계(D) | 전년이월액 | '23 예산 | | |
| -(단위사업장명) | | | | | | 계 |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 |
| | | | | | | 민자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 |
| | | | | | | 민자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 |
| | | | | | | 민자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단위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사업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23.3월), "실시설계 중(20%)", "공사계약('23.1월)", "공사 중(공정율 60%)"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보조사업자 지출액의 경우 '전체사업비 지출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으로 산정기입

## □ 재정집행점검반 구성현황

| | |
|---|---|
| 점 검 반 장 | |
| 점 검 반 | |
| 외부전문가 | |

[서식 11]

# 사업명 :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 . .

○ ○ ○ ○

| 사업명 : |
|---|

## Ⅰ. 사업관리 항목

### 1 사업관리 코드

| 회계 | 소관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회계명* | *소관명* | *계정명* | *분야명* | *부문명* |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 |
| *회계코드* | *소관코드* | *계정코드* | *분야코드* | *부문코드* | *프로그램코드* | *단위사업코드* | *세부사업코드* |

### 2 관리항목

| 사 업 유 형 | |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 총액계상 예산사업 | R&D 사업 |
|---|---|---|---|---|
| 토목사업 | 건축사업 | | | |
| | | | | |

### 3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수행기간 | | 용역 수행기관 | 용역결과 총사업비 | B/C | AHP | 비고 |
|---|---|---|---|---|---|---|---|
| | 착수 | 완료 | | | | | |
| 기본계획(구상) | | | | | | | |
| 예비타당성조사 | | | | | | | |
| 타당성조사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공사착공 *(총공정률 %)* | | | | | | | *·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률 등* |

### 4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굵은 선 안은 미기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 현행(A) | 변경요구 | 조정(B) | 증(△) 감 (B-A) | % |
|---|---|---|---|---|---|
| 총사업비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지방비 | | | | | |
| 민자 |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 기타 | | | | | |

| 사업기간 | 현 행 | 요 구 | 조 정 |
|---|---|---|---|
| | *(착수)년~(완료)년* | *(착수)년~(완료)년* | *(착수)년~(완료)년* |

## Ⅱ. 사업 세부설명

| 담당자 | 기관(실 · 국)명 | 직 책 | 성 명 | 연락처 |
|---|---|---|---|---|
| | 기관(실 · 국)명 입력 | 실(국)장 | | |
| | | ○○○과장 | | |
| | | 서기관/사무관 | | |

### 1. 사업개요 (현행기준)

####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 2 사업위치

○ 행정구역상 동·리 번지까지 기입(시종점이 있는 경우는 시점~종점)

#### 3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
| *년 ~ 년*<br>*( 년)* | (현행기준) | * *시설용량(톤/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일) 등*<br>*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 층수 및 동수* |

*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붙임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첨부

#### 4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직 · 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 5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연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 배경 등을 기술
- 건축 · 토목 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6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7 국고지원 기준

### ① 지원조건

- 정액지원 조건 여부
-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② 지원형태 및 수준 (현행기준)

| 구 분 | 총사업비 | 국 가 | | | | 지자체 (지방비) | 민간자본 | 원인자 부담금 | 기타 |
|---|---|---|---|---|---|---|---|---|---|
| | | 직접수행 | 보조금 | 융자 | 출연 (출자) | | | | |
| 지원액(백만원) | | | | | | | | | |
| 지 원 비 율 | | | | | | | | | |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 2. 사업추진 현황

### 1 계약체결 현황 (현행기준)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 구분(공정별) | 예산상 공사비 | 최초계약 | | | 최종계약 | | 계약 변경 회수 | 최종 물가 조정일 |
|---|---|---|---|---|---|---|---|---|
| | | 계약일 | 예정가격 | 계약액 | 계약일 | 계약액 | | |
| O 기계약분 계 | | | | | | | | |
| - 기계공사 | | | | | | | | |
| - 토목공사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전기공사 | | | | | | | | |
| O 미계약분 계 | | | | | | | | |
| - 기계공사 | | | | | | | | |
| - 토목공사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전기공사 | | | | | | | | |
| 합 계 | | | | | | | | |

② 조사용역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사후환경영향평가비 | 어업피해영향조사비 | 통합허가 | 기타 |
|---|---|---|---|---|
| 금액 | - | - | - | - |

③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산상 사업비 (A) | 현 계약현황 | | 잔 액 (A-B) | 비고 |
|---|---|---|---|---|---|
| | | 일자 | 계약액(B) | | |
| ○ 보상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 처리결과 표시* |

④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산상 사업비 (A) | 현 계약현황 | | 잔 액 (A-B) | 비고 |
|---|---|---|---|---|---|
| | | 일자 | 계약액(B) | | |
| ○ 설계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 ○ 감리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 ○ 시설부대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 합 계 | | | | | |

##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2022년까지 | | 2023년 | | 2024년 요구 | 2025년 이후 |
|---|---|---|---|---|---|---|---|
| | 현행기준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 |
| **<총사업비>** | | | | | | | |
| **1. 공사비** | | | | | | | |
| **2. 보상비** | | | | | | | |
| **3. 시설부대경비** | | | | | | | |
| ○ 설계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감리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시설부대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재원분담>** | | | | | | | |
| **○ 국고**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지방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차입**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원인자부담금**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민자**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기타**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1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 구분 | 사업 단계 | 총 사업비 | 물량변동 | | | 물가변동 | | | |
|---|---|---|---|---|---|---|---|---|---|
| | | | 내역 | 요구액 | 조정액 | 적용시기 | | 요구액 | 조정액 |
| | | | | | | 기준 시점 | 비교 시점 | | |
| 최초 (yyyy.mm) | | | | | | | | | |
| 1차 조정 (yyyy.mm) | | | 소계 :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2차 조정 (yyyy.mm) | | | 소계 :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N차 조정 (yyyy.mm) | | | 소계 :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 2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 사업비 | 현행 한도액 (A) | 한도 설정액 | 집행액 (B) | 변경 한도액 (A-B) | 세부 반영내역 |
|---|---|---|---|---|---|---|
| 최초 (yyyy.mm) | | | | | | * *한도액 반영시 낙찰가의 10% 또는 잔여공사비의 10% 인지 기입* |
| 1차 (yyyy.mm) | | | | | | ▪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
| 2차 (yyyy.mm) | | | | | | ▪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
| N차 (yyyy.mm) | | | | | | ▪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

* 세부 반영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붙임 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1 사업기간 변경요구

| 현 행 | | 변 경 요 구 | |
|---|---|---|---|
| 착 수 | 완 료 | 착 수 | 완 료 |
| | | | |
| 변경 사유 |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2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현 행 | 변경요구 | 증 감 | | 증감내역 |
|---|---|---|---|---|---|
| | 사업비 (A) | 사업비 (B) | (B-A) | % | |
| <총사업비> | | | | | |
| ○ 공사비 | | | | | *·증감내역* |
| ○ 보상비 | | | | | *·증감내역* |
| ○ 시설부대경비 | | | | | *·증감내역* |

### 3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이전단계 | 변경요구 | 증 감 | | 해당유무 |
|---|---|---|---|---|---|
| | 사업비 (A) | 사업비 (B) | (B-A) | % | |
| <총사업비> | | | | | |
|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 - | | | | |
| ○ 물가상승분 | - | | | | *·산출근거* |
| ○ 지가상승분 | - | | | | *·산출근거* |

##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현행(A) | 요구(B) | | 변경요구 (A+B) | 변경사유 |
|---|---|---|---|---|---|
| | | 순증액 | (%) | | |
| <총사업비> | | | | | |
| 1. 공사비 | *현행* | *변경* | | | |
| ○ 설계변경 유형 1 | *현행* | *변경* | | | · *변경사유* |
| ○ 설계변경 유형 2 | *현행* | *변경* | | | · *변경사유* |
| ○ 설계변경 유형 3 | *현행* | *변경* | | | · *변경사유* |
| * 변경외 공사비 | ***현행*** | ***현행*** | - | - | - |
| 2. 보상비 | *현행* | *변경* | | | |
| ○ 설계변경 유형 1 | *현행* | *변경* | | | · *변경사유* |
| ○ 설계변경 유형 2 | *현행* | *변경* | | | · *변경사유* |
| * 변경외 공사비 | ***현행*** | ***현행*** | - | - | - |
| 3. 시설부대경비 | *현행* | *변경* | | | |
| ○ 설계비 | *현행* | *변경* | | | · *변경사유* |
| ○ 감리비 | *현행* | *변경* | | | · *변경사유* |
| ○ 시설부대비 | *현행* | *변경* | | | · *변경사유* |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 5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 | |
|---|---|---|---|---|
|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 총한도액 (A) | | 기집행액 | 잔여한도액 (B) |
| | | | | |
|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 한도변경 순증액 (C) | 변경후 총한도액 (A+C) |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 · 변경사유 |
| | | | | · 변경사유 |

## 6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7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변경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2022년까지 | | 2023년 | | 2024년 요구 | 2025년 이후 |
|---|---|---|---|---|---|---|---|
| | 변경기준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 |
| <총사업비> | | | | | | | |
| 1. 공사비 | | | | | | | |
| 2. 보상비 | | | | | | | |
| 3. 시설부대경비 | | | | | | | |
| ○ 설계비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감리비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시설부대비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재원분담> | | | | | | | |
| ○ 국고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지방비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차입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원인자부담금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민자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 기타 | *변경*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8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전화번호 |
|---|---|---|---|---|
|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 | | | |
| | | | |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전화번호 |
|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 | | | |
| | | | | |

### 9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사유별로 증액원인의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 기술

##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변경내역, 추진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표로 직접 작성하거나, 설계도면, 조직도 또는 붙임 문서 등을 별도 파일로 작성할 경우는 해당 파일의 제목을 입력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계

## [서식 12]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별지 제3호서식] (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 | | | | |
|---|---|---|---|---|
| 대상기관 | 중앙관서 | | 담당부서 | |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 | | | | |
|---|---|---|---|---|
| 사업개요 | 회계 | | 계정 | |
| | 단위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 | 근거 | [ ] 법정 [ ] 비법정 | 사업성격 | [ ] 자본 [ ] 경상 |
| | 사업목적 | | | |
| | 사업근거 | | | |
| | 사업내용 | | | |
| | 사업기간 | | | |
| | 사업주체 | | | |
| | 지원대상 | | | |
| | 지원기준 | | | |
| | 총사업비 | | | |

| | | | | | | | |
|---|---|---|---|---|---|---|---|
| 소요재원 | ① 기간별 소요재원 | 구분 | Y | Y+1 | Y+2 | Y+3 | Y+4 |
| | | 계(A) | | | | | |
| | | 국비(B) | | | | | |
| | | 지방비 | | | | | |
| | | 재정융자금 | | | | | |
| | | 자부담 기타 | | | | | |
| | | 국고보조율(B/A)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 | | | | |
|---|---|---|---|---|---|---|
| 재정소요 | ② 용도별 재원 | 구분 | | 세부내역 | | |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 | ③ 사후 소요 예상액 | 구분 | | Y | Y+1 | Y+2 |
| | | 계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 | 인건비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 | 시설 운영비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재정영향평가 | ④ 평가항목 | 지방자치단체의 수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 |

| | |
|---|---|
| 평가결과 | |

## 작 성 방 법

□ **소요재원란**

① 기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연도의 재원내역을 모두 작성, 사업기간이 무한한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의 재원내역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재정소요란**

② 용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의 세부내역 사업비를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예) 인건비 ( ), 건축비 ( ), 부지매입비 ( )

③ 사후 소요 예상액: 법령 제·개정에 따라 사후 소요재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억원 단위)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향후 사후 소요재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재정영향평가란**

④ 평가항목: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작성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수: 평가대상 관련 시·도 및 시·군·구의 수 기재, 예) 광역 ( ), 기초 ( )
- 재정부담 규모: 지방재정 부담 총액(시도별 재정부담 총액은 표에 기재) 작성(억원 단위)
- 재정부담 변화율: 지방재정 부담 총액의 사업기간 동안의 변화율, 예) Y년 00억원 → Y+4년 00억원(변화율 0%)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간별 소요재원 규모

| 구분 | Y | | | | | … | | | | | Y+4 |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재정 융자금 | 자부담 기타 | 계 | 국비 | 지방비 | 재정 융자금 | 자부담 기타 | 계 | 국비 | 지방비 | 재정 융자금 | 자부담 기타 |
| 계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1.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연도의 재원내역을 모두 작성합니다.
2. 사업기간이 무한한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의 재원내역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13]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사업명 : ○○○ ○○○○시설 설치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붙임] 요청 자료를 함께 제출

1 사업계획(안)

| | | | | |
|---|---|---|---|---|
| **① 사업명 (유형)** | | ※ 사업유형 : *환경부문(폐기물처리시설)* | | |
| **② 총사업비 (국고)** | | ○○억원<br>(국고:○○ 지방비:○○ 민자:○○ 등) | **③ 사업기간** | ○○년~○○년<br>(○단계 ○년) |
| **④ 추 진 주체** | **주관부처** | 환경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
| | **지자체 · 기관** |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 | |
| **⑤ 사업목적** | | ○ | | |
| **⑥ 성과지표** | | ○ 성과지표명:<br>○ 측정 산식:<br>○ 측정 방법:<br>※ 소관부처의 성과목표와 동 사업 성과목표·지표를 연계하여 기술<br>※ 건설기간의 성과지표와 함께 완공 후 사업 시행 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기술 | | |
| **⑦ 추진경위** | | ○ 추진근거 :<br>- 관계법령 · 상위계획 · 공약 · 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br>○ 사전절차 추진내용 :<br>- 관계기관(각 부처 · 지자체 · 공기업 · 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br>※ 갈등·이견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 | | |
| **⑧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예정부지,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등<br>○ 사업물량 : 연면적, 시설용량, 매립용량 등<br>※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 | |
| **⑨ 사업추진체계** | | ○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br>○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 |
| **⑩ 재원조달방식** | | ○ 지원형태 : 융자 · 보조 · 정액 지원 등<br>○ 재원분담 : 국고, 지방비, 민자, 원인자부담금 등 구분<br>(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근거)이 있을 경우 제시)<br>○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00%, (환경개선특별회계)<br>○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br>*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 | |
| **⑪ 사업운영체계** | | ○ 운영주체 : | | |

| | |
|---|---|
| | ex. (건축사업)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운영<br>○ 운영방안 :<br>※ 운영내용, 운영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br>○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br>※ 완공 후 시설 운영 주체 및 방안, 재원조달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 |
| ⑫ **사전용역** | ○ 조사기관 :<br>○ 조사기간 :<br>○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br>*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br>*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 ⑬ **사업기대효과** | ○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br>○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br>○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 | |
|---|---|
|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br>※현재 폐기물 발생량 및 여건변화, 현재 운영시설의 운영평가 및 진단결과, 노후도 제시<br>※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br>※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
|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 구분 | 동 사업 | ○○사업 (○○부) | ○○사업 (○○부) |
|---|---|---|---|
| 사업목적 | | | |
| 추진방법 | | | |
| 사업규모 | | | |
| 사업위치 | | | |
| 기타 | | | |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3 국고지원의 적합성

| | |
|---|---|
| ① **국고지원 요건** | ○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br>○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br>○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
|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br>○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br>○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시)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 | 공사비 |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예비비 | 계 |
|---|---|---|---|---|---|
| 정부 | | | | | |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계 | | | | | |

○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계 |
|---|---|---|---|---|---|---|---|---|---|---|
| 정부 | | | | | | | | | | |
| 민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사업에 소요되는 용도별 총사업비 구분과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5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 |
|---|---|
| **① 일자리 효과** | ○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
| **② 생활여건 영향** | ○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
| **③ 환경성 평가** | ○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
| **④ 안전성 평가** |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등 |

6 지역균형발전 요인

| | |
|---|---|
| **① 평가 기준** | ○ 수도권 유형인지 비수도권 유형인지 관련 근거와 함께 기재, 명확하게 수도권 유형인 경우 아래 "② 지역낙후도, ③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작성할 필요 없음<br>(지역 구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제3항 참고)<br>○ 사업지 기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이 복합적인 경우 평가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목적, 사업규모·내용(연장, 정거장, 분기점 등), 총사업비(구간별 금액, 재원분담 주체 등)를 수도권·비수도권 유형과 관련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 |
| **② 지역낙후도** | ○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
| **③ 지역경제 활성화** | ○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 |
|---|---|
| **① 민원·분쟁 가능성** | ○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
| **② 지자체 협의** |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
|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br>○ 대응방안 |

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 |
|---|---|
|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

| | 수행기간 | 사업내용 | B/C | AHP | 미통과 사유 |
|---|---|---|---|---|---|
| 1차 | | | | | |
| 2차 | | | | | |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 | |
|---|---|
|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 |

| | 신청시기 | 사업내용 | 미선정 사유 |
|---|---|---|---|
| 1차 | | | |
| 2차 | | | |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9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 | |
|---|---|
|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 대상여부 |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br>- 수익형, 임대형 구분 |

10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 | |
|---|---|
|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 ○ 별표 2 해당 여부 |
|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br>- BTO, BTO 투자위험분담형(위험분담형 또는 손익공유형) 구분 |
|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 ○ 사용료<br>-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br>○ 건설 보조금<br>-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
|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 ○ 사용료<br>-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br>- 사용료의 인상 방법(예: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부문별 평균 공공요금 인상률 등)<br>○ 건설 보조금<br>-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br>○ 위험 분담수준<br>- 총민간사업비(투자비) 중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수준 |

## 1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 | |
|---|---|
|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

## [서식 13의 붙임] 요청자료

**(환경부문 사업)**

**※ 환경부문 사업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음식물류 포함)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포함함.**

| 요청 자료 |
|---|
| 1. 총사업비 기준연도 |
| 2.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세부근거<br>-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br>- 운영비 산정시 적용 근거자료(단가자료, 견적서(약품단가 포함), 법적 근거자료, 인건비 등) |
| 3. 관련 상위계획 및 본 사업관련 용역 수행 보고서, 사전용역 수행자료 별도 요약본 첨부<br>- (필요시) 전산자료 제출 |
| 4. 사업계획 관련 위치도 |
| 5. 원인자부담금 산정 근거 및 개발계획 리스트 |
| 6. 최근 10년간 인구 추정 관련 자료<br>- 성별, 연령별, 주소(읍, 면, 동), 전입지, 전입일, 전출지, 전출일, 사망일, 출산일, 외국인여부 등<br>- 최근 10년간 관광인구(내/외국인 모두) 및 세부 산출 근거 |
| 7. 장래 개발계획 현황<br>- 현재 추진 중인 장래 개발계획 중 현 시점에서의 추진 단계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대한 사업에 대해 준공연도, 개발계획 규모(면적, 인구, 가구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br>- 개발계획에 대한 외부유입률 자료 제출 |
| 8. 용지보상비 산정 관련<br>-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용도지역・이용상황<br>- 본 시설의 점용면적을 시설별(처리시설, 관로 등)로 구분하여 제출 |
| 9. 민원 발생 현황<br>- 최근 5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건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자료 |
| 10. (해당 사업) 최근 운영 현황<br>- 사업계획 관련 운영현황(일별 운영자료)<br>- 최근 10년간 처리 현황 및 처리시설별 반입량, 처리량(하수처리, 매립, 소각, 재활용 등)<br>- 최근 5년간 처리시설별 가동일수 현황 |
| 11. (해당 사업) 대수선비(대보수) 포함 사업의 경우, 준공연도별 공사비를 양식에 맞춰 작성<br>- 공종별 공사비 미확보시 전체 공사비로 제시<br>- 준공 공사비 제시가 어려운 경우, 설계 내역서 제시 |

| 구분(ex) | 준공년도 | 준공 공사비(백만원) | | 준공 낙찰률 |
|---|---|---|---|---|
| 1처리장 | 0000년 | 토목 | | |
| | | 건축 | | |
| | | 기계 | | |
| | | 전기 및 계측 | | |
| | | 조경 | | |
| | | 계 | | |
| 2처리장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서식 14]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서**

# ○○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서

**20 . .**

| |
|---|
| **※ 유의사항** |
| - 작성분량 : A4, 40페이지 이내(간략하게 작성) |
| - 작성요령 : 붙임의 사업계획서양식에 기재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사진 등 포함) 양식을 변경 또는 조정 가능 |
|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 작성 · 제출 |
| - 글씨체 : 본문 휴먼명조 14~15 point, 참고 : 중고딕 13point, 줄간격 170 |

**○ ○ (시 · 군 · 구)**

#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서

| | | | | |
|---|---|---|---|---|
| 1. 대상지역현황 | 주 소 | | | |
| | 마을인구 | 명 | 마을가구수 | 가구 |
| 2. 사업유형 | □ 매립시설형 □ 소각시설형 □ 유기성폐자원처리시설형<br>□ 재활용시설형 □ 혼합형 □ 기타 | | | |

3.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시설 개요

| | | | | |
|---|---|---|---|---|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 대상 폐자원 | 시설명 | 규모(톤/일) | 생산에너지 |
| | | | | |
| | | | | |
| 신재생에너지 시설 | 에너지원 | 시설명 | 규모(kW 등) | 생산에너지 |
| | | | | |
| | | | | |

4.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주민출자 | 기타 |
|---|---|---|---|---|---|
| 계 | | | | | |
| 기본사업 | | | | | |
| 기존 정부 예산사업 | | | | | |

| | | | | |
|---|---|---|---|---|
| 5. 사업기간 | '00.0월 ~ 00.0월 (0년간) | | | |
| 6. 지자체 담당자 | 부 서 | | 내선전화 | ① |
| | | | | ② |
| | | | | ③ |
| | 직 위 | ① 과장 | 휴대폰 | ① |
| | | ② 팀장 | | ② |
| | | ③ 담당 | | ③ |
| | 성 명 | ① | E-mail | ① |
| | | ② | | ② |
| | | ③ | | ③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장 (인)

| | |
|---|---|
| 첨부서류 | 1. 요약 및 본문(양식)<br>2. 주민동의서<br>3. 참고자료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전검토 요청(요약)

## □ 대상지역 개요 및 특성

| | |
|---|---|
| ○ 위치 : | 대상지역 사진 |
| ○ 면적 : | |
| ○ 인구 : | |
| ○ 현황 :<br>○ 특징 : | |

## □ 주요 사업내용 및 주민수익 모델

| 구 분 | 주요 사업 | 소요예산 |
|---|---|---|
| 폐자원<br>에너지화 | [사업개요]<br>○<br>○<br>[주민수익모델]<br>○<br>○ | ○○억원<br>(국비 ○○,<br>지방비○○등) |
| 신・재생<br>에너지 | [사업개요]<br>○<br>○<br>[주민수익모델]<br>○<br>○ | |
| 주민<br>편의시설 | ○<br>○ | |
| 기타<br>관광<br>사업등 | ○ | |

## □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

○

| 사업내용 | 소요예산(백만원) | | | | | 재원확보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금 | 기타 | |
| **계** | | | | | | |
| o | | | | | | |
| o | | | | | | |

## □ 사업추진체계 및 주민참여 방안

○

○

## □ 주민수익 창출 및 수익금 활용

○

○

## □ 사업추진 일정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본문)

## 1. 지역개요 및 특성

| | |
|---|---|
| ○ 위치 : (oo마을) | <대상지역 사진1> |
| ○ 면적[1] : 천㎡ | |
| ○ 환경기초시설현황 [2]<br>- 가축분뇨처리시설 120톤/일 (운영중)<br>- 하수처리시설 10,000㎥/일 (설계 중, '00년 증설)<br>-<br>○ 악취 민원 등 주민 영향<br>- 000시설 인근 주민 00세대 최근 3년간 00회 민원제기<br>- | |
| ○ 인구[3] : ○○명 (○○가구) | |
| ○ 현황 : 대상 부지, 시설의 현재 현황을 기재<br>○ 특성[4]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대상부지, 계획사업의 특성을 기재<br>☞ 인근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기재 | <대상지역 사진2> |

1) 면적 : 대상시설을 포함한 마을면적을 기재
2) 환경기초시설현황 : 사업대상지역의 환경기초시설(기피, 혐오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기재
3) 인구 : 신청일 현재 대상마을의 인구와 가구수를 기재
4) 특성 : 대상시설・마을사진 등 추가 세부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

## 2. 사업개요 총괄 : ○○형

※ 붙임1의 사업추진 유형 예시에 따라 주요유형을 기재
(매립시설형, 소각시설형,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형, 재활용시설형, 혼합형 등)

| 구 분 | 사업내용 | 소요예산(억원)<br>(국고/지방비/민자/기타) | 재원확보 방안[1] |
|---|---|---|---|
| 폐자원<br>에너지화 | 가축분뇨·음식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br>(100톤/일) | 200<br>(국고30, 지방비70,<br>민자80, 주민부담20) | 통합바이오가스화<br>사업예산<br>(환경부) 활용 |
| 신·재생<br>에너지[2] | 태양광 발전시설(340kW) | 10<br>(융자금9, 주민부담1) | 산업부 융자금<br>활용 |
| 주민편익<br>시설 | 마을회관 개량 | 2<br>(국고1, 지방비1) | 기본사업비 |
| 문화관광 | 산책로 조성 및 조경공사 | 7 | |

1) 재원 확보방안은 기본사업비[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와 기존 정부 예산사업비, 기타(융자금, 주민기금, 민간투자 등)로 구분 기재
 - 기존 정부 예산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명과 지원사업 예산명을 간략히 기재
2)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을 우선 활용

## 3. 사업별 세부내역

### 가. 폐자원에너지화

※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에 대하여 작성(단위 세부사업별 또는 통합)하되, 세부자료의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

#### □ 사업 필요성(목적)

※ 에너지화 대상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 에너지화 필요성, 생산 에너지(전기, 가스, 열, 스팀 등)의 활용 가능성, 사업지역 주변 여건 등을 토대로 단위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을 기재

#### □ 사업내용

※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부지면적/ 시설규모/ 주요시설/ 처리공정, 시설설치 및 운영주체 등)을 기재

※ 대상 폐자원 확보방안(수거·운반포함), 에너지화 방안, 에너지(전기, 가스, 열, 스팀 등) 활용 및 부산물 처리방안 등을 기재

※ 에너지화의 사업규모(시설규모 등) 산정, 산출 근거를 기재

- 대상 폐자원 발생·처리실태, 안정적인 폐자원 확보 가능성, 에너지 생산 가능성, 생산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등 고려하여 규모 선정

※ 에너지화시설 설치 및 설치 후 운영계획(운영주체, 운영조직 등)을 기재

###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단위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

※ 재원분담방안(국고, 지방비 등)과 재원 확보방안(기본사업비, 기존 정부예산 사업비, 기타)을 세부적으로 기재("사업개요"의 비고 참조)

※ 소요예산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기재

### □ 사업효과

※ 단위사업의 시설설치비용, 운영비용, 생산 에너지 판매비용 등 경제성을 분석하여 기재

※ 주민 직·간접 이익 창출, 일자리 창출 등 단위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재

## 나. 신 · 재생에너지

□

## 다. 주민편의시설

□

## 라. 문화·관광시설 등

□

※ "나. 신·재생에너지"부터 "라. 문화·관광시설 등" 항목은 "가. 폐자원에너지화" 작성 요령과 같이 사업 필요성(목적)/ 사업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사업효과 순으로 작성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또는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 체계 및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 체계(주체, 역할 등)를 기재

- 사업시행주체는 지자체가 되도록 계획하되 지자체 이외에 주민, 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을 기재

* 주민 수익창출 사업에 주민,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 협동조합 등을 구성,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강구

※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협의체" 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위원회" 구성(안) 등을 고려하여 향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재

- 지자체는 기술지원, 자문 등을 위하여 지자체 담당, 지역 주민, 지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향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기재

## 5. 주민 수익창출 및 수익금 활용방안

※ 주민수익창출 사업에 주민참여시 연간 예상되는 주민이익을 산출하여 기재

* 직접 이익 :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 출자(주주로 참여)하여 직접이익 창출 시 이익

* 간접 이익 : 사업 시행에 따라 주민이 얻는 간접적 혜택

※ 발생 수익금의 참여 주체별 배분방안과 활용방안을 기재

## 6. 사업 추진일정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일정을 표로 제시하되 단위사업별 추진일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시운전, 준공 등)

## 7.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총괄적으로 기재

[참고자료]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념과의 부합성, 대상사업지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 참여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

**1. 사업대상지역 마을 현황**

o 사업대상지역 위치도

※ 1/5,000~1/25,000 축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

o 사업대상지역의 마을 현황 및 특징

※ 대상마을의 지리적 특성, 인구, 마을공동체 현황, 농산물·축산업 현황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연관된 특이사항 등을 기재

**2. 기피·혐오시설, 환경기초시설 현황**

※ 기피·혐오시설 현황과 이로 인한 악취 등 주민 영향, 민원 현황을 기재

※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중인 경우 환경기초시설 운영·추진현황을 기재

**3. 사업대상부지 현황**

※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사업대상 부지 현황, 부지확보의 용이성, 인허가 등 제도적 제약 여부 기재

**4. 지역주민 참여 및 호응도**

o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기금 조성여부

※ 협의체명, 구성내역, 구성일시, 역할 및 임무 등 기재

※ 주민기금 조성액,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투자여부 등 기재

o 주민 반대민원 발생 가능성, 주민 참여·호응도

**5. 문화·관광시설 계획 시 주변 관광자원 현황 및 연계 가능성**

**6.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소 방안**

**7. 기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 설명자료**

※ 폐자원발생 및 처리실태, 폐자원 확보방안, 에너지화 방안, 에너지(전기, 가스, 열, 스팀 등) 활용 및 부산물 처리방안 등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기재

# [사전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선택항목 | | |
|---|---|---|---|
| **1 기초자료 검토** | | | |
| ① 폐자원에너지화 시설<br>(복수 선택 가능) | **시설종류** | **시설용량** | **운영여부** (또는 진행단계) |
| | □ 소각시설 | (00톤/일) |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택1) |
| | □ 매립시설 | (00,000㎥) |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택1) |
| | □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 (00톤/일) |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택1) |
| | □ 재활용시설 | (00톤/일) |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택1) |
| ② 시설입지에 따른 민원발생 유무 | □ 발생 (연간 회) | | □ 미발생 |
| ③ (폐촉법) 주민편익시설 설치 대상 여부 | □ 대상 | | □ 미대상 |
| ④ 대상마을 가구수 / 주민수 | □ 세대수 | | □ 주민수 |
| ⑤ 주민 연령대 | □ 50대 이하 : 명<br>□ 60 ~ 70대 : 명 | | □ 50 ~ 60대 : 명<br>□ 70대 이상 : 명 |
| ⑥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성 | □ 높음 | □ 중간 | □ 낮음 |
| ⑦ 기존 지자체 계획과 부합 여부 | □ 부합 | | □ 부합하지 않음 |
| **2 사업추진의 용이성 검토** | | | |
| ① 시설설치 예정 부지 소유자 | □ 지자체 | | □ 개인 |
| ② 재원확보 방식 | □ 재정 | | □ 민간자본 |
| ③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인지도 | □ 대다수 인지 | □ 소수 인지 | □ 미인지 |
| ④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동의여부 | □ 대다수 동의 | □ 소수 동의 | □ 미동의 |
| ⑤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 | □ 구성 완료 | | □ 미 구성<br>(구성 예정시기 기재) |
| ⑥ 법적·제도적 제약 여부 검토 | □ 검토 | | □ 검토하지 않음 |

| 체크리스트 | 선택항목 |
|---|---|
| **3 지역주민의 사업선호도 조사** | |
| ① 주민 사업설명회 실시 여부 | □ 3회 이상 □ 1~2회 □ 미실시 |
| ② 주민 사업선호도 조사 | □ 조사 □ 조사하지 않음 |
| ③ 주민 의견수렴 여부 | □ 의견수렴 □ 의견 수렴하지 않음 |
| **4 운영·관리방안 검토** | |
| ① 시설 운영계획 검토 여부 |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
| ② 시설 운영 주체 | □ 주민협의체 □ 마을기업<br>□ 협동조합 □ 특수법인<br>□ 민간업체 □ 기타 |
| ③ 주민 참여방안 |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
| ④ 사업의 수익성 | □ 높음 □ 중간 □ 낮음 |
| ⑤ 수익 배분방안 |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
| ⑥ 사업의 지속성 | □ 높음 □ 중간 □ 낮음 |
| ⑦ 지자체 지원 계획<br>(복수 선택 가능) | □ 관련 조례 제정 □ 운영비 지원<br>□ 민간자본 투자 유도 □ 기술 지원<br>□ 운영 참여 □ 기타 (행정력 지원) |
| ⑧ 교육·홍보 방안 검토 여부 | □ 검토 □ 검토하지 않음 |

# 붙 임

붙임 1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설치 등 관련 규정목록

붙임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붙임 3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

붙임 4 : 설치 · 운영 실태 평가시스템 자료제출(입력)

붙임 5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붙임 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부절차

붙임 7 : 최적화추진단 구성 · 운영체계

붙임 8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붙임 9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이자산정 방법

붙임 10 : 지방재정영향평가

붙임 11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시설유형 및 운영방법

붙임 12 : (업무처리지침)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설치 등 관련 규정목록

| 구분 | 관 련 규 정 |
|---|---|
| 공통 | ·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18.9.)<br>·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실무지침(환경부, 2016.6.)<br>·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환경부, 2016.6.)<br>·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환경부, 2015.9.)<br>·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br>·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br>·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br>·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br>·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br>·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br>·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br>·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br>·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 고시) |
| 소각시설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12.10.)<br>·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설용량 변경 지침(환경부, 2008.12.)<br>·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하수슬러지 혼합소각 지침(환경부, 2007.4.)<br>·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환경부, 2018.3.) |
| 매립시설 | ·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13.4.)<br>·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br>·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4.)<br>·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br>·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고시(환경부 고시)<br>·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br>·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br>·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 고시)<br>·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환경부 고시)<br>·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8.)<br>· 폐기물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 고시) |

| 구분 | 관 련 규 정 |
|---|---|
| 음식물류 |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02.3.) |
| 유기성바이오 가스화시설 | ·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환경부, 2015.12.)<br>·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환경부, 2015.12.) |
| 친환경 에너지타운 | · 친환경에너지타운 업무매뉴얼(환경부, 2019.8.) |
| 기타 | ·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환경부, 2009.12.)<br>·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령)<br>·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 고시) |

※ 그 외 관련 규정도 지자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시설에 따라 적용

## 붙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2022.12. 물가반영)

| 시설 | 세부시설 | 시설규모 | 표준단가 | 비 고 |
|---|---|---|---|---|
| 소각 시설 | 신규 | 30톤/일 이하 | 6.73억원/톤 | - 기계적 처리 + 소각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br>- 30톤/일 초과시설에는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비 포함, 30톤/일 이하시설에서 소각여열회수시설 필요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br>- 도서지역은 장비운반비, 인건비 등할증비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br>- 타지자체로 운반 처리하는 지자체는 압축시설 설치비용(10톤 기준 5천만원, 최대 2억, 국비기준) 추가지원<br>- 2계열(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도 총용량을 합산하여 적용 |
| | |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 6.66억원/톤 | |
| | |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 5.82억원/톤 | |
| | |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 5.48억원/톤 | |
| | | 200톤/일 초과 | 4.98억원/톤 | |
| | 대보수 | 30톤/일 이하 | 4.79억원/톤 | - 30톤/일 초과시설에는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비 포함, 30톤/일 이하시설에서 소각여열회수시설 필요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 | |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 4.95억원/톤 | |
| | |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 4.25억원/톤 | |
| | |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 3.89억원/톤 | |
| | | 200톤/일 초과 | 3.63억원/톤 | |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 음식물 | 150톤/일 이하 | 4.59억원/톤 | - 폐수처리(생물학적 처리)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수미처리시 실시설계후 재원협의 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 | |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 4.24억원/톤 | |
| | | 400톤/일 초과 | 3.90억원/톤 | |
| | 음폐수 | 150톤/일 이하 | 2.89억원/톤 | |
| | |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 2.56억원/톤 | |
| | | 400톤/일 초과 | 2.39억원/톤 | |
| | 통합 음식물 | 150톤/일 이하 | 4.03억원/톤 | |
| | |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 3.72억원/톤 | |
| | | 400톤/일 초과 | 3.41억원/톤 | |
| | 통합 음폐수 | 150톤/일 이하 | 2.63억원/톤 | |
| | |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 2.33억원/톤 | |
| | | 400톤/일 초과 | 2.17억원/톤 | |

|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해양폐기물선별시설 (억원/톤) | 시 설 규 모 | 자동선별 | 기계선별 | 수동선별 | |
|---|---|---|---|---|---|
| | 10톤/일 미만 | - | 6.46 | 4.61 | - 자동선별시설 : 기계적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추가한 시설<br>- 기계선별시설 : 수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추가한 시설<br>- 수동선별시설 :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시설(이송설비, 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은 포함) |
| | 10톤/일 이상~20톤/일 미만 | 5.01 | 4.53 | - | |
| | 20톤/일 이상~30톤/일 미만 | 3.89 | 3.57 | - | |
| | 30톤/일 이상~40톤/일 미만 | 3.73 | 2.91 | - | |
| | 40톤/일 이상~50톤/일 미만 | 3.57 | 2.58 | - | |
| | 50톤/일 이상~60톤/일 미만 | 3.48 | 2.27 | - | |
| | 60톤/일 이상~70톤/일 미만 | 3.40 | 2.11 | - | |
| | 70톤/일 이상~80톤/일 미만 | 3.34 | 1.94 | - | |
| | 80톤/일 이상~90톤/일 미만 | 3.31 | 1.85 | - | |
| | 90톤/일 이상 | 3.27 | 1.77 | - | |

| | | |
|---|---|---|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 2.75억원/톤 | - 보관 및 기계적 또는 수선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 공공열분해시설 | 4.16억원/톤 | |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 1.36억원/톤 | |

| 시설 | 세부시설 | 시설규모 | | 표준단가 | 비 고 |
|---|---|---|---|---|---|
| 매립 시설 | 신규 | 100천$m^3$ 이하 | | 153.19천원/$m^3$ | -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토공사 중 발파암 공사량(㎥)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는 공사비를 추가로 할증할 수 있음 |
| | | 100천$m^3$ 초과~ 150천$m^3$ 이하 | | 137.89천원/$m^3$ | |
| | | 150천$m^3$ 초과~ 200천$m^3$ 이하 | | 110.30천원/$m^3$ | |
| | | 200천$m^3$ 초과~ 250천$m^3$ 이하 | | 94.98천원/$m^3$ | |
| | | 250천$m^3$ 초과~ 300천$m^3$ 이하 | | 85.80천원/$m^3$ | |
| | | 300천$m^3$ 초과~ 350천$m^3$ 이하 | | 79.66천원/$m^3$ | |
| | | 350천$m^3$ 초과~ 400천$m^3$ 이하 | | 73.52천원/$m^3$ | |
| | | 400천$m^3$ 초과~ 500천$m^3$ 이하 | | 68.92천원/$m^3$ | |
| | | 500천$m^3$ 초과~ 600천$m^3$ 이하 | | 64.34천원/$m^3$ | |
| | | 600천$m^3$ 초과~ 800천$m^3$ 이하 | | 61.28천원/$m^3$ | |
| | | 800천$m^3$ 초과~ 1,000천$m^3$ 이하 | | 53.62천원/$m^3$ | |
| | | 1,000천$m^3$ 초과~ 2,000천$m^3$ 이하 | | 45.96천원/$m^3$ | |
| | | 2,000천$m^3$ 초과 | | 38.30천원/$m^3$ | |
| | 증설 | 수평 증설 | | 신규조성 사업비 적용 | - 수평·수직증설 시에도 기존 매립지 기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등)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산정 |
| | | 수직 증설(계단식 확장) | | 21.01천원/$m^3$ | |
| | 매립지 정비 | 안정화 | 차수공 적용 | 699.41천원/$m^3$ | - 차수시설의 설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차수공 적용'선정 |
| | | | 차수공 제외 | 267.21천원/$m^3$ | |
| | | 굴착, 선별 후 이적 | 10천$m^3$미만 | 88.11천원/$m^3$ | |
| | | | 10천㎥~ 100천$m^3$미만 | 73.22천원/$m^3$ | |
| | | | 100천㎥~ 400천$m^3$미만 | 66.43천원/$m^3$ | |
| | | | 400천$m^3$이상 | 62.36천원/$m^3$ | |
| | 순환형 매립시설 | 정비 | 400천$m^3$미만 | 65.91천원/$m^3$ | - 정비 및 조성비용은 실제 공사하는 면적만 지원 |
| | | | 400천$m^3$이상 | 61.88천원/$m^3$ | |
| | | 조성 | 모든 시설 | 40.36천원/$m^3$ | |
|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 발전시설 (가스터빈) | 0.3MWh 이하 | | 50.33억원/MWh | |
| | | 0.3MWh 초과 ~ 0.7MWh 이하 | | 43.54억원/MWh | |
| | | 0.7MWh 초과 ~ 1.0MWh 이하 | | 38.08억원/MWh | |
| | | 1.0MWh 초과 | | 34.0억원/MWh | |
|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 소각시설 (회분식) | 3.0톤/일 이하 | | 11.52억원/톤 |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
| | |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 | 9.53억원/톤 | |
| | 차단형 매립시설 | 0.2천$m^3$ 이하 | | 2,186.33천원/$m^3$ | - 지붕 설치시 매립면적을 기준으로 256천원/$m^2$ 추가적용<br>-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
| | | 0.2천$m^3$ 초과 ~ 0.6천$m^3$ 이하 | | 1,188.92천원/$m^3$ | |
| | | 0.6천$m^3$ 초과 ~ 2.0천$m^3$ 이하 | | 519.39천원/$m^3$ | |
| | | 2.0천$m^3$ 초과 ~ 5.0천$m^3$ 이하 | | 456.58천원/$m^3$ | |
| | 관리형 매립시설 | 2천$m^3$ 이하 | | 698.64천원/$m^3$ |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
| | | 2천$m^3$ 초과 ~ 10천$m^3$ 이하 | | 580.67천원/$m^3$ | |

주1)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하위 구간의 최대사업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해당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 적용

주2) 지하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표준단가의 1.4배 이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하여 협의하여야 함

주3) 설계시 검토된 해당 공종 및 공정 공사비 내에서 공법선정 필요

주4)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적환시설의 경우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고지원 협의가능

주5) 각 처리시설(소각시설 외) 대보수 표준단가는 시설규모별 신설표준단가의 70%적용

##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아래의 시설규모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여건(시설의 위치, 지반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의 가능성 있음.

| 구 분 | 산 정 방 법 |
|---|---|
| 계획목표 설정단계 | ■ **STEP 1 : 처리구역 및 대상폐기물 설정**<br>●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처리대상 폐기물 설정<br>●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외 반입대상 폐기물 반영<br>- 재활용 잔재물(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및 찌꺼기, 대형폐기물, 수해폐기물, 하천 하구쓰레기, 하수찌꺼기 건조물 등<br>※ 군부대 발생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포함여부 검토<br>↓<br>■ **STEP 2 : 계획 목표연도 설정**(시설완공연도 기준)<br>● 기존시설의 노후도,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 목표연도 설정 |
| 발생량 예측단계 | ■ **STEP 3 : 목표연도 인구수 예측**<br>● 해당지역의 목표연도 계획인구 예측<br>(국가개발계획 및 도시개발에 의한 인구증가 등 고려)<br>↓<br>■ **STEP 4 : 목표연도 폐기물발생량 예측**<br>● 목표연도 계획인구, 최근 10년간 폐기물발생량을 고려한 폐기물원단위, 감량목표율 등을 근거로 폐기물 발생량 예측 |
| 시설규모 산정단계 | ■ **STEP 5 :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산정**<br>● 계획시설의 폐기물발생량(예측), 가동일수, 변동계수, 기존시설 등을 반영하여 용량 산정 |

주1) 위의 단계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산정 이후 재원협의, 기존처리시설,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처리용량을 가감 조정함

주2) 반입대상 폐기물은 지자체 처리여건에 따라 반입폐기물량, 종류를 결정하여야 함

주3) 재활용 잔재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3)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선별·파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시설용량에 포함하여 산정

주4) 변동계수는 월별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및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 시설규모 산정결과(예시)

| 지자체명 | ○○도 ○○시 | 시설종류 | ○○시설 |
|---|---|---|---|
| 처리대상 폐기물 |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 | 시설규모 | 230 |

## □ 시설규모 산정 기초자료(예시)

| 구분 | | | 단위 | 용량 | 비고 |
|---|---|---|---|---|---|
| 목표연도 계획인구 | | A | 인 | 100,000 | 시설준공연도 기준 개발계획(고시) 반영가능 |
| 예측발생원단위 | | B | kg/인·일 | 0.35 | 과거10년 종량봉투발생량 고려하여 예측 |
| 대상 폐기물 | 종량제봉투 | C | 톤/일 | 350 | A×B |
| | 종량제봉투 (변동계수 적용) | C′ | 톤/일 | 392 | C×K |
| | 재활용잔재물 | D | 톤/일 | 10 |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
| | 음식물협잡물 | E | 톤/일 | 5 |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
| | 대형폐기물 | F | 톤/일 | 5 |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
| | 수해폐기물 | G | 톤/일 | 5 |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
| | 하천하구쓰레기 | H | 톤/일 | 5 | 운영자료 등 발생량 근거 제시 |
| | 하수찌꺼기건조물 | I | 톤/일 | 8 | 건조설비는 생활하수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예산 신청 |
| | 소계 | O | 톤/일 | 430 | C′+D+E+F+G+H+I |
| 가동일수 | | J | 일 | 300 |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300일 |
| 변동계수 | | K | - | 1.12 |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변동계수 산정, 1.3미만 적용 |
| 발생량 산정 | | L | 톤/일 | 523 | O×365÷J |
| 기존 시설 | 소각시설 1 | M | 톤/일 | 150 | 인허가 서류 제시 |
| | 소각시설 2 | N | 톤/일 | 150 | 인허가 서류 제시 |
| | 소계 | O′ | 톤/일 | 300 | M+N |
| 시설규모 산정 | | P | 톤/일 | 223 | L-O′ |
| 시설규모 적용 | | Q | 톤/일 | 230 | - |

# 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시스템 자료제출(입력)

**1.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1-208호)

## 2. 시스템 접속

1 폐기물처리시설운영평가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및 회원가입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가. 회원가입 클릭

나. 약관 동의 내역에 동의

다. 필수입력사항 및 담당 사용자시설정보 입력

**2 회원 종류**

가. 시군구 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군구 담당자(기초지자체).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나. 시도 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도담당자(광역지자체).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다. 환경청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환경청예산담당자.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라. 환경부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환경부예산담당자.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마. 시설업무담당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업무담당자(지자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바. 시설센터관리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센터관리자(위탁업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사. 시설직영관리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직영관리자(직영업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 3 시설 및 지자체 회원 ID 발급 기준

- 회원 ID 발급 기준은 가입 회원별 하나의 ID 발급을 기준으로 함
- ID: 6~16자 영문+숫자 조합
- PW: 6~16자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 4 가입승인신청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시설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가입유형 등 필수입력사항 및 담당 사용자시설정보를 등록하여 회원가입 승인신청

-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승인신청 정보 작성

나. 담당자 승인 처리 후 로그인하여 시스템 접속

다. 최초 접속 시 브라우저에 프로그램 설치

## 3. 시스템 사용

### 1 시스템 메뉴 구성

가. 공지사항

나. 설문조사

다. 평가시설 기본정보

라. 운영실적 입력

마. 평가결과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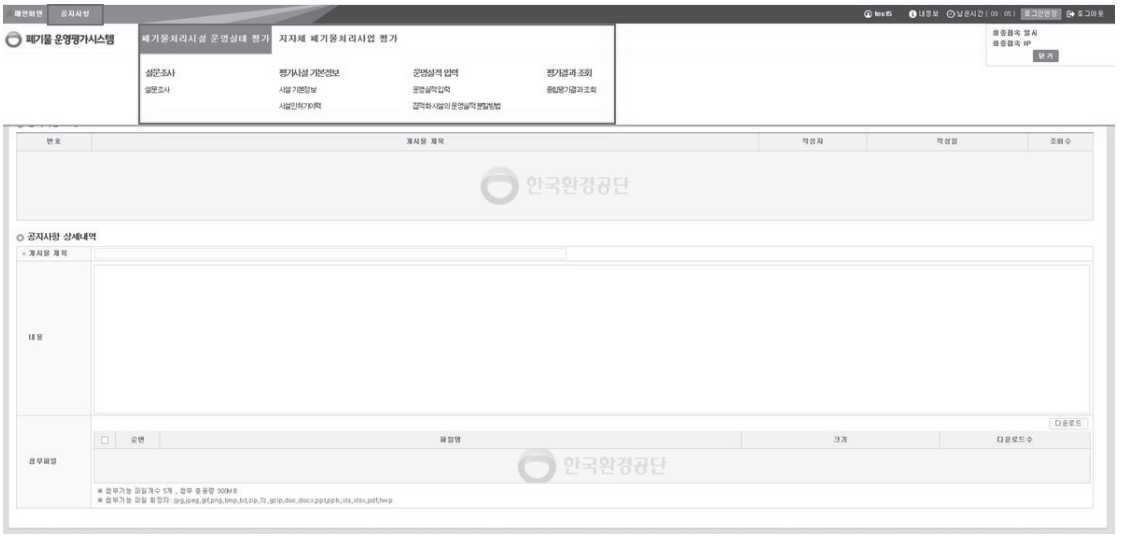

## 2 공지사항

가. ① 세부메뉴 [공지사항] 클릭하여 확인

나. ② 공지사항 게시물 확인

- [환경부고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결과보고서
- 평가계획
- 평가시스템 입력방법
- 강수량(매립시설 입력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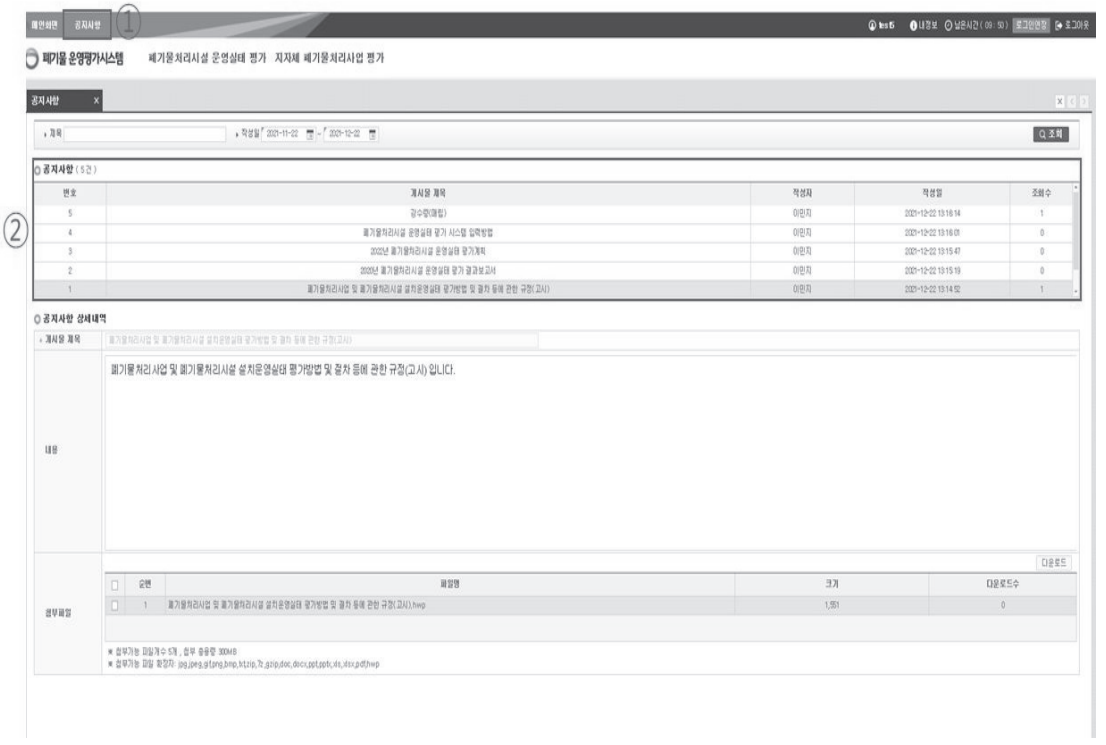

### 3 시설 기본정보

가. ① 세부 메뉴 [시설 기본정보] 클릭

나. ② 시설구분 해당시설 선택

다. ③ 담당 운영기관 선택

라. ④ [조회] 버튼 클릭

마. ⑤ 기본정보내역(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소 등) 변동사항 수정 작성

바. ⑥ [저장] 버튼 클릭하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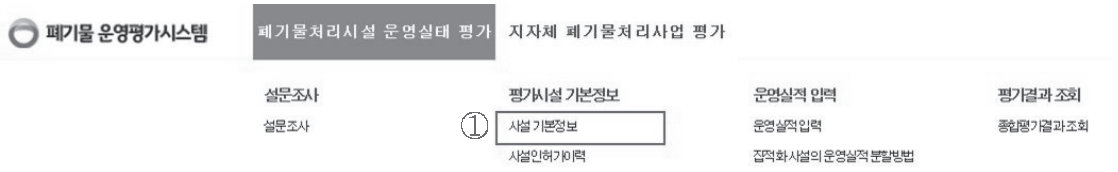

### 4 시설 인허가 이력

가. ① 세부 메뉴 [시설 인허가 이력] 클릭

나. ② 시설구분 해당시설 선택

다. ③ 담당 운영기관 선택

라. ④ [조회] 버튼 클릭

마. ⑤ 평가시설 인허가 정보 미입력 항목, 변동사항 등 작성

바. ⑥ [저장] 버튼 클릭하여 완료

### 5 - 1 운영실적 입력 ( 1번 방법 )

가. ① 세부 메뉴 [운영실적 입력] 클릭

나. ② 해당시설구분 및 운영기관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다. ③ [신규] 버튼 클릭하여 시설 운영실적 정보 활성화

라. ④ [환경성], [기술성], [기술성(월별반입량)], [경제성], [공통평가항목] 탭 각각 클릭 후 2021년도 실적 입력 값에 작성

마. ⑤ 입력 값에 대한 각각의 증빙자료 스캔파일 첨부

바. ⑥ [저장] 버튼 클릭

사. ⑦ [제출] 버튼 클릭하여 완료

※ 유의사항

- 입력 중간 [저장] 버튼 클릭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 저장
  (10분 이상 상태 변경 없을 시 시스템 자동 종료)
- 제출 이후에는 입력 값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단에 제출상태 변경요청(032-590-4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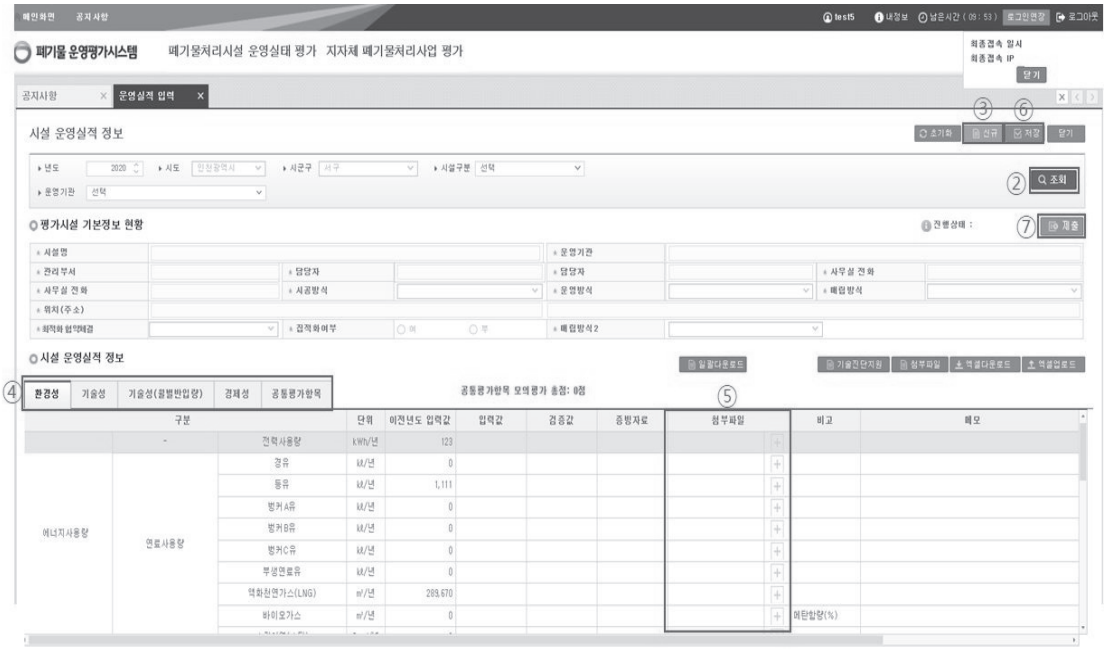

## 5 - 2 운영실적 입력 ( 2번 방법 )

가. ① 세부 메뉴 [운영실적 입력] 클릭
나. ② 해당시설구분 및 운영기관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다. ③ [신규] 버튼 클릭하여 시설 운영실적 정보 활성화
라. ④ 엑셀다운로드 후 엑셀시트작성 후 엑셀 업로드 (다음 장에 자세한 설명)
마. ⑤ 입력 값에 대한 증빙자료 스캔파일 첨부
바. ⑥ [저장] 버튼 클릭
사. ⑦ [제출] 버튼 클릭하여 완료

※ 유의사항
- 제출 이후에는 입력 값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단에 제출상태 변경요청(032-590-4613)
- 파일첨부는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 즉, 운영실적 제출 후에도 파일 첨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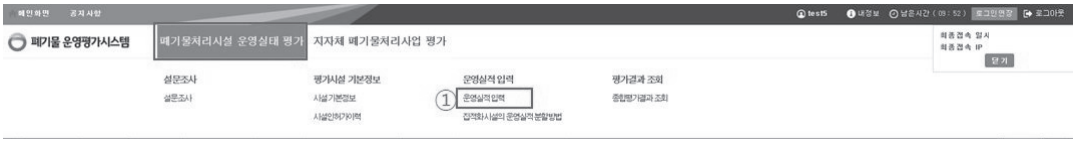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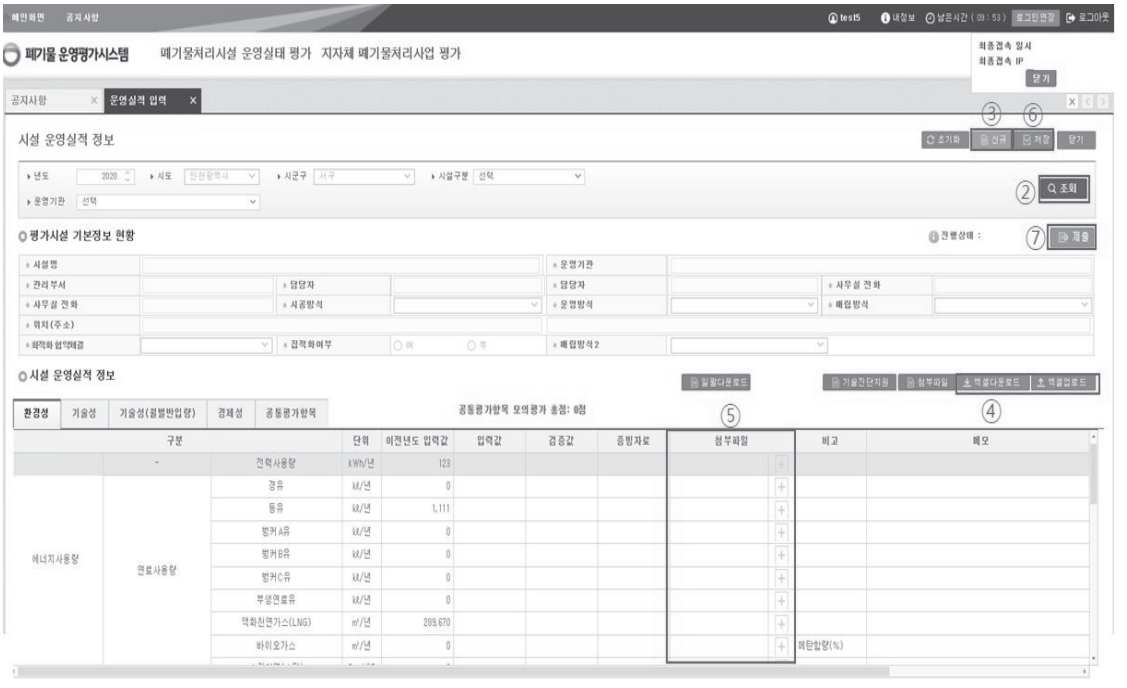

## 5 - 2 운영실적 입력 ( 2번 방법 자세한 설명 )

가. ① 엑셀다운로드를 하면 평가시스템상의 시트와 동일한 엑셀시트가 생성

나. ② 입력 값에 실적 입력

다. ③ 환경성, 기술성, 기술성(월별반입량), 경제성, 공통평가항목에 차례대로 입력

라. 엑셀시트 작성 후 엑셀 업로드(시스템)

※ 유의사항

- 1번 방법에 비해 시스템 자동종료로 인한 입력 데이터 삭제 방지
- 경우에 따라 서식 오류로 인해 엑셀 업로드가 불가능할 시에 공단에 요청(032-590-4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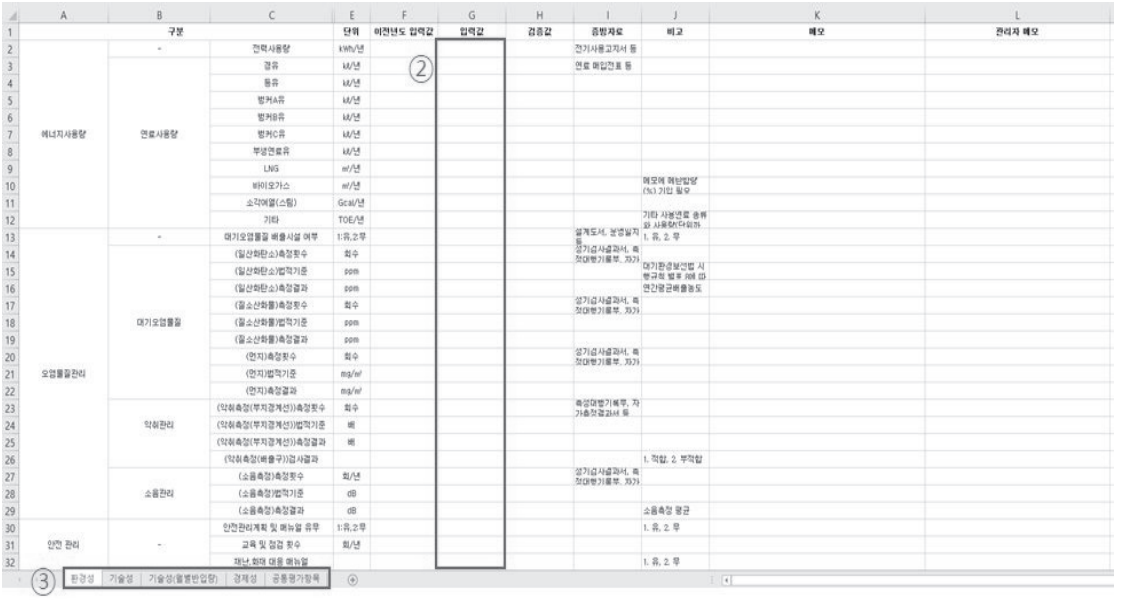

| | A | B | C | E | F | G | H | I | J | K | L |
|---|---|---|---|---|---|---|---|---|---|---|---|
| 1 | 구분 | | | 단위 | 이전년도 입력값 | 입력값 | 검증값 | 증빙자료 | 비고 | 해외 | 관리자 해외 |
| 2 | 에너지사용량 | - | 전력사용량 | kWh/년 | | | | 전기사용고지서 등 | | | |
| 3 | | 연료사용량 | 경유 | kl/년 | ② | | | 연료 매입전표 등 | | | |
| 4 | | | 등유 | kl/년 | | | | | | | |
| 5 | | | 벙커A유 | kl/년 | | | | | | | |
| 6 | | | 벙커B유 | kl/년 | | | | | | | |
| 7 | | | 벙커C유 | kl/년 | | | | | | | |
| 8 | | | 부생연료유 | kl/년 | | | | | | | |
| 9 | | | LNG | ㎥/년 | | | | | | | |
| 10 | | | 바이오가스 | ㎥/년 | | | | | 해외에 해당업량 (%) 기입 필수 | | |
| 11 | | | 소각에열(스팀) | Gcal/년 | | | | | | | |
| 12 | | | 기타 | TOE/년 | | | | | 기타 사용연료 종류 및 사용량(자유기재) | | |
| 13 | 오염물질관리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여부 | 1:유,2:무 | | | | 설계도서, 보연설치 등 | 1. 유, 2. 무 | | |
| 14 | | 대기오염물질 | (질산화탄소)측정횟수 | 회수 | | | | 성기업사업과서, 측정대행기록부, 자가 | | | |
| 15 | | | (질산화탄소)법적기준 | ppm | | | | | 대기환경보연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 | | |
| 16 | | | (질산화탄소)측정결과 | ppm | | | | | 연간평균배출농도 | | |
| 17 | | | (질소산화물)측정횟수 | 회수 | | | | 성기업사업과서, 측정대행기록부, 자가 | | | |
| 18 | | | (질소산화물)법적기준 | ppm | | | | | | | |
| 19 | | | (질소산화물)측정결과 | ppm | | | | | | | |
| 20 | | | (먼지)측정횟수 | 회수 | | | | 성기업사업과서, 측정대행기록부, 자가 | | | |
| 21 | | | (먼지)법적기준 | mg/㎥ | | | | | | | |
| 22 | | | (먼지)측정결과 | mg/㎥ | | | | | | | |
| 23 | | 악취관리 | (악취측정(부지경계선))측정횟수 | 회수 | | | | 측정대행기록부, 자가측정결과서 등 | | | |
| 24 | | | (악취측정(부지경계선))법적기준 | 배 | | | | | | | |
| 25 | | | (악취측정(부지경계선))측정결과 | 배 | | | | | | | |
| 26 | | | (악취측정(배출구))검사결과 | | | | | | 1. 적합, 2. 부적합 | | |
| 27 | | 소음관리 | (소음측정)측정횟수 | 회/년 | | | | 성기업사업과서, 측정대행기록부, 자가 | | | |
| 28 | | | (소음측정)법적기준 | dB | | | | | | | |
| 29 | | | (소음측정)측정결과 | dB | | | | | 소음측정 평균 | | |
| 30 | 안전 관리 | - |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유무 | 1:유,2:무 | | | | | 1. 유, 2. 무 | | |
| 31 | | | 교육 및 점검 횟수 | 회/년 | | | | | | | |
| 32 | | | 재난, 화재 대응 매뉴얼 | | | | | | 1. 유, 2. 무 | | |

③ 환경성 | 기술성 | 기술성(월별반입량) | 경제성 | 공통평가항목

### 6 집적화 시설의 운영실적 분할방법

가. 집적화 시설에서 전기비, 연료비 등 통합으로 관리하여 분계가 안 되는 경우

나. ① [집적화 시설의 운영실적 분할방법] 클릭

다. ② 집적화 시설 각각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 기재

라. ③ 통합 관리되는 운영실적 탭 클릭하여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마. 오른쪽 시설 별 운영실적 분할 결과 확인 후 [운영실적 입력] 항목에 입력

## 7 평가결과 조회

가. ① 세부 메뉴 [평가결과조회] 클릭

나. ② 입력자료 기준 년도 선택

다. ③ 시설구분 해당시설 선택

라. ④ 담당 운영기관 선택

마. ⑤ [조회] 버튼 클릭하여 확인

바. ⑥ [보고서 출력] 버튼 클릭하여 한글파일 등으로 출력 가능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결과 알림' 별도 공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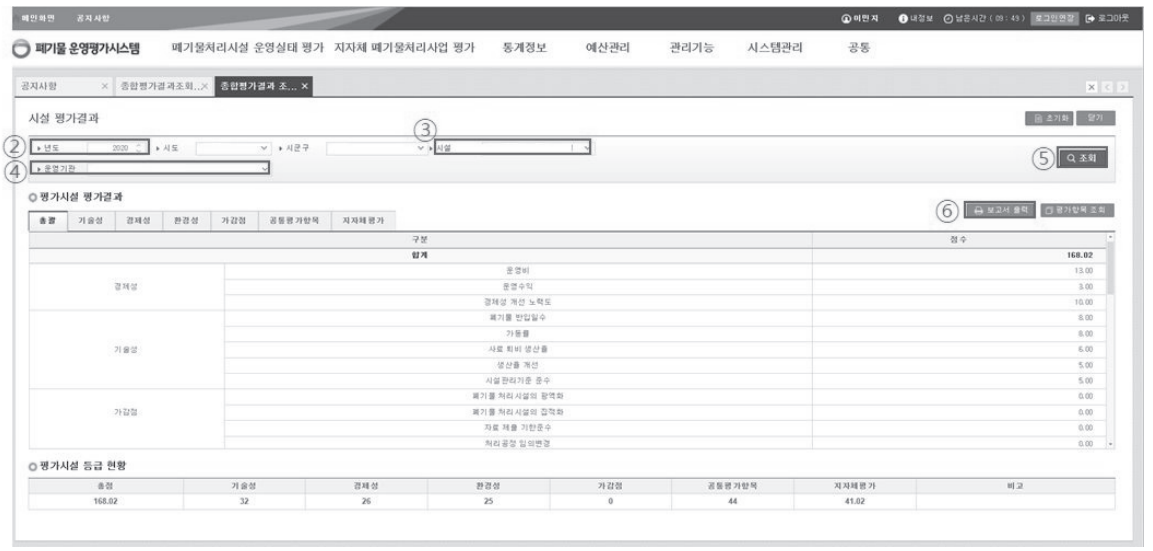

## 8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평가결과 조회

가. ①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평가 탭 클릭

나. ② 평가결과 조회 클릭

다. ③ 시설구분 해당시설 선택

라. 담당 운영기관 선택

마. ④ [조회] 버튼 클릭하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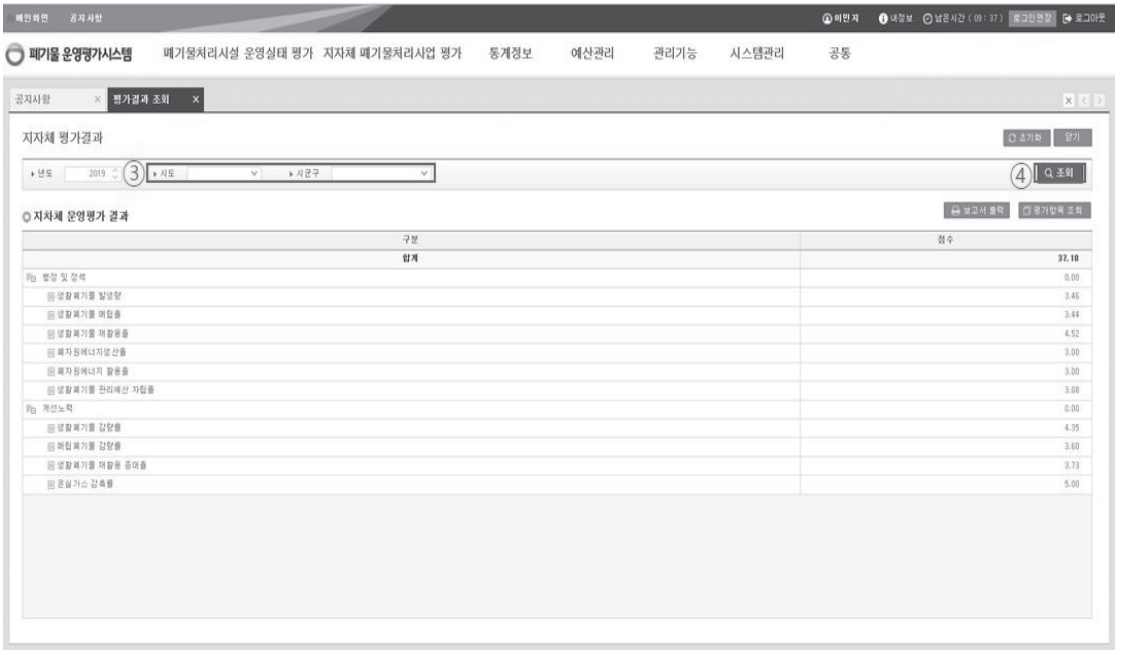


☎ 운영평가시스템 문의처 : 032-590-4548(소각), 4595(가연성), 4613(매립), 4571(음식물), 4612(유기성), 4603(생활자원)

##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2014.12월 기준)

| 대권역 | 중권역 | | 비 고 |
|---|---|---|---|
| 총 계 | - | | 총 63개 중권역 |
| 수도권 | -서울<br>-인천 · 강화<br>-파주 · 김포 · 고양<br>-의정부 · 양주 · 동두천<br>-이천 · 광주 · 하남 · 여주 · 양평<br>-평택 · 안성 | -성남 · 용인<br>-수원 · 화성 · 오산<br>-과천 · 의왕 · 군포 · 안양<br>-부천 · 광명 · 시흥 · 안산<br>-연천 · 포천 · **철원***<br>-남양주 · 구리 · 가평 | 총 12개 중권역<br>(66개 지자체) |
| 강원권 | -강릉 · 동해 · 삼척 · 평창<br>-태백 · 정선 · 영월<br>-원주 · 횡성 | -춘천 · 홍천 · 화천<br>-인제 · 양구<br>-속초 · 양양 · 고성 | 총 6개 중권역<br>(17개 지자체) |
| 충북권 | -충주 · 제천 · 단양<br>-음성 · 진천<br>-청주 · 청원 | -증평 · 괴산<br>-옥천 · 영동 · 보은 | 총 5개 중권역<br>(12개 지자체) |
| 대전<br>충남권 | -대전<br>-천안<br>-세종<br>-아산 · 예산 · 홍성(충남신도청) | -서산 · 태안 · 당진<br>-공주 · 부여 · 청양 · 보령 · 서천<br>-논산 · 금산 · 계룡 | 총 7개 중권역<br>(21개 지자체) |
| 전북권 | -전주 · 김제 · 완주 · 임실<br>-익산 · 군산 · 부안<br>-남원 · 정읍 · 고창 · 순창 | -장수 · 무주 · 진안 | 총 4개 중권역<br>(14개 지자체) |
| 광주<br>전남권 | -광주 · 곡성<br>-나주 · 화순<br>-목포 · **신안****<br>-무안 · 함평<br>-순천 · 구례 | -여수 · 광양<br>-영광 · 담양 · 장성<br>-장흥 · 보성 · 고흥<br>-해남 · 강진 · 영암 | 총 9개 중권역<br>(26개 지자체) |
| 대구<br>경북권 | -대구<br>-김천 · 성주 · 고령<br>-구미 · 칠곡 · 군위<br>-안동 · 영주 · 예천 · 상주 · 문경 · 봉화 · 영양 · 의성 · 청송<br>(경북신도청) | -울진 · 영덕<br>-경주 · 경산 · 청도 · 포항 · 영천<br>-울릉 | 총 7개 중권역<br>(30개 지자체) |
| 부산<br>경남권 | -부산<br>-울산<br>-창원 · 마산 · 진해<br>-양산 · 밀양 · 창녕 · 김해 | -거제 · 통영 · 고성<br>-진주 · 사천 · 하동 · 남해<br>-합천 · 의령 · 함안<br>-거창 · 함양 · 산청 | 총 8개 중권역<br>(41개 지자체) |
| 도서권 | -제주(제주시,서귀포시)<br>**-신안****<br>-옹진 | -진도<br>-완도 | 총 5개 중권역<br>(6개 지자체) |

* : 강원권의 철원군은 지리적 특성 및 지역 간 추진사업(상생협약 등)으로 수도권의 연천-포천권으로 설정
** : 신안군 중 일부 도서지역은 도서권으로 설정

## 1. 전국 최적화 권역도

9개 대(大) 권역
63개 중(中) 권역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속초
연천
인제
양양
포천
동두천
춘천
가평
양주
파주
홍천
강릉
강화
김포
의정부
고양
남양주
구리
서울
횡성
평창
동해
인천
과천
안양
광명
성남
화남
양평
광주
정선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수원
여주
원주
삼척
용진
용인
이천
영월
화성
오산
태백
제천
평택
안성
음성
충주
단양
울진
당진
진천
봉화
아산
천안
충평
괴산
영주
태안
서산
영양
예산
정주
문경
예천
홍성
세종
청원
안동
공주
보은
영덕
청양
상주
청송
대전
옥천
의성
울릉
보령
부여
계룡
논산
영동
구미
군위
포항
서천
금산
김천
칠곡
영천
익산
완주
무주
성주
대구
군산
김제
전주
진안
경산
경주
거창
고령
부안
장수
청도
정읍
임실
함양
합천
창녕
울산
밀양
고창
순창
남원
의령
양산
산청
함안
장성
담양
영광
곡성
구례
진주
창원
김해
부산
하동
마산
진해
함평
광주
사천
고성
나주
화순
순천
광양
신안
무안
남해
통영
거제
영암
장흥
보성
여수
제주
서귀포
강진
해남
고흥
진도
완도

## 2. 최적화 추진현황 (누적 27개 중권역 협약체결)

| 협약년월 | 대권역 | 중권역 | 대상시설 | 용량 (톤/일,천㎥) | 사업기간 |
|---|---|---|---|---|---|
| ‘12.04 | 대구경북권 | 안동-영주-예천-상주-문경-봉화-영양-의성-청송-군위-영덕 | 소각시설 | 390 | ‘14~’19 |
| | | | 유기성 | 120 | ‘14~’19 |
| ‘12.09 | 전북권 | 군산-새만금 | 생활자원 | 20 | ‘14~’20 |
| | | | 소각시설 | 220 | ‘14~’20 |
| | | | 매립시설(순환형) | 645 | ‘14~’20 |
| ‘12.11 | 대전충남권 | 서산-당진 | 소각시설 | 200 | ‘18~’21 |
| ‘12.12 | 수도권 | 평택-안성 | 생활자원 | 70 | ‘15~’19 |
| ‘13.05 | 충북권 | 괴산-증평 | 생활자원 | 30 | ‘14~’19 |
| | | | 소각시설 | 40 | ‘14~’19 |
| ‘13.06 | 대전충남권 | 아산-홍성-당진 | 소각시설 | 200 | ‘11 |
| ‘13.07 | 부산경남권 | 양산-김해 | 매립시설(증설) | 292 | ‘94~ |
| ‘13.11 | 도서권 | 제주-서귀포 | 소각시설 | 500 | ‘15~’19 |
| | | | 매립시설 | 1,848 | ‘15~’19 |
| ‘14.05 | 강원권 | 춘천-화천-양구 | 음식물바이오 | 100 | ‘16 |
| ‘14.08 | 수도권 |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서울 강동 | 소각시설 | 300 | ‘05~’09 |
| ‘14.12 | 수도권 | 은평-양주-동두천 | 소각시설 | 200 | ‘06~’10 |
| ‘15.04 | 부산경남권 | 해운대-기장 | 소각시설 | 190 | ‘16~’21 |
| ‘15.05 | 전북권 | 남원-임실-순창 | 생활자원 | 12 | ‘16~’18 |
| ‘16.03 | 강원권 | 강릉-평창 | 소각시설 | 190 | ‘19~’21 |
| ‘16.05 | 강원권 | 태백-정선-삼척-동해-영월 | 음식물바이오 | 80 | ‘17~’20 |
| ‘16.11 | 수도권 | 부천-서울 강서 | 소각시설 | 260 | ‘16~’20 |
| ‘16.11 | 부산경남권 | 통영-고성 | 소각시설 | 130 | ‘18~’21 |
| ‘17.01 | 충북권 | 옥천-영동 | 생활자원 | 10 | ‘17~’19 |
| ‘17.06 | 도서권 | 제주-서귀포 | 유기성바이오 | 340 | ‘18~’21 |
| ‘17.07 | 충북권 | 진천-음성 | 소각시설 | 50 | ‘18~’22 |
| ‘18.02 | 광주전남권 | 목포-신안 | 유기성바이오 | 90 | ‘17~’22 |
| ‘18.09 | 광주전남권 | 목포-신안 | 소각시설 | 220 | ‘18~’22 |
| ‘18.11 | 강원권 | 강릉-평창 | 매립시설 | 900 | ‘19~’21 |
| ’19.05 | 부산경남권 | 하동-남해 | 소각시설 | 60 | ’20~’22 |
| ’19.08 | 충북권 | 진천-음성 | 생활자원 | 40 | ’20~’22 |
| ‘21.03 | 수도권 | 광명-서울 구로 | 소각시설 | 380 | ‘21~’26 |
| ‘21.08 | 수도권 | 구리-남양주 | 소각시설 | 100 | ‘22~’25 |
| | | | 유기성바이오 | 100 | ‘22~’25 |

# 붙임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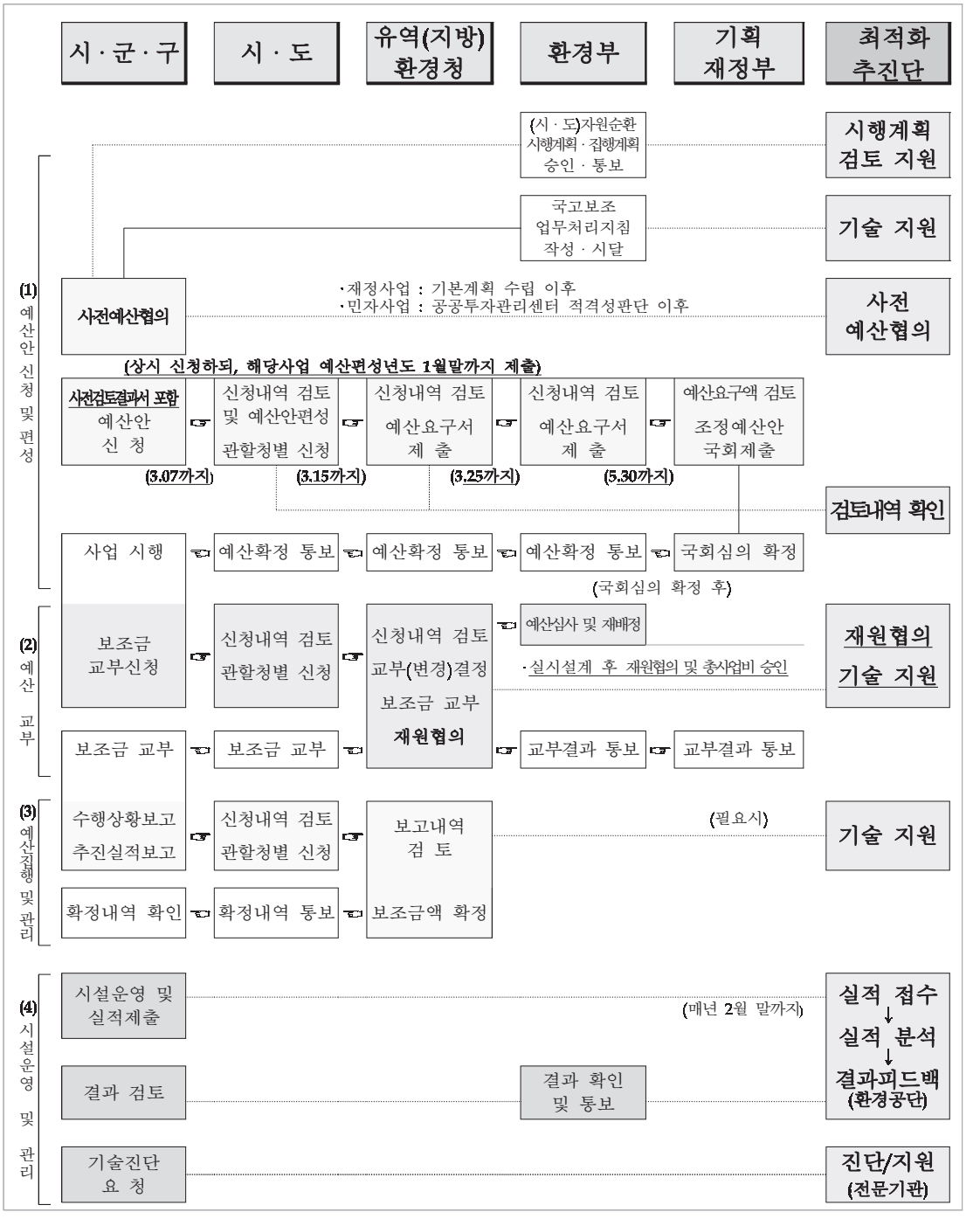


1)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내)"을 말함

## 붙임 7 최적화추진단 구성·운영 체계

### 1. 목 적

○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추진 및 관리

### 2.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2011)」 중 최적화 촉진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3. 구 성

○ 구 성 : 10명(팀장 1명, 팀원 9명)

- 환경부(5) : 팀장(폐자원에너지과 예산총괄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각과 폐기물처리시설 예산담당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4)

- 한국환경공단(5) : 팀장 포함 5인

※ 필요시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

### 4. 추진단 역할범위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설정 및 조정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실무위원회 구성 · 운영

○ 분야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등 피드백

○ 최적화 성공사례 발굴 · 전파 및 추진과정 매뉴얼 마련

○ 최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5. 담당자 연락처 :** 환경부(044-201-7401,7406), 한국환경공단(032-590-4615)

#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1. 회원가입

1 홈페이지 접속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및 회원가입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 고객지원 선택하여 가입승인신청 작성

**2 회원 종류**

가. 시군구 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군구 담당자(기초지자체).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나. 시도 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도담당자(광역지자체).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다. 환경청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환경청예산담당자.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라. 환경부예산담당자
: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환경부예산담당자.
예산안 신청, 예산 교부신청, 총사업비 조정 등의 메뉴 사용 가능.

마. 시설업무담당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업무담당자(지자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바. 시설센터관리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센터관리자(위탁업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사. 시설직영관리자
: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시설직영관리자(직영업체).
시설 운영실적 입력, 시설 평가자료 조회 메뉴 등 사용 가능.

### 3 시설 및 지자체 회원 ID 발급 기준

- 회원 ID 발급 기준은 가입 회원별 하나의 ID 발급을 기준으로 함
- ID: 6~16자 영문+숫자 조합
- PW: 6~16자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 4 가입승인신청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시설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가입유형 등 필수입력사항 및 담당 사용자시설정보를 등록하여 회원가입 승인신청

-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승인신청 정보 작성

나. 담당자 승인 처리 후 로그인하여 시스템 접속

다. 최초 접속 시 브라우저에 프로그램 설치

## 2. 2023년 사전예산협의(2024년 예산반영) 검토 요청서 작성 및 결과 조회

### 1 사전예산협의 검토 요청서 작성

- STEP 1. 검토 요청서 작성주체별(시·군·구 또는 시·도) 요청서 신규등록

가. ① 예산관리 - 사전예산협의 - 검토요청서 선택

나. ② 해당 년도 선택

다. ③ 지자체 선택

라. ④ 조회사항 선택

마. ⑤ [신규] 버튼 클릭하여 요청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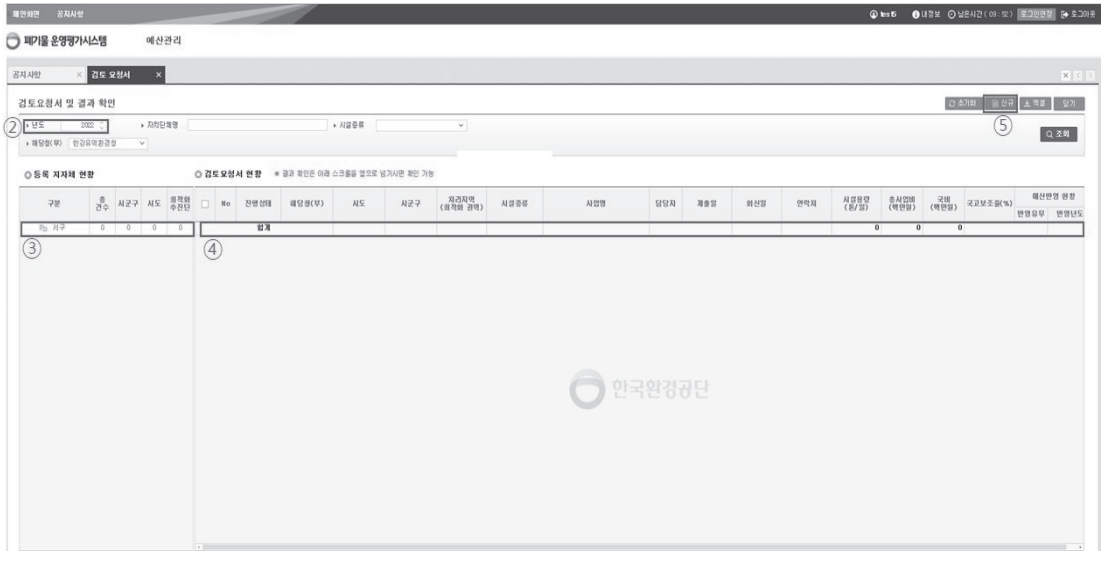

- STEP 2. 검토 요청서에 필요한 일반현황 등 정보 입력
  가. ① 일반현황 작성
  나. ② 최적화 권역 선택 후 조회
  다. ③ 정보 연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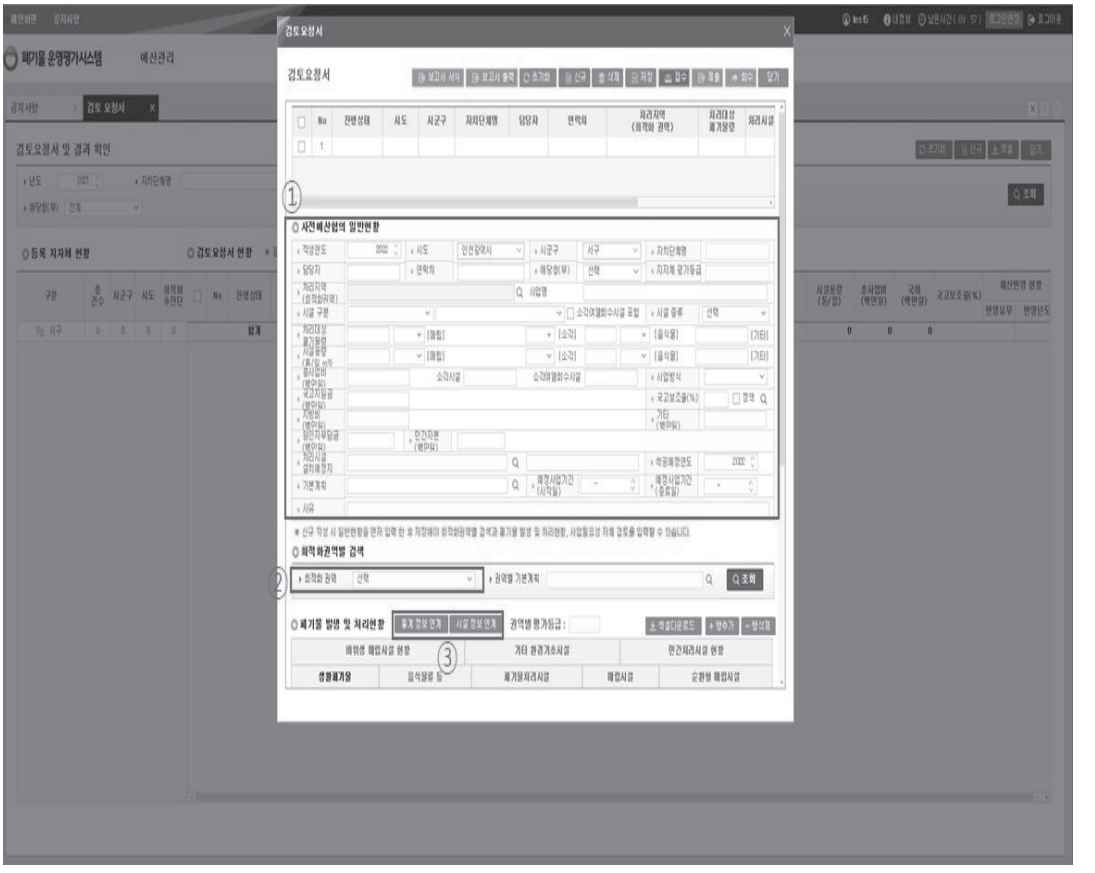

## ③-1 통계 정보 연계 화면

## ③-2 시설 정보 연계 화면

- STEP 2-1. 검토 요청서에 필요한 일반현황 등 정보 입력

가. ① 입력 값 관련 첨부파일 첨부

나. ② [저장] 버튼 클릭하여 작성한 정보 저장

다. ③ [제출] 버튼 클릭하여 작성 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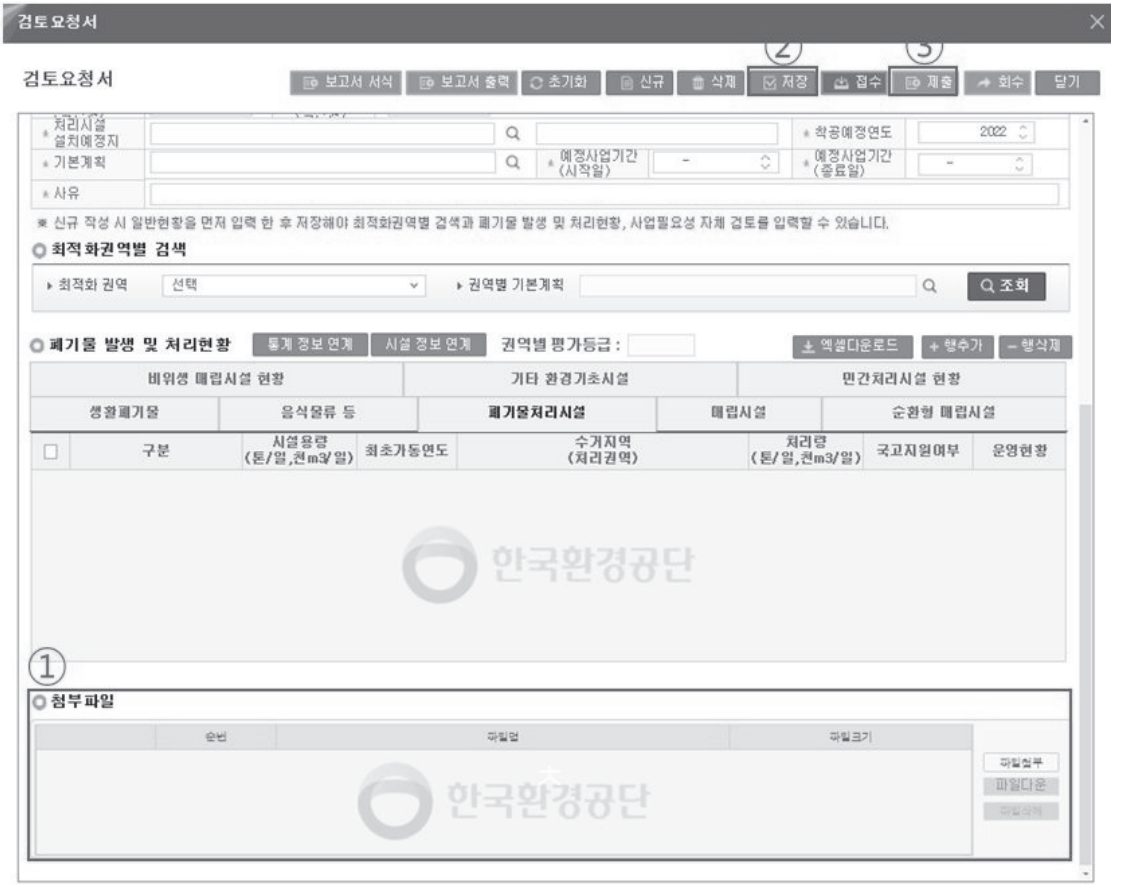

## 2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 조회

가. ① 예산관리 - 사전예산협의 - 검토결과서 선택

나. ② 해당 년도 선택

다. ③ 지자체 선택

라. ④ 조회사항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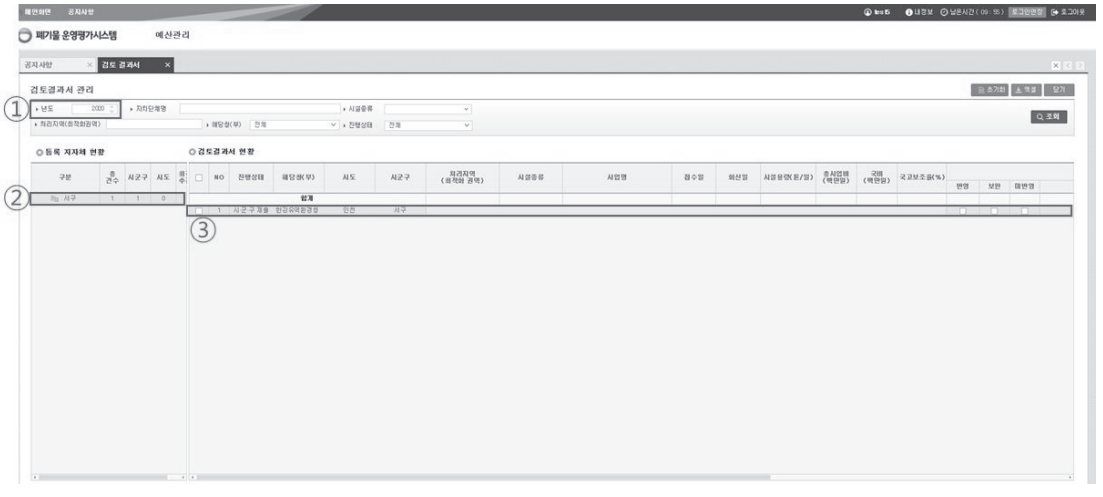

## 3. 2023년 예산안 신청(2024년 예산반영) 자료 작성 및 조회

### 1 예산안 신청(시·군·구 또는 시·도 작성)

- STEP 1. 예산안 신청서 작성주체별(시군구 또는 시도) 신청서 선택

가. ① 예산관리 -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검토결과서 선택

나. ② [신규] 버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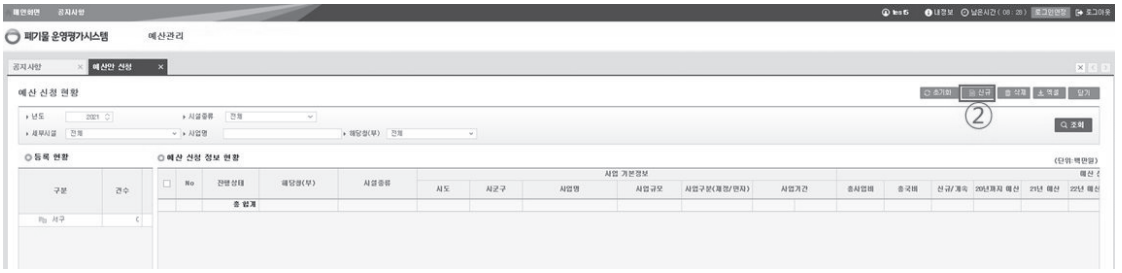


- STEP 2. 예산안 신청서 작성(신규사업)

가. ① '신청사업내역' 클릭 후 신규/계속 중 '신규' 선택

나. ② '신규' 버튼 선택 후 사전예산협의 완료/면제 대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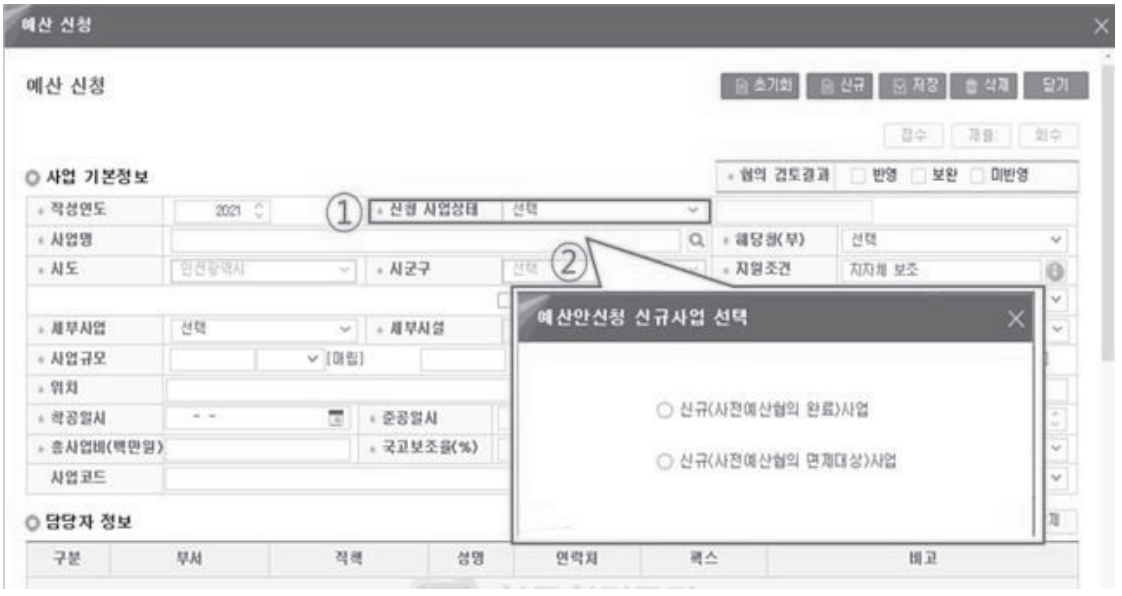

- STEP 2-1. 예산안 신청서 작성(신규사업)

가. ① 시설 기본 정보 내용 확인

나. ② 예산안 신청에 필요한 파일 첨부

다. ③ 예산안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입력

라. ④ [저장] 버튼 클릭하여 작성한 정보 저장

마. ⑤ [제출] 버튼 클릭하여 작성 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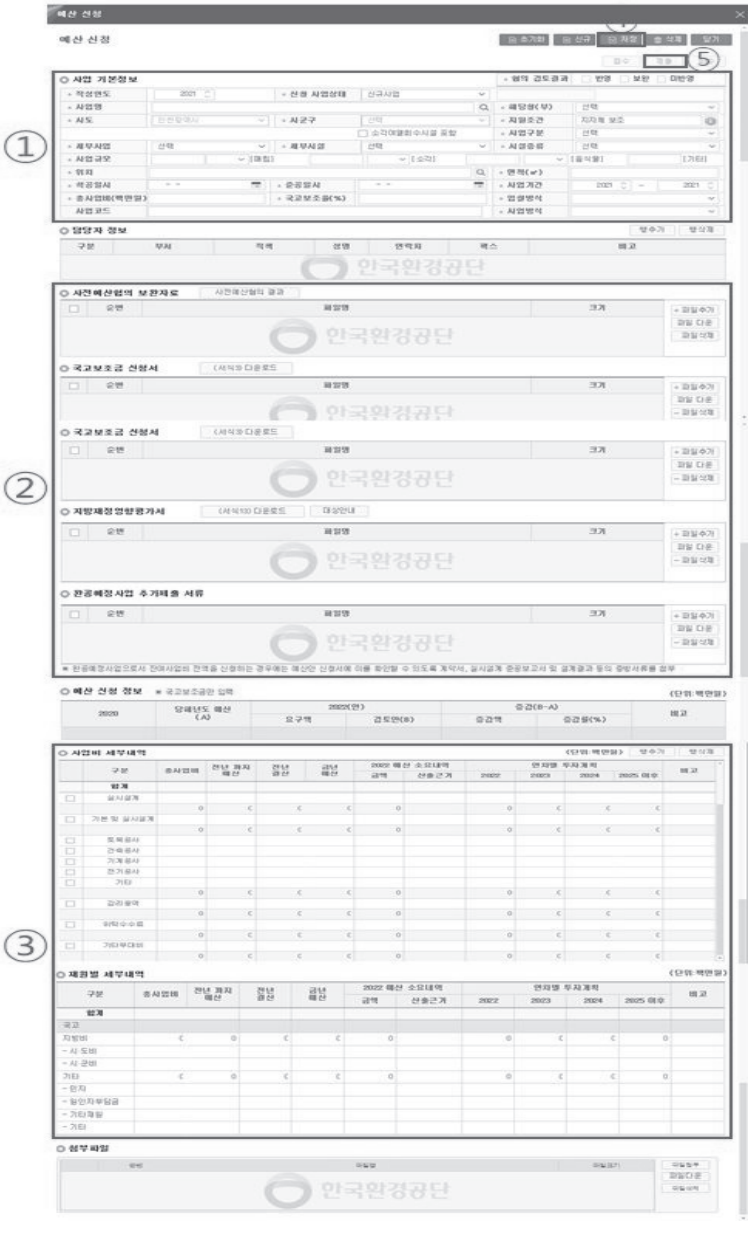

- STEP 3-1. 예산안 신청서 작성(계속사업)

가. ① '신청사업내역' 클릭 후 신규/계속 중 '계속' 선택

나. ② '계속' 버튼 선택 후 생선된 팝업창에서 해당 시군구(사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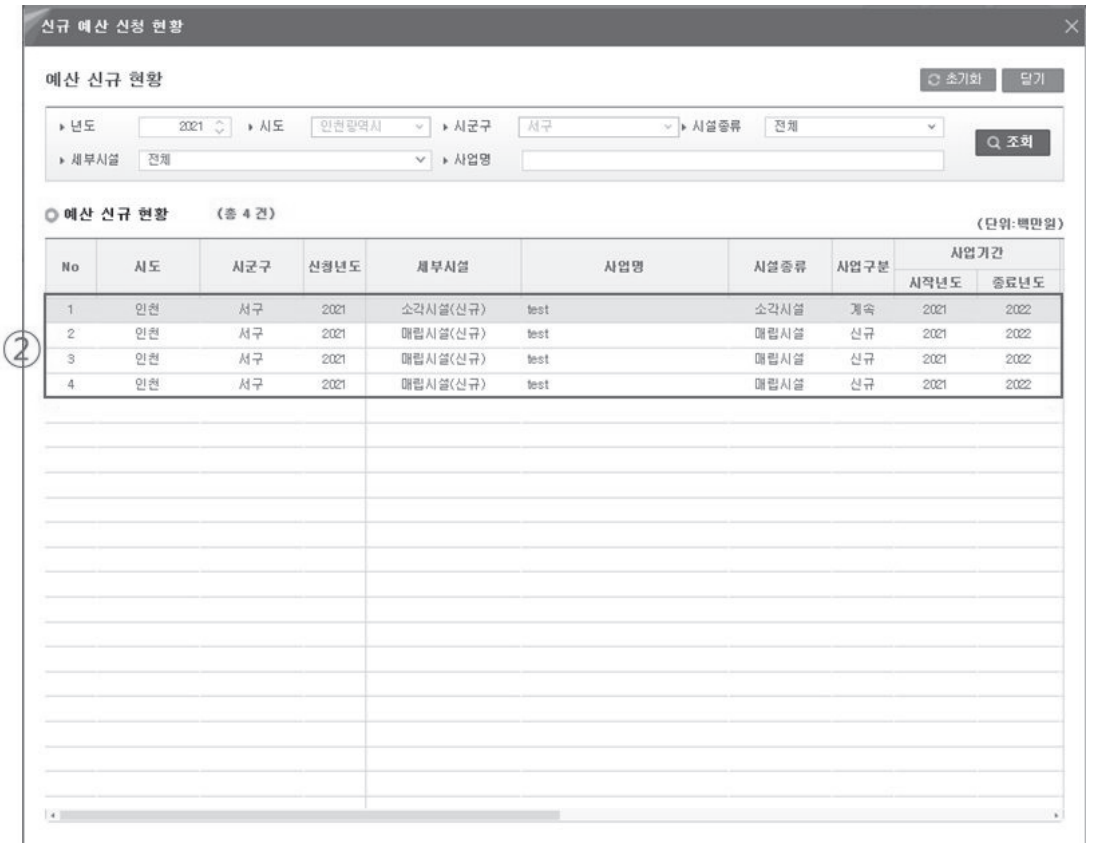

- STEP 3-2. 예산안 신청서 작성(계속사업)

가. ① 시설 기본 정보 내용 확인

나. ② 예산안 신청에 필요한 파일 첨부

다. ③ 예산안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입력

라. ④ [저장] 버튼 클릭하여 작성한 정보 저장

마. ⑤ [제출] 버튼 클릭하여 작성 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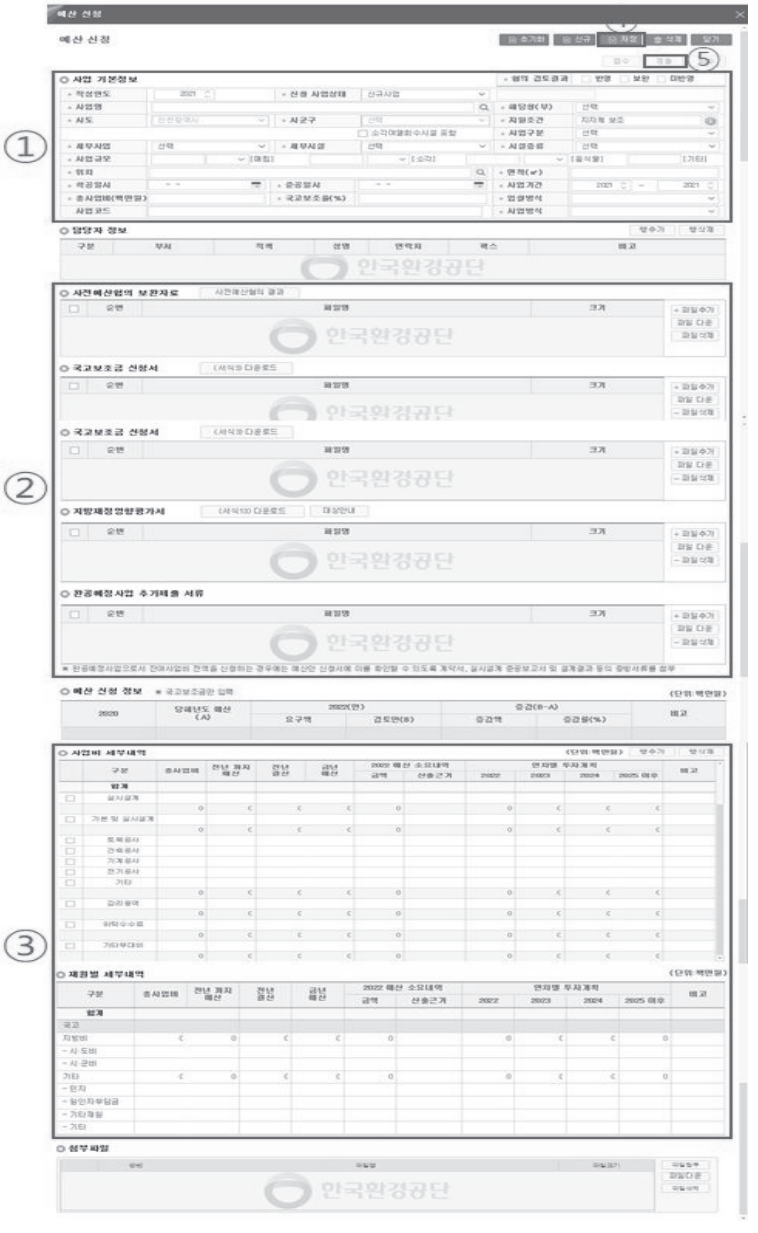

## 4.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 1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가. ① 예산관리 - 예산 교부, 집행, 정산 - 정산실적보고서 선택

나. ② [신규] 버튼 클릭하여 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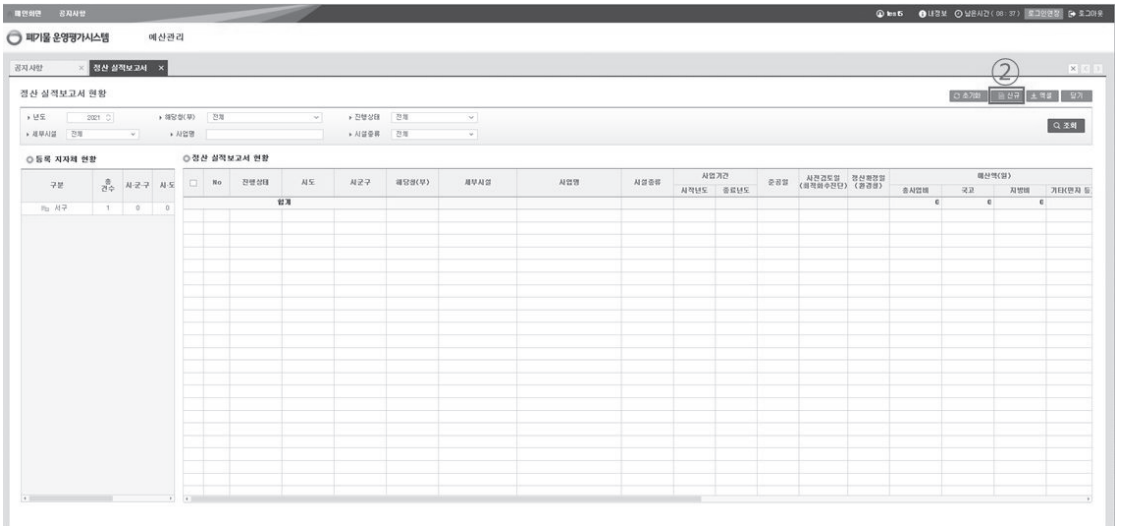

다. ③ 보고서 작성 방안

1. 사업명 찾기

1-① '돋보기' 버튼을 누른 후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해당 사업 찾기

2. 교부내역 작성

3. 지출내역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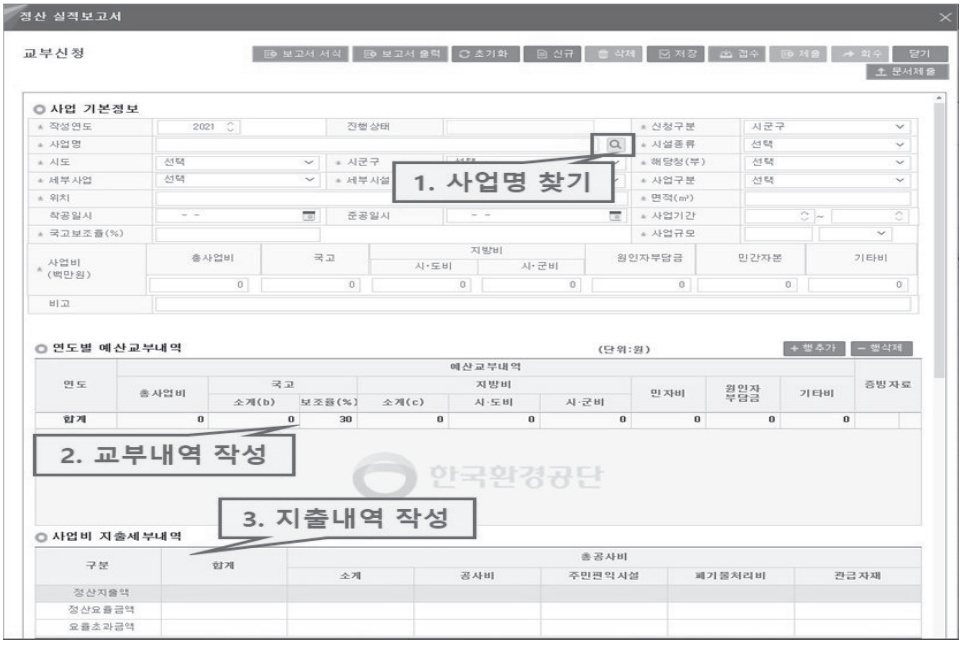

라. ④ 총사업비 승인문서, 국고 교부 통지서, 지출 결의서 등 증빙자료 첨부

1. [엑셀 업로드] 및 [행추가] 버튼 선택하여 세부 집행내역 입력
2. 증빙자료 부분의 '돋보기' 클릭하여 첨부파일 입력

☎ 예산관리시스템 문의처 : 032-590-4603, 4613(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 붙임 9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주요 질문모음 발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반납 이자 산정 사례 참고 (사례 1,2)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15년 감사원 지적사항)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로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로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비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하고, 남은 금액은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 붙임 10 지방재정영향평가

□ '신규 공모사업*'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할 때에「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시・군・구

②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시・도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

□ 해당사업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서식 12)를 작성하여 제출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평가 주체**

○ 신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인 사업,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제외)

□ **평가 범위 및 항목**

○ 범위 :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평가

○ 항목 : 사업기간별 재원(국비, 지방비)규모 및 지방비 용도 등

□ **평가 절차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

○ 지방재정법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서, 서류 및 명세서를 제출

□ **제출 양식 및 증빙자료**

○ [서식 12]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 예산요구서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동법 제51조 제2항의 서류 및 명세서

1)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요구안

2) 예비비 사용 명세서 (사용이유 및 금액 추산 근거)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붙임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시설 유형 및 운영방법

### □ 시설별 유형

| 유 형 | 주요내용 |
|---|---|
| 매립시설형 | · 태양열, 풍력, 매립지 내 지열, 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전기·열을 마을 내 이용 또는 판매 |
| 소각시설형 | ·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하여 스팀·온수·전기를 생산·판매<br>· 소각장 굴뚝을 활용한 전망타워(레스토랑 등) 설치로 관광객 유치 |
|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형 |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혐기성소화 후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인근마을에 공급하거나 도시가스사에 판매 또는 전기를 생산·판매하여 난방·전기 등 에너지비용 절감 및 마을 공동수익 창출<br>· 찌꺼기 건조시설,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 |
| 재활용시설형 | · 공공열분해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에너지, 부산물 등을 이용 (업사이클링 연계 등) |
| 혼합형 | · 매립시설형, 소각시설형,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형, 재활용시설형 등을 집적화하여 생산된 스팀·온수·열·전기를 이용·판매 |

### □ 사업주체별 유형

| 유 형 | 주요내용 |
|---|---|
| 지자체 +주민주도형 수익사업 | · 퇴비화시설 등 기업성격의 수익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이 사업을 공동 운영하고 지자제의 지속적 지원 및 수익성 담보가 바람직<br>·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위원회(지자체+주민+거버넌스)에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예) 홍천군 퇴·액비 제조시설 |
| 주민 주도형 수익사업 | · 마을기업, 마을조합 성격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형 사업(현금·현물 20%이상, 주민 토지제공)<br>· 마을기업(조합 등) 이사회의 책임하에 자율적 운영 및 소유권 이전<br>· 경제성 확보 가능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 (태양광 발전 등)<br>※ 예) 아산시 세탁공장·유리온실 |
| 주민 공익시설 중심사업 | · 마을 공익시설(목욕탕, 경로당 등) 설치, 개별가구 열공급 및 바이오가스 공급, 개별 태양광 발전 등 주민 개별혜택 중심<br>· 주민개별 만족도 높은 사업에 주력<br>※ 예) 양산시 마을 목욕탕 사업, 청주 열배관 설치사업 |

## □ 사업시설(예시)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 음식물류, 가축분뇨 등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시설
- 발전기, 보일러, 가스정제시설, 전력저장시설(ESS)
- 소화조 탈리액, 슬러지 등 퇴비·액비 자원화시설
-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공급시설(관로)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수력발전, 지열 등) 생산시설
- 태양광 주택, 태양광 가로등 등 에너지절약·효율화시설 등

○ **주민소득·편의·복지시설**

- 폐자원을 활용한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
- 에너지자립형 마을회관, 주민 공동이용 편의시설(체육시설, 경로당, 목욕탕, 휴게시설 등)
- 악취, 경관 등 기피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 마을하수도, 상수도 등 환경기반시설 등

○ **기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문화관광 연계 개발사업**

- 경관작물 식재, 생태체험 관광단지 등

## □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방법 등

○ 설치 후 지자체가 운영, 지방공사 또는 마을기업(SPC) 등에 위탁 운영

※ 마을기업이 수탁받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시설의 운영에 자격, 면허,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조건을 갖춘자에게 위탁 가능

○ 시설의 운영 시 특정인에게 혜택 또는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기업의 정관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처분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는 수익에서 충당하되, 수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업무매뉴얼('23.1, 환경부)」 참고

붙임 1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 1 제정('11.4.20.)

○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예산 편성, 교부 등에 관한 **일관된 업무체계 확립**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전 주기**(기획-편성-집행-평가-환류)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원칙 및 절차의 일원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과정(보조금 예산 편성 · 교부 · 집행관리 등)에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원칙 및 절차** 규정
- **(최적화 유도)** 지역별·시설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를 유도**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관리 분야 **국고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제시
- **(기술검토 체계 구축)**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 최적화 추진단」의 **기술지원 및 검토 체계** 구축

## 2 1차 개정('12.4.4.)

가. **폐기물처리시설 별 국고지원기준 구체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예 : 소각여열 공급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은 연료화시설 지원 곤란)

○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대보수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중 병합처리하는 시설의 최소 혼합 비율 제시

나. **폐기물처리시설 내구연한 및 기술진단 시기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내구연한 설정

- 소각시설은 ① 2005년 이전 설치 또는 착공한 시설은 15년 ② 2005년 이후 설치 또는 착공한 시설은 50톤/이하는 15년, 50톤/일 초과는 20년
- 소각시설외의 시설은 20년

○ 기술진단은 국고보조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각시설에 적용

다. **사전재원협의**

○ 최적화추진단과 최적화반영여부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신청

라.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단가 현실화**

○ 처리시설 지원 단가 조정

- 순환형매립시설의 정비(50%) 및 설치(30%)예산 지원 확정

○ '13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적정성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환경부 주관, 한국한경공단 시행)

- 연구용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예산집행관리 강화 등**

○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최적화추진단과 사전협의 후 협의결과를 토대로 변경신청

○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 전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명문화

| 구 분 | | 주 요 개 정 내 용 |
|---|---|---|
| 국고지원 기준 | 소각시설 | ■ **여열회수설비를 설치 후, 회수된 스팀·전기 등의 이용·공급·판매가 가능한 지역 우선지원**<br>■ **지역여건에 따른 소각방식 선정의 기준 명시**<br>※ 소각방식 선정기준<br>① 상시 소각여열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전량 소각<br>② 계절에 따라 열 및 전기를 생산하여야 하는 지역 → 기본적인 기계적 처리 후 소각<br>③ 열 이용이 어려운 지역 → 기계적 처리 후 소각 또는 RDF 생산<br>■ **소각시설의 용량은 '로'의 설계용량만으로 산정**<br>예) 폐기물 발생량 45톤/일, 기계적 처리 70톤/일 소각로 46톤/일인 경우, 시설의 설계용량은 46톤/일로 설계<br>■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대보수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 첨부**<br>※ 기술진단결과서의 인정기준<br>① '05년 이전 설치·착공시설 → 50톤/일 이하는 **10년**, 50톤일 초과는 **12년** 경과 후 실시<br>② '05년 부터 설계시설 → 50톤/일 이하는 **12년**, 50톤일 초과는 **15년** 경과 후 실시 |
| | 소각시설 대보수 | ■ **대보수를 실시할 경우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br>- 시설용량이 50톤/일 이하는 **6년**, 50톤/일 초과는 **8년** 이상 사용연한이 증가하는 경우 |
| | 소각여열 회수시설 | ■ **소각여열회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기준 제시**<br>- 증기발생량이 최소 3톤/h 이상인 지역(가동율이 대형 90%, 중소형 80% 이상인 경우)<br>- 시설설치 후 최소 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지역/열, 전기의 공급, 매각이 용이한 지역 |
| | 가연성폐 기물에너 지화시설 | ■ **소각여열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RDF제조)시설 지원 불가**<br>- 소각여열의 상시 이용이 용이한 지역(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은 소각시설 설치 권장 |
|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 스화시설 | ■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음폐수 처리대책이 시급한 지역 우선지원**<br>■ **병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혼입비율 제시**<br>- 음식물류(음폐수)와 가축분뇨를 병합처리하는 경우 최소 혼입비율을 30%까지 유지 |
| |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 ■ **매립가스 포집·이용 등에 경제성을 확보한 지자체 우선 지원**<br>-『지자체 매립지 LFG자원화 사업 타당성조사(환경부, 2009)』를 통해 사업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추진계획을 검토한 매립지를 보유한 지자체 우선 지원 |
| | 순환형 매립시설 | ■ **´14년부터 지원이 가능**<br>- 순환형매립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착폐기물을 지자체에서 보유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은 '13년부터 지원 가능 |
| | 농어촌폐 기물종합 처리시설 | ■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을 집적화하여 설치하는 지역을 우선지원**<br>- 단, 소각시설의 경우 도서지역만 지원 가능 |
| | 자원순환 종합단지 | ■ **별도로 설정된 승인 우선기준에 따라 지원**<br>-『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매뉴얼(환경부, 2010)』에 따른 승인 우선순위 |
| | 공 통 | ■ **연차별 보조금 지급기준의 예외조항 도입**<br>-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사업은 1차년도에 총 국고보조금의 최고 1/3까지 지원가능 |

| 구 분 | | 주 요 개 정 내 용 |
|---|---|---|
| 예산안 신청·편성 단계 | 사전 재원협의 실시 | ■ **사업재원 등에 대하여 '최적화추진단'의 사전협의 후 예산 신청**<br>- 재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에 대한 MOU 체결 이전에 '최적화추진단'으로 검토 요청<br>- 시·군·구는 '최적화추진단'의 사전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신청하며, 시·도 및 환경청은 사전검토내역을 '최적화추진단'에 확인 후 예산요구서 제출<br>※ 시·군·구의 '사전검토요청서' 및 최적화추진단의 '사전검토결과서'에 대한 서식 추가 |
| | 예산신청 사전요건 강화 | ■ **재정사업**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된 경우<br>■ **민간투자사업**은 PIMAC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예산반영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 |
| 예산 교부 단계 | 교부결정 기술검토 | ■ **환경청의 교부신청내역 검토과정에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 실시(필요시)**<br>- 보조사업내용의 기술적 부분(공정별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검토요청 가능 |
| | 보조금의 반환 | ■ **보조금의 반환사유가 발생 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b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
| | 별도계정 설정 | ■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b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
| | 재원별 구분관리 |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을 구분하여 회계처리**<b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
| 예산 집행·관리 단계 | 수행상황 보고 강화 | ■ **연중 총 4회(4월말, 8월말, 10월말, 12월말)『수행상황보고』실시**<br>- 12월말에는 당해년도 집행실적 및 다음년도 집행계획까지 포함하여 제출<br>- 수행상황보고 관련 증빙자료는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br>■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에 대한 환경청의 검토과정에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 실시(필요시)** |
| | 총사업비 변경절차 강화 | ■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최적화추진단의 사전협의 후 변경신청** |
| 시설 운영·관리 단계 | 시설운영 실적검토 실시 | ■ **시설운영실적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검토 실시**<br>- 최적화추진단은 제출(매년 3.31까지)된 운영실적을 집계, 분석, 평가한 후 피드백 실시<br>※ '12년에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시범적용 실시(연중) 및 세부 보고서식 마련 후 '13년부터 전 지자체 확대 적용 예정 |
| 기 타 | 시설별 내구연한 기준제시 | ■ **시설 종류별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 명시**<br>- 소각시설 : '05년 이전 설치 또는 설계한 시설 → **15년**(모든 용량)<br>'05년 이후 설계한 시설 → **20년**(50톤/일 초과), **15년**(50톤/일 이하)<br>- 소각시설 외 처리시설 : **15년** |
| | 국고지원 비율변경 |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15억원/개소(정액지원)<br>■ **생활자원회수센터**(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광역화 시 50% 지원 |
| | 설치비용 표준단가 변경 | ■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설치단가 제시**<br>■ **현실여건을 반영한 표준단가의 산정을 위해 매 3년 마다(2012년 기준)「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후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조정** |

### 3 2차 개정('13.2.19.)

가.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조정**

○ '소각여열회수시설' 지원대상

- 발전설비에 한하여 정액지원
- '13년부터 신규 신청하는 시설은 동 시설 필요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소각시설에 포함하여 신청토록 명시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제조)시설' 최소시설규모 상향 조정

- 80톤/일(가동일 260일/년) ⇒ 100톤/일(가동일 260일/년 이상)

○ '순환형매립시설' 및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부분 보완

- 관련 지침(매립지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개정('13.2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나. **예산안 신청 및 편성단계**

○ '사전예산협의'로 명칭 일원화

- 사전검토, 사전재원협의 등 ⇒ 사전예산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보완

- 매립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수평증설과 수직증설로 세분화하여 단가 제시
- 표준단가 조정시기 변경 : 매 3년 ⇒ 매 5년

다.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단계**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 기간 변경

- 수행상황보고 : 매년 4월, 8월, 10월말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실적(정산)보고 :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사업의 경우 익년 1월 15일 ⇒ 1월 31일)

○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정산불인정대상 제외

라. **총사업비 관리단계**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기준일 변경

- 민자사업 : 제안서 접수일 ⇒ 공사착공일
- 재정사업(턴키사업) : 일찰공고일 ⇒ 공사착공일

○ 사업유형별 주요 총사업비 변경시기 제시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
- 민자사업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 이후 제3자 공고 이전
-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상기 변경시기가 아닌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 4 3차 개정('14.3.4.)

가. **국고보조업무 관련법(지침) 개정사항 반영**

○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13.11)」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12.1)」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필요

- 낙찰차액 조정 신청시기 조정(45일 → 10일)
- 폐기물처리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재부)」 제12조의 예비면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 요구

○ 「폐기물 처리사업 및 시설 설치 · 운영실태 평가제도」 도입('14.1)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 및 기한 변경(매년 3월말 서류제출→ 요구 2개월 이내 시스템 입력)

나. **보조금 정산업무 효율 개선**

○ 보조금 **정산 간편화**(지자체 요구사항)

-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결의서 등) 제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등)의 전산 출력자료로 대체

○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 기한 적용**으로 정산업무 지연 방지

-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2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

다. **국고보조 지원 및 예산관리 강화**

○ 국고보조 기 추진 중인 **시설을 추가**하여 **국고보조 지원대상의 명확화**

- '가연성폐기물가스화발전시설',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추가

※ 가연성폐기물가스화발전시설은 환경부「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발전시스템으로 시설규모 50톤~100톤/일에 해당

○「지진재해대책법」제15조 및 시행령 11조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매립시설(면적 15만㎡ 이상)

○ 국고 지원 후 **2년간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경우 **사업취소** 및 **환수 조치(신설)**

라. **기타사항**

○ 부진사업의 감액기준 현실화(적정 소요반영 실집행률 기준 : 90 → 80%)

○ 총사업비 변경사업 신청기간 완화(완공 전전년도 12월말 → 완공 전년도 2월말)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율 변경(15억정액/개소→ 70%(15억이내/개소)

## 5 4차 개정('15.2.11.)

### 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을 국고지원 반영(인정)

❍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14.4)에 따른 국고지원 인정범위 확대

- (기존)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 (추가) 문화재 발굴비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사용역비,** 준공도서전산화비용 등 기타 **법정경비**

※ 사업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등도 인정

❍ 예산안편성지침(기재부, '14.4)에 따라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변경요율 반영

❍ 건설공사 **제경비**(조달청, '14), **물가상승률**(한국은행, '14) 등 반영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부, '14.10)에 따른 **설계비 요율** 구분·적용

- 매립시설 : 건설부문 요율(기존 유지)
- 그 외 시설 : **건설→산업플랜트** 부문 요율로 변경

❍ 건설기술 진흥법(국토부, '14.12) 개정에 따른 **설계 경제성 검토비용**(설계 VE) 반영

❍ 조경기준(국토부, '14.3)에 따른 **조경공사비** 반영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표준단가 현실화 반영

❍ **관련법령(지침 등) 개정사항** 및 각 시설별 변경된 ***표준공정 설치비** 반영

* **(표준공정 설치비)** 최근 5년이내 준공된 폐기물처리시설(196개) 설치비 현황을 분석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검토연구'(한국환경공단, 14.1~11) 용역결과 반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표준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반영

⇒ 설치비 표준단가 : **공통사항**(각종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 제경비, 물가상승률 등) **+ 시설별 표준공정 설치비**

**<시설별 표준공정에 반영된 주요사항>**

◇ 소각(신규) : 공통사항만 반영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 탈취설비 반영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 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반영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폐수처리시설 반영

◇ 생활자원회수센터 : 고효율 선별설비, 탈취설비 반영

◇ 매립(40만㎥이하 신규) : 관리동 반영

◇ 매립(정비) : 정비방법별 세분화(차수공 적용/미적용)

### 다. 국고보조 지원 및 예산편성 검토 · 기준 강화

❍ **실시설계 후**(공사 계약 의뢰 전) **재원협의** 단계를 **의무화**하여 총사업비를 적정 관리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효율성 제고

※ 하수도, 생태하천복원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타 국고보조사업도 재원협의 기 운용 중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신규 사업 예산편성 시 고려**

❍ 신규사업 선정 시 **내구연한 내 증설** 또는 **대보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라. 정산율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산절차 및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정산 매뉴얼에 반영)

❍ 지출결의서 대체 가능한 자료로 재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인정

- 사업비 집행지출결의서 이외에 예산지출 **재정정보시스템(MIS 등 전산자료)**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인정**

❍ **정산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한 사업**은 **증거자료**와 함께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체자료로 **인정**(**'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이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여비 증빙자료 제출 시 **출장목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의 경우 출장 명령부, 영수증(통행료, 주유비 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생략** 가능

- 단, 관내출장비 등 여러 출장 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6 5차 개정('16.1.26.)

가. 폐기물처리 **광역화 사업**(최적화 협약)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30→50%)**

❍ (기존) **소각**시설 → (변경) 국고보조 대상 **모든 폐기물처리시설**로 확대

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예산지원 조건 강화**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음식물, 음폐수와 가축분뇨 등** 병합처리 시설 설치 시 음식물(음폐수)의 혼합비율 최소 50%이상 만족

❍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SRF**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별도 지원

다. **군부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시 군부대 발생 음식물폐기물 포함·반영**

- 사전에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비는 군부대 물량 비율에 따라 필요시 지방비 일부를 군부대에서 부담

* 군·관 환경협의회 건의사항 반영

라.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보유·사용·정산 기준 구체화**

❍ 총사업비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국고지원액 결정

* 사전 예산협의, 예산 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에 원인자부담금 보유현황 명시

❍ **광역**시설 설치 시 각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분담**

마.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행자부, '14.11개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 총사업비 **500억원(지방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 예산 신청 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의무**

❍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정산인정 대상 확대**(정산매뉴얼 반영)

❍ **공사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측량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정산 인정

❍ **인정 · 불인정 대상** 세분화 및 **감사사례**를 반영한 **'Q&A'** 안내

**7 6차 개정('17.1.10.)**

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분석*을 통한 설치비 표준단가 현실화 반영**

❍ **(신설)**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현행 예산지원 대상 시설이지만 설치비 단가가 없는 가스터빈 발전시설에 대한 시설 규모별 표준단가 신설

| |
|---|
| · 4구간(0.3MWh이하, 0.3~0.7, 0.7~1, 1MWh초과), 37~25억원/MWh |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로 소형, 회분식 및 도서지역에 설치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소각 및 매립단가와 별개의 단가 신설

| |
|---|
| · 소각시설(회분식) : 3구간(1톤/일이하, 1~3, 3~5톤/일), 9.87~6.05억원/톤 |
| · 매립시설(차단형) : 4구간(0.2천㎥ 이하, 0.2천~0.6천, 0.6천~2천, 2천~6천㎥), 1,427~298천원/㎥ |
| · 매립시설(관리형) : 2구간(2천㎥이하, 2천㎥~10천㎥), 456~379천원/㎥ |

❍ **(세분화)** 현행 **단일 단가**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표준단가를 각각 시설규모별로 **3구간으로 세분화**

| |
|---|
| ·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1.7억원/톤 → 3구간(1.8~1.5억원/톤)<br>·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 음폐수, 병합) : 각각 2.4, 1.6, 2.0억원/톤 → 각각 3구간(3.6~2.0, 2.0~1.4, 1.9~1.3억원/톤)<br>·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 건식, 퇴비화) : 각각 1.3, 2.0억원/톤 → 각각 3구간(1.3~1.1, 1.8~1.2억원) |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제고방안 연구」(한국환경공단, '16.7~'17.1) : 최근 5년 내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 설치비 현황조사

나. **기존시설 대보수를 위한 사용연한 증가 인정기준 현실화**

❍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 후 **8년(10년) 이상 사용연한**의 **증가**효과가 기대될 때 대보수 사업 **추진**

* 6년(50톤/일 이하), 8년(50톤/일 초과) → 8년(50톤/일 이하), 10년(50톤/일 초과)

다.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16.8 제정)에 따른 **보조금의 이월** 및 **발생이자 산정기준** 반영

- **이월**(재이월)시 **환경부 사전 승인, 발생이자 금리**는 지자체-금융기관 간 약정 **보통예금 금리** 적용

* **(재이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라. **예산지원 기준 및 집행관리 합리화**

❍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이 **설치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고 **우선지원**

❍ **병합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시 음식물(음폐수)의 **혼합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반입비율에 따라 예산지원 분담**

❍ 계속사업의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율 조정

- 2(3, 4)차년도 완공예정사업 : 잔여보조금의 **60(40, 20)%** 이내 → 잔여보조금의 **50(30, 20)%** 이하

*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지원율과 일치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 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2015년 국고보조사업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

마.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의무화**

❍ 예산 신청, 집행, 정산보고시 **예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도 **시스템**으로 **통지**하여 **신청-승인 이력관리** 실시

| | |
|---|---|
|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실태평가 시스템** 내 예산관리기능 개발 |
| **시스템 구축('15)→시범운영('16)→지자체 개방('17)** | |

* **입력대상사업**(보고서) : **'18년 신규·계속사업**(사전 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예산신청서), **'17년 완료사업**(정산보고서) **문서 제출+시스템 입력 병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재부) 개통('17.1)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이 실시간 관리되므로 전산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실적 입력 철저 관리**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정산 인정범위 확대 및 시스템 활용**(정산메뉴얼 반영)

❍ 기존 **시설부대경비** 항목으로 관리되던 **조사용역비, 안전점검** 및 **설치검사수수료, 공고료**를 **공사비** 항목의 **'조사용역비'**로 구분하여 **정산범위 확대 인정**

* 조사용역비 등이 시설부대경비로 관리됨에 따라 시설부대경비 요율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출금액 인정

## 8 7차 개정('18.1.25.)

### 가. 기존 시설 설치비 분석*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한 표준단가 현실화

❍ **(시설규모별 구간 세분화)**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최적 표준단가 제시

- (바이오가스화시설) 시설규모 최소구간 표준단가 축소조정

| |
|---|
| · 음식물, 음폐수, 병합 : 각각 3.6, 2.0, 1.9억원/톤 → 각각 2.65, 1.73, 1.73억원/톤 |

- (소각시설 등 6개 시설) 현행 3구간에서 최대 13구간까지 세분화

| |
|---|
| · 소각시설(신규, 대보수), 매립지정비(굴착·선별 후 이적), 음식물(사료화) : 3구간 → 4구간<br>· 음식물(퇴비화) : 3구간 → 6구간, 매립시설 : 8구간 → 13구간 |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제고방안 연구」(한국환경공단, '16.7~'17.1) : 최근 5년 내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 설치비 현황조사

❍ **(물가상승률 반영)** 소각시설 등 17개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반영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17년도 **물가상승률 2.05% 반영**

❍ **(사업비 역전 해소)**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하위구간 최대사업비를 적용하여 역전 해소

* (예) 소각시설 32톤/일의 사업비는 130.56억원(32톤/일×4.08억원/톤)이나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인 131.7억원 적용(30톤/일×4.39억원/톤)

### 나. 기존시설 대보수 후 내구연한까지 사용 의무화

❍ **대보수** 후 **내구연한 이전에 보수·폐쇄**할 경우 소요비용 **국고 미지원**

- 공정·설비 전면교체로 신규시설과 동일한 내구연한 확보 가능

* 8년(50톤/일 이하), 10년(50톤/일 초과) → 15년(50톤/일 이하), 20년(50톤/일 초과)

### 다.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에 따라 **자원순환 시행(집행)계획** 수립 반영

- 사전예산검토 요청시 자원순환 시행(집행)계획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 증설 · 대보수 사업에 한해 예산지원

* (집행·시행계획 시행 전) 기 승인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반영(폐기물관리법 부칙 제4조)

❍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 라. 국고보조 지원대상 신설 · 확대 및 지원기준 강화

❍ **(전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신설

-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 · 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 재활용 및 열적재활용 하는 약 80톤/일 규모의 시설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설기준 설계 반영, 생산된 에너지의 **후처리 설비**** 설치비 반영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 후처리설비 : 가스정제, 발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등에 따라 **최종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른 **재활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마. 예산 신청 · 편성 및 집행관리 합리화

❍ **사전예산협의 상시신청**으로 검토기간 확대(예산신청전 1월 말까지→**연중**)

- **연중 상시검토**로 적정성 · 시급성 · 타당성 검토기간 확보 및 현장조사 실시

❍ **(민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이후** 사전예산협의 요청

* (기존) 민간제안 MOU체결 이전 → (변경)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판단 이후

❍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자료 입력**(계속)

- 예산 신청, 집행, 정산보고시 예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도 시스템으로 통지하여 신청-승인 이력관리 실시

| | |
|---|---|
|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br>시스템 구축('15)→시범운영('16)→입력 의무화('1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실태평가 시스템** 내 예산관리기능 개발 |

* **입력대상사업**(보고서) : **'19년 신규 · 계속사업**(사전 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예산신청서), **'18년 완료사업**(정산보고서) **문서 제출+시스템 입력 병행**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기준 강화 및 시스템 활용**(정산매뉴얼 반영)

❍ 민간투자사업 정산시 증빙자료 제출 항목 및 국고 인정대상 명시

* 실시협약, 재무모델, 모든 지출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 택지개발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국고반납액 산출방법 안내

*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추정사업비 재산출, 지출액에 따른 국고반납액 산정예시

## 9 8차 개정('19.1.18.)

가. 예산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명확화**

❍ **(재정투자 방향)**

(1)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설이나 계속사업에 한하여 투자
(2)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 또는 **집적화** 사업(최적화)
(3) **신도시 건설**이나 **관광객 급증** 등 시급성이나 불가피성 고려
(4) 단순한 처리시설 설치보다는 **에너지화** 및 **자원화사업 우선** 투자

❍ **(물가상승률 반영)** 소각시설 등 17개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반영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18년도 물가상승률 1.27% 반영**

❍ **(주민의견 수렴)** 사전예산협의 요청시 **민원해소,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

- 입지선정 · 최적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나. **민간투자사업 지방비 부담 의무화**

❍ **총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를 제외**하여 **국고보조율 적용**하고, 지방비 부담

- 도로 등 타 민간투자사업은 국고 지원과 동시에 지방비 투입
-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자체 재정여력을 감안, 재정사업의 국고보조율에 20%p 상향 지원 (다만, 국고보조금은 **기존 재정사업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 (총사업비 - 민간투자비) × 국고보조율

다.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19호, '18.12)」에 따라 **매립시설, 매립가스 저장시설 등 내진설계** 포함하여야 함

- **기 설치**된 매립시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예산지원

❍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 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1380호, '19.1)」 개정에 따른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반영

라. **국고보조 지원대상 신설 · 확대 및 지원기준 강화**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국고지원 대상 신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을 **보관 · 선별하는 시설** 설치시 국고지원
-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및 불연성(폐콘크리트 등 폐재류) 폐기물을 **선별하는 설비, 재활용 가능자원을 보관**하는 시설 포함

* 불법폐기물 투기 · 방치 근절대책 수립(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8.11)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예산 신청 · 편성 및 집행관리 합리화**

❍ **(사업 추진절차)** 검토-입지선정-설계-공사-준공 **단계별 예산편성 절차** 안내

- 법적 필수 검토사항, 예산지원 신청시기, **절차별 소요기간** 제시

❍ **(재원협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및 **단가 적정성 검토** 등 사전 절차이행 후 재원협의 실시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실시설계 완료 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VE시행

* (단가 적정성 검토) 구조물 신설 ·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변경 필요시 조달청 검토

❍ **(정산매뉴얼 개정)** 국고보조 대상에서 인정 · 제외되는 항목 명확화

| 구 분 | 개 정 사 항 |
|---|---|
| 국고지원 인정 | 법령 신설 · 개정에 의한 **조사용역비** 범위 확대<br>(지하안전영향평가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비 등) |
| 국고지원 제외 | 비위생매립지 정비* 가연성 ·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br>* 굴착 · 선별 후 이적 |
| | 기존 건축물 · 지장물 **철거비, 주민친화시설**(정자, 파고라 등) |

- 정산보고서 양식에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추가하여 담당자 편의성 제고

* (제출 증빙자료 항목 확대) '준공 보고서, 도면, 내역서 등' 예산관리시스템에 필수 제출

## ⑩ 9차 개정('20.1.20.)

### 가. 법령 기준강화, 폐기물 성상변화 대응을 위한 **설치비 표준단가 개정**

❍ **(통합환경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기준 시행 사업비 반영

| 처리시설 | 주요 개정사항 **(설치비 표준단가 반영)** |
|---|---|
| **공통** | •(**근로기준법 개정**)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부대비 23.5% 상승** (68→52시간)<br>•(**정부노임단가 반영**) **노무비 7.53% 상승**('19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br>•(**물가변동률 적용**) **소비자물가지수 0.75% 상승**(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9.9 기준) |
| **소각시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인허가 **배출기준 25% 강화**<br>•「**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기총량제** 실시<br>•(**발열량 증가**) **2,800→3,300㎉/kg**에 따른 **소각공정·대기오염방지설비 용량 확보** |
| **소각시설 대보수** | •(**기존 대보수 표준단가**) 기계·전기·계측제어 공사비 = 소각시설 신규단가의 60%<br>+(**건축물 개보수 공사비 증가**) **기존 건축물 증축, 노후 건축물 개보수** 비용 반영 |
| **생활자원 회수센터** | •(**재활용품 겉보기밀도 감소**) **97→81kg/㎥**로 기계설비 **용량 · 적치면적 확보**<br>•(**수선별 작업자 근무여건 개선**) 탈취·환기횟수 5회/hr 추가 적용, 악취설비 반영 |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 •(**전처리 2계열 이상**) **40톤/일 이상** 고장발생 대비 **용량별 최소 계열수** 제시<br>구분: 40톤/일 이하 / 150톤/일 이하 / 300톤/일 이하 / 400톤/일 이하 / 400톤/일 초과<br>전처리 계열수: 1계열 / 2계열 / 3계열 / 4계열 / 5계열<br>•(**악취저감·근무자 작업여건 개선**) 탈취·환기횟수 5회/hr 추가 적용, 악취설비 반영<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료화 **건조열원 LNG 사용**에 따른 **방폭기준** 등 강화사항 준수<br>•(**폐수처리시설 반영**) 음식물탈리액 등 **연계처리를 위한 1차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 •(**전처리 2계열 이상**) **40톤/일 이상** 고장발생 대비 **용량별 최소 계열수** 제시<br>구분: 40톤/일 이하 / 150톤/일 이하 / 300톤/일 이하 / 400톤/일 이하 / 400톤/일 초과<br>전처리 계열수: 1계열 / 2계열 / 3계열 / 4계열 / 5계열<br>•(**소화조 여유율 반영**) 소화조 **준설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용량 확보<br>•(**악취저감·근무자 작업여건 개선**) 탈취·환기횟수 5회/hr 추가 적용, 악취설비 반영<br>•(**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바이오가스의 저장·이송**을 위한 **방폭기준** 등 강화사항 준수<br>•(**시운전기간 확보**) 성능보증을 위한 **부하 · 무부하 운전** 등 **시운전 기간 10개월 반영**<br>•(**폐수처리시설 반영**) 음식물탈리액 등 **연계처리를 위한 1차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분석을 통한 표준사업비 산정연구'(한국환경공단, '19.9~'20.2),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및 운영기준 마련 연구'(한국환경공단, '19.2~12) 용역결과 반영

나. **반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보**

❍ 생활폐기물 종량봉투 외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명시

*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및 찌꺼기, 대형폐기물 등

- **(시설용량 산정)** 반입대상 폐기물의 최근 5년간 발생량 추이, 예상 발생량의 합리적 예측 반영 필요

다. **처리시설 사업 구상시 고려사항 제시**

❍ 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 건강 및 환경권 보호, 에너지 활용성 극대화 방향

- 복합시설 조성 검토, 주민의견 선반영, 지하화 검토, 최적시설 설치, 에너지 활용 및 공급망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등 구상시 고려사항 제시

라.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국고지원 대상시설 신설**

❍ 소금, 뻘 등이 묻은 해양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기계적 선별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 국고지원 대상 신설

* 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협의 결과('19), 환경부 지원 결정(국고 50%)

- **(세척설비 포함)**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 설비 등 선별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마.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 개정사항 반영

- 교부조건 중 **교부결정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중복수급, 전제조건 불만족, 부정수급 (제재·벌칙 부과사항 명시)

- 재정집행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부정수급 형사고발 의무

* 조치사항 :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대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

## 바. 국고보조 지원기준 강화

❍ 계속사업의 완공예정 연도별 잔여보조금 지원율 하향 조정

- (잔여 2년)50→40%, (잔여 3년)30→20%, (잔여 4년)20→10%

* 실집행률 추이에 따른 지원율 조정,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과 일치

❍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지원기준 강화

-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시 지방비 부담
- 지자체 폐기물 직접처리시 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비 부담

*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과 일치

## 사. 예산 신청 · 편성 및 집행관리 합리화

❍ **(재원협의)** 검토기간(신청이후 3개월 이내) 및 검토사항 근거 마련

* 환경부 종합감사('19.10) 조치사항 반영

- (재원협의 검토사항) 사업내용 · 규모 · 기간 · 사업비의 변동사항 및 사유, 국고지원 적합여부, 표준사업비 초과여부 등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 표준단가(2억원/톤) 이내에서 신청, 재원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검토 가능

❍ **(정산매뉴얼 개정)**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확화

| 구 분 | 개 정 사 항 |
|---|---|
| 국고지원 제외 | 비위생매립지 정비* 가연성 · 불연성**폐기물 처리비**<br>* 굴착·선별 후 이적 |
| | 지자체 폐기물 직접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법이나 지침에서 규정하는 시설 설치기준 외에 환경부와 협의 없이 추가적인 시설이나 설비설치를 위한 비용 |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정산 Q&A 추가하여 담당자 편의성 제고

* 총사업비보다 총지출금액이 적지만 지출금액의 70%가 15억을 초과한 경우 국고반납액 없음

## 11 10차 개정('21.1.7.)

가. **지자체 담당자 편의**를 위한 **설치사업 단계별 추진절차 설명**

❍ 예산 **사전협의부터 설치-준공**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주요절차, 시기, 증빙서류** 등 명시

❍ 예산 교부 · 집행 관리자 위주의 지침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재정비**

나. 생활폐기물 종량봉투 외 **반입 대상 폐기물**의 **종류 확대**

❍ 재활용 잔재물 →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잔재물 등

❍ 수해폐기물 → 태풍, 수해로 인한 하천 하구쓰레기 등

* 군부대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

다. **폐촉법 시행령 개정**('20.12)*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 이내**로 **별도지원**

- 폐촉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 (당초) 10% → (변경) 20% 이내

* 설치비용 : 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

※ '20.12.10 이후 폐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환경부 및 기재부 협의결과 승인된 사업계획에 한해 지원

라. **사전예산검토 정책방향 이행도 가점기준** 신설

❍ **직매립 제로화, 실태평가** 등 **정책방향을 이행**하는 지자체 가점 부여

- **(주민 선호도 조사)** 주민친화형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해 복합 ·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지자체

- **(민간 재활용 잔재물)** 생활자원회수센터와 민간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잔재물을 반입하여 안정적 처리를 도모한 지자체

- **(불법 폐기물 처리)**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및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

라. **집행 부진사업 예산 감액** 등 패널티 적용으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 실집행률 80% 미만인 경우 예산편성액의 20~40% 감액 적용

- 실집행률 50% 미만인 경우, 예산 미반영
-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은 전문기관이 실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함

❍ 원인자부담금 누락 · 축소, 사업완료 후 정산 미이행 지자체 신규사업 우선순위 하향조정

마.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매립시설 상부 시설물 등 계획시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⑫ 11차 개정('22.1.20.)**

**가. 하수찌꺼기 건조물 등 반입대상 폐기물 종류 및 시설용량 확대**

❍ 하수찌꺼기 등 → 탈수건조(생활하수과) → 생활폐기물 혼합소각(폐자원에너지과)

- 건조물의 용량으로 산정(함수율 감소 이후 반입량 적용)

❍ 변동계수는 월별 실제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조정**

❍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적환시설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고지원 협의가능

❍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실시설계 및 환경부·기획재정부 재원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승인 및 사업기간 내 집행할 경우 인정

※ 공사 착공 이후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편익시설의 설치비용 중 국고는 반환, 지방비에 한해 주민지원기금에 출연가능

**다. 집행부진사업 예산감액 및 패널티 등 예산집행관리 강화**

❍ 실집행률 50% 미만인 경우 단계별 감액

❍ 원인자부담금 누락·축소하거나 사업완료 후 정산지연, 평가자료 미제출 또는 평가결과 최하위 시설일 경우에는 패널티적용

- 계속사업의 경우, 총 국고 10%p 감액 및 당해연도 예산 미반영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예산협의 시 우선순위 미반영

**라. 정부정책방향 이행도를 신규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반영**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지역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

❍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열분해하여 연료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원료로 생산·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사전예산협의 등 검토결과서(서식2)에 검토기준 추가반영

**13 12차 개정('23.1.5.)**

가. 법령 기준 강화, 원자재 물가 급등 대응을 위한 **설치비 표준단가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등)** 강화기준 시행 사업비 반영

- 마감용 불연재료 사용 의무, 근무자 휴게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증가 등
- 대기 ·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 상향 (매립, 바이오가스화)

❍ **(재료비·경비 물가 및 노임단가 상승)** 재료비 33.7%, 노임단가 13.6% 상승

- 소비자 → 생산자 물가지수(생산재건설용재료, 기계 및 장비) 적용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분야별 직종 검토를 통한 노무비 상승률 반영

❍ **(최근 3년간 설계된 시설의 공사비 반영)** 소각 · 매립 · 생활자원 등 7개 시설

- 신규시설 단가 제정 (3개 시설 : 공공열분해, 직매립제로화 전처리, 해양폐기물 선별)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분석을 통한 표준사업비 산정연구'(한국환경공단, '22.10)

나. 예산 신청자 · **지자체 담당자 편의**를 위한 절차 개선 및 안내

❍ '친환경에너지타운'도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신청 절차로 통일

- 공모선정 방식 종료→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로 사전예산협의 시행

* '23년 신청 사업은 한시적으로 타당성조사 미 시행 사업도 예산검토 가능

❍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지방비 부담에 따른 이행절차 안내

❍ 총사업비 조정 절차별 조항 및 주요사항, 조정 위반사례 명시

❍ 바이오가스화시설은 2종 이상 폐자원 통합 우선검토 및 신청 창구 단일화

*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환경부, '22.9)

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등 **국고보조 대상시설 신설 및 지원 확대**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대상 확대

- 기존 및 증설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운영 중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노후설비 교체, 가스 포집정 · 이송관로 증설 지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 대상 확대

- 기존시설을 대체하여 시설환경의 현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선별률 개선을 위해 기계적 처리설비(파쇄설비, 감용설비 등) 또는 자동선별설비(플라스틱 광학선별기 등) 설치 · 교체 국고지원 확대
- 운영중인 일반 공공선별시설의 자연재해 유실, 설비 고장으로 인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국고보조 신설

※ 분리수거된 폐비닐 중 이물질 제거하여 선별률 제고 · 잔재물 처리비 저감

라.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시설부대경비 요율 개정사항 적용

- 전면책임감리비 및 건축부문 설계 · 감리비 현행화

*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22.5)

Memo

Memo